



2023년 사법학자대회

지급결제 환경변화와 CBDC의 사법적 제문제

일 시 : 2023년 10월 13일(금) 13:00~18:00

장 소 : 한국은행 별관 2층 다목적 컨퍼런스 홀

주 최 : 한국상사법학회 · 한국민사법학회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한국은행



2023년 사법학자대회

지급결제 환경변화와 CBDC의 사법적 제문제

전체사회 김연미 교수

13:00~13:20	등 록
13:20~13:40	개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 정경영 교수(한국상사법학회장) • 축 사 : 이종렬 부총재보(한국은행)
13:40~14:10	한국은행의 CBDC 준비에 관한 현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동섭 팀장(한국은행 금융결제국)
학술대회 학술사회 송옥렬 교수	
【특별주제】 14:10~15:00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민간 디지털화폐의 법적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 표 : 김필수 과장(금융결제원) • 사 회 :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 • 토 론 : 김홍기 교수(연세대), 이규옥 박사(한국은행)
【제1주제】 15:00~15:50	민사분쟁의 해결에서의 가상자산의 법적 평가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 표 : 김정환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 사 회 : 김경욱 교수(고려대) • 토 론 : 김수정 교수(명지대), 안태준 교수(한양대)
15:50~16:10	coffee break
【제2주제】 16:10~17:00	착오송금인의 보호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 표 : 이상용 교수(건국대) • 사 회 : 박수곤 교수(경희대) • 토 론 : 김정연 교수(이화여대), 정영수 교수(연세대)
【제3주제】 17:00~17:50	EU집행위원회의 CBDC법(디지털유로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 표 : 천창민 교수(한국과학기술대) • 사 회 : 김건식 명예교수(서울대) • 토 론 : 신지혜 교수(한국외대), 한애라 교수(성균관대)
17:50~18:00	폐 회

● ● ●

개 회 사

정경영

상사법학회 회장

개회사

안녕하세요.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들녘을 뒤덮은 코스모스 사이로 살갓을 스치는 바람이 세상의 속도를 잠시 잊고 존재의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좋은 계절에 한국사법학자대회를 우리나라의 금융의 중심 한국은행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학회에 참석하신 학회원 및 전문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사법학자대회는 한국상사법학회와 한국민사법학회, 한국소송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회로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됩니다. 첫 번째 사법학자대회는 작년 민사법학회가 주관하여 개최되었고 오늘 학술대회는 상사법학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법학자대회를 위해 올해 봄부터 한국민사법학회장이신 정병호교수님,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이신 정선주교수님과 만남을 가졌고, 민상법, 소송법을 아우르는 주제를 검토하던 중 최근 전 세계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CBDC에 관한 사법적 검토'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만 CBDC가 다소 생소한 개념이어서 지급결제의 환경변화 속에서 검토하자는 제안에 따라 '지급결제의 환경 변화와 CBDC의 사법적 제문제'를 대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상법 개정시 제46조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가 된 '지급결제'는 최근 핀테크의 등장과 암호통화의 열기 속에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중요한 가상자산으로 자리를 잡았고, 루나-테라사태, 머지포인트사태 등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사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제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을 가져왔습니다.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사적 지급수단의 변화와 활성화는 가장 근간이 지급결제수단인 화폐에도 영향을 미쳐 '화폐의 디지털화'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즉 CBDC는 금융시장의 변화, 기술적 문제와도 깊이 관련되지만, CBDC 도입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은 디지털화폐를 법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점이라 봅니다. 예컨대 CBDC에 법화성을 부여할 것인지, 기존의 화폐와 유사하게 점유가 가능하게 하여 거래 정보나 익명성을 보장할 것인지 하는 다수의 CBDC의 법적 쟁점에 관한 윤곽에 따라 금융시장의 인프라와 CBDC에 이용될 기술이 결정되리라 봅니다. 오늘 학술대회가 CBDC 도입시 검토되어야 하는 법적

쟁점들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행사는 올해 확장 신축한 한국은행 본관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된다는 점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시설에서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흔쾌히 승낙하신 이창용 한국은행총재께 감사드리며, 학술대회 개최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오늘 축사를 해주시는 이종렬 부총재보께도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공동학술대회 개최에 함께 의논하고 고비마다 도움을 주신 정선주학회장님, 정병호학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발표, 사회,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 드리며, 학술대회를 실무적으로 준비하신 3개 학회 관계자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정 경 영 교수

● ● ●

축 사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

사법학자대회(2023.10.13) 부총재보 축하

2023. 10. 11(水)

(디지털화폐기획팀)금융결제국

<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부총재보 이종렬입니다.

먼저 「2023년 사법학자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술대회 준비에 수고해 주신
한국상사법학회장 정경영 교수님을 비롯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발표, 토론을 맡아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상사법학회, 민사법학회, 민사소송법학회 회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CBDC 활용성 테스트 >

IT기술 발전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배경으로
금융과 지급결제 부문에서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 페이팔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하고,
다양한 비정형 자산이
토큰화(tokenization)된 증권으로 발행·유통되는 등
그 변화의 범위와 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발표한 CBDC 활용성 테스트는 이러한 기술의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 디지털 화폐 및 금융 시스템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토큰 기반의 인프라 구축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첫 걸음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활용성 테스트에서는 한국은행이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한 CBDC 플랫폼을 구축하고 은행들에게 기관용(wholesale) CBDC를 발행하면, 은행들이 이를 바탕으로 각자 고객에게 예금 토큰을 발행 유통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이 제공하는 안전한 테스트베드 내에서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혁신적인 지급 서비스를 실제에 가깝게 구현하여 평가해 보고, 제한적으로 실제 이용자도 참가하여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률적 논의의 필요성 >

미래 화폐 및 금융 인프라의 구축은 단지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완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반드시 법률적 측면에서의 면밀한 점검과 준비가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의 경우 현행법규 체계 내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초기부터 금융당국과 함께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이 등장한 이후
다양한 법률적 이슈와 쟁점이 제기되고
이의 규율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논의가
진행중인 것과 마찬가지로,

CBDC와 예금 토큰 등
새로운 디지털 통화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서는
견고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번 학술대회가
지속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기여하는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마무리 말씀 >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국상사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 조 발 표

김동섭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획팀장

「CBDC 활용성 테스트」

-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첫 걸음

목차

개관

- 1) 개념 및 논의배경
- 2) 주요국 CBDC 연구·개발
- 3) 한국은행 연구·개발

활용성 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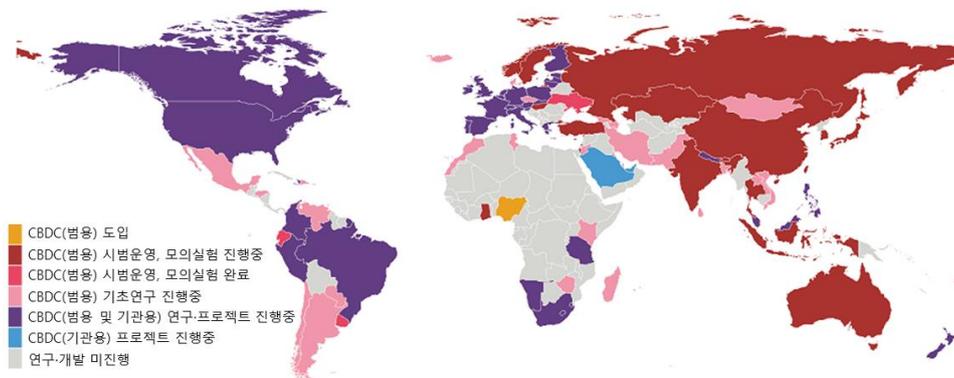
- 1) CBDC 활용성 테스트
- 2) CBDC 네트워크 구조
- 3) 테스트 범위
- 4) 향후 일정

CBDC의 개념 및 논의 배경

- 중앙은행(Central Bank)이 발행하는 디지털(Digital) 형태의 새로운 화폐(Currencies)
- 구현 방식
 - 범용(retail/general purpose): 새로운 현금
 - 기관용(wholesale): 새로운 지준
- 논의 및 연구 확대 배경
 - 현금 이용 감소 및 경제의 디지털 전환
 - 스테이블코인 대응
 - 19년, Facebook의 Libra
 - 23년, PayPal의 PYUSD
 - 기타: 금융포용, 국가간 지급결제 개선

주요국 CBDC 연구·개발

- 바하마, 나이지리아 등 일부 신흥국 공식 도입
- 주요국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도입 가능성에 대비해 연구·개발 강화



주요국 CBDC 연구·개발(기관용 CB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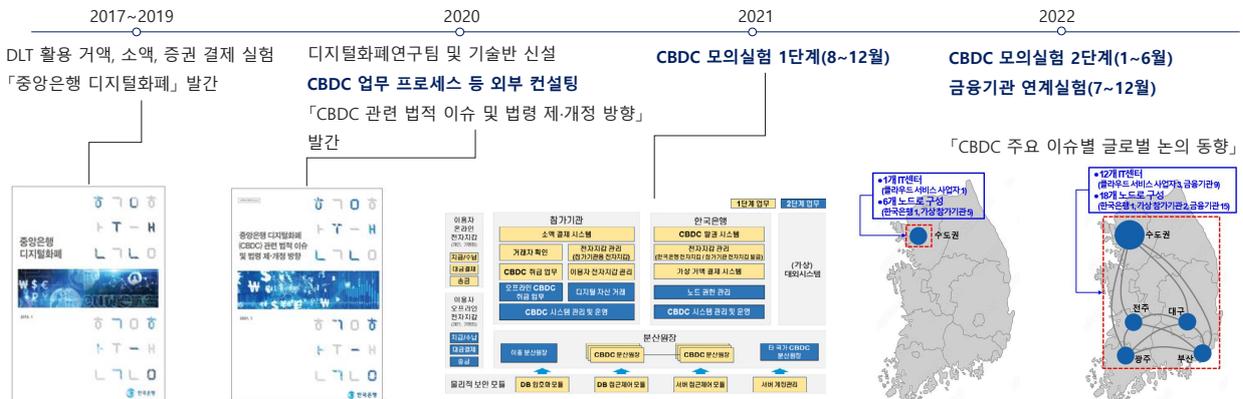
- 증권결제: 스위스, 프랑스 중앙은행
- 국가간 지급결제: BIS IH; Project m-Bridge 등
- 예금토큰 지원: 뉴욕 연준, 브라질

수행기관	프로젝트명	추진 내역
 뉴욕 연준	Regulated Liability Net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은행 예금토큰과 CBDC의 상호운용 시스템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 점검 • 다수의 금융기관, 시스템 구축업체, 컨설팅사 등 참여
 브라질 중앙은행	Digital Re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은행과 협업하여 기관용 CBDC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 및 결제 실험
 싱가포르 통화청	Orch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화폐에 프로그램 기능 적용한 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표준 플랫폼 제시 • 바우처 등 특수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한국은행 연구·개발

- 2020년 이후 본격화: 범용(retail) CBDC 중심의 다각적(기술-법률-파급영향) 연구 추진
- 도입: 주요국 상황 고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기술적 준비 및 관련 우려사항 해소 필요



CBDC 활용성 테스트

보도자료

2023년 10월 4일 공보 2023-10-9호
이 자료는 10월 5일(목) 조간부터 위급하여
주상시요, 당, 통상(상)인(인)에 대해서는
10월 4일(수) 13:3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BIS와 협력하여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 공동 추진

-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0.4일(수)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CBDC 활용성 테스트)을 공동 추진하기로 발표하였음
- 국제결제은행(BIS)은 금번 테스트 준비 과정에서 기술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테스트 의미 및 세부 설계 사항 등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한국은행과 공동 발간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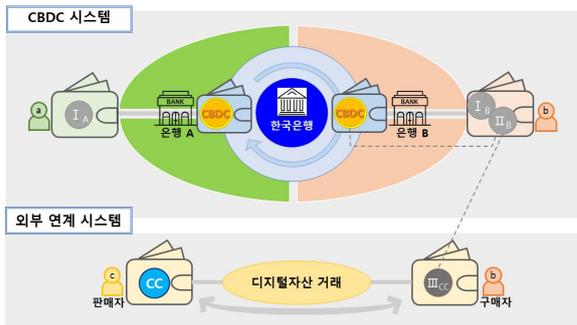
문의처 : (한국은행) 금융정책국 디지털화폐기획팀 팀장 강동섭, 과장 류재민
Tel: 750-6603, 6602 Fax: 750-6519 E-mail: bokcbdc@bok.or.kr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과장 이수영, 사무관 배수영
Tel: 2100-2830, 2833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디지털자산연구팀 팀장 안병남, 선임조사역 김효봉
Tel: 3145-7130, 7132
공보관 : Tel: (02) 759-4023, 4022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 추진
-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을 아우르는 미래 통화 인프라 제시
- BIS의 기술 자문, 공동 보고서 발간
- 다양한 활용사례 발굴
- 일반 이용자 참여 실거래 테스트 실시
- CBDC의 공식 도입이 아니며, 한은법 등 개정 불필요



CBDC 네트워크 구조



(CBDC 시스템)

- wCBDC: 금융기관 등만 사용, 기준과 유사
- Type I: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 예금과 유사
- Type II: 이머니 토큰, wCBDC를 100% 담보로 발행

(외부 연계 시스템)

- Type III: 디지털자산 거래 대금 지급용, II형 통화 100% 담보로 발행

테스트 범위

- 참여 금융기관: 은행으로 한정
- 실거래 테스트: 예금토큰(Type I)만 활용하고 여타 타입(Type II, III 등)은 POC 등 가상 테스트만 실시
- 제도적 조치(금융위)
 - 발행 근거 명확화: 금융규제 샌드박스 통해 은행의 해당 업무 영위 근거 마련
 - 법적 효력 보장: 분산원장 기록과 은행 장부 기록을 1:1로 실시간 동기화(mirroring)
 - 이용자 보호조치 마련: 거래기록 암호화, 접근권한 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은행의 설명 조치 등
 - 단, CBDC 활용성 테스트에 한하여
- ◆ 구체적인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는 관계기관 및 참여 은행 등과의 협의를 거쳐 2023.11월중 발표



9

향후 일정

- 10월 이후 참가은행 모집,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 구체화 등 진행
 - 11월 상세 내용 별도 공개
- 2024년 4분기 일반 이용자 대상 테스트 실시



10

감사합니다
Thank you

【특별주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민간 디지털화폐의 법적 검토

김필수

금융결제원 과장

2023 사법학자대회 발표자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민간 디지털화폐의 법적 검토



2023.10.13. (금)

김필수*

*금융결제원 디지털금융단과장. 본 자료에 포함된 의견 및 주장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로 금융결제원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CONTENTS

01. 서론
02. 디지털화폐의 이해와 논의 현황
03. 화폐와 법제의 간극과 법적 불확실성
04. 디지털화폐 관련 법제 개선과제
05. 결론

2

01. 서론

02. 디지털화폐의 이해와 논의 현황

03. 화폐와 법제의 간극과 법적 불확실성

04. 디지털화폐 관련 법제 개선과제

05. 결론

3

01.서론

화폐의 역사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예금토큰(tokenized deposits)
규제 체계로 편입된 스테이블코인(regulated stablecoins)

새로운 형태의 화폐(New Forms of Money)에 대한 실험과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

4

Money(돈 또는 화폐)

seashell, metal coin, piece of paper, a string of code

화폐의 형태는 계속 변화해왔음

Money(돈 또는 화폐)의 세 가지 핵심 기능

계정단위(Unit of Account)

: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어야 함

교환수단(Means of Exchange)

: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상거래에서 대가 지급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함

가치저장(Store of Value)

: 시간이 지나도 돈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어야 함

화폐의 기능은 거의 변하지 않았음

문제의 제기

CBDC는 전통적인 화폐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민간 디지털화폐와의 공존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음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화폐가 공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의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화폐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우리는 그 수요를 충족시킬 방법을 갖고 있어야 함
 공공과 민간의 협력 과정에서 민간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가 필요

한국은행은 최근 기관용CBDC(wCBDC)를 기반으로 은행 등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디지털 지급수단을 제공하는 방식의 실험을 추진한다고 발표. 국내의 기존 CBDC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범용CBDC(rCBDC)의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므로 **기관용CBDC와 예금토큰, 스테이블코인 등의 법적 쟁점과 제도화 검토에 필요한 논의가 부족**

해외에 비해 민간 디지털화폐 규율체계 정비 논의가 미진한 현재의 상황은 디지털화폐 관련 기술 및 법리 발전에 부정적 영향
 현행 규제 체계상으로는 민간의 디지털화폐 분야 실험조차 어려운 상황

발표의 구성 - 본문은 제2장, 제3장, 제4장의 세 파트로 구성

전체적인 논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2장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에 관한 논의의 흐름, 디지털화폐의 개념, 디지털화폐의 부상 배경 등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함

제3장에서는 기관용CBDC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 디지털화폐 생태계의 법적 기반을 분석해보고 화폐와 법제의 간극과 법적 불확실성에 대해 조망해보고자 함
 아울러 금전형태의 변화로부터 야기되는 몇 가지 사법(private law)적 쟁점을 분석하여 법제 개선 필요성을 제시함

제4장에서는 디지털화폐 관련 법제 개선과제를 제시함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정립과 예금토큰 규제 정비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법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제3장에서 논의한 중앙은행 화폐와 민간 디지털화폐의 공존을 위한 제도 설계의 기본 원칙(화폐의 단일성, 기능적 일관성, 상호운영성)을 제도 개선 과제랑 연계하여 논의함
 마지막으로 사법적 법률관계의 명확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돈에 관한 법률용어 정비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함

01. 서론

02. 디지털화폐의 이해와 논의 현황

03. 화폐와 법제의 간극과 법적 불확실성

04. 디지털화폐 관련 법제 개선과제

05. 결론

9

02. 디지털화폐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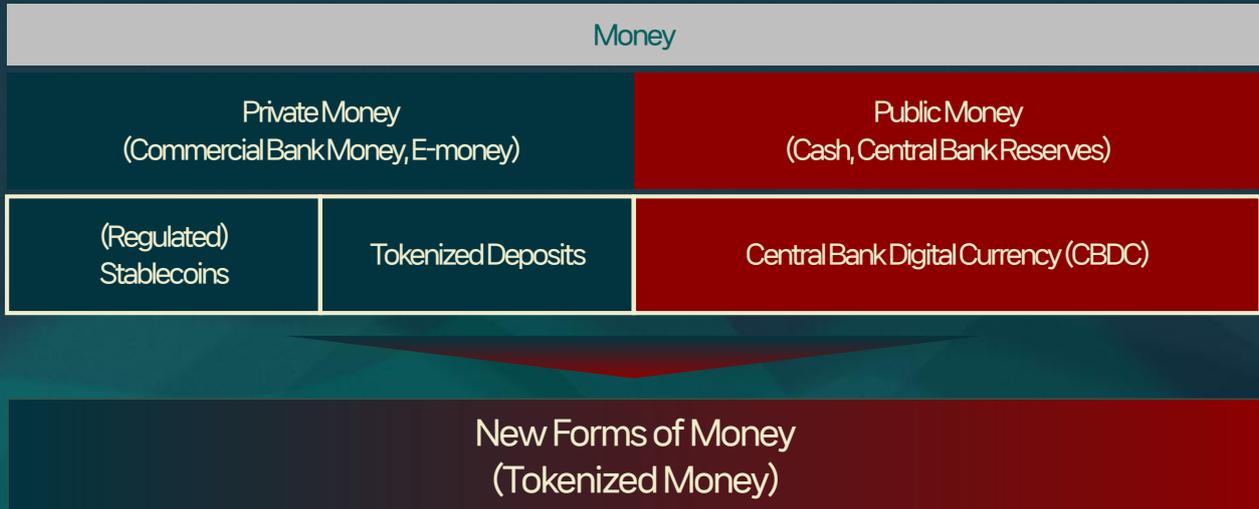
2.1. 새로운 형태의 화폐 - Tokenized Money

2.2. CBDC, 예금토큰, 스테이블코인의 개념

2.3. 디지털화폐의 부상 배경

10

새로운 형태의 화폐 - Tokenized Money



11

토큰화의 개념

토큰(Token)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

오늘 논의에서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디지털 원장(분산 원장)의 기록으로 표시되는 단위로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 원장 기술(DLT)을 기반으로 원장에 통합된 숫자값"을 의미하는 것.

토큰화
(Tokenization)

분산원장 또는 블록체인 상에 존재하는 코드 조각인 토큰을 생성하여
자산과 부채의 속성이나 상태, 거래 내역, 소유권 등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

"프로그래밍 가능 구현이 가능한 플랫폼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금융·실물 자산의 권리를 표현하는 과정" (BIS)

12

일반적인 가상자산(암호자산)은 화폐로서 기능하기 어려움

No Questions Asked(NQA) Principle
- Bengt Holmstrom(2015), Gary Gorton(2022).

"...both parties to a transaction must agree that the money be accepted **at par**
- a ten-dollar bill should be accepted as being worth ten dollars, not a penny less."
- Gary B. Gorton and Jeffrey Y. Zhang(2022)

NQA 원칙 : 물지도 따지지도 않고, 10달러=10달러!



= NQA 충족하는 돈

가상자산(암호자산) so-called stablecoins (including algorithmic)	Private Money (Commercial Bank Money, E-money)	Public Money (Cash, Central Bank Reserves)
	Tokenized Deposits Regulated stablecoins	CBDC
Not Money	Money	

새로운 형태의 화폐에 관한 논의의 흐름

Money		
Private Money (Commercial Bank Money, E-money)		Public Money (Cash, Central Bank Reserves)
(Regulated) Stablecoins	Tokenized Deposit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예금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 모색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율 체계의 정비 논의		CBDC의 발행, 유통에 필요한 인프라 설계와 제도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 (한국은행, CBDC활용성테스트 추진계획, 2023.10.)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목)

Wholesale CBDC wCBDC (기관용 CBDC)	Retail (General-purpose) CBDC rCBDC (범용 CBDC)
중앙은행 준비금(reserve) - 금융기관 등이 이용	현금 (주화, 은행권) - 모든 경제주체 이용

wCBDC의 범위 -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만 wCBDC인가?

	금융기관 등 (거액결제용)	모든 경제주체 (소액결제용)
분산원장(DLT) 기반	분산원장(DLT) 기반 wCBDC (도매용 CBDC)	분산원장(DLT) 기반 rCBDC (범용 또는 소매용 CBDC)
중앙(단일)원장 기반		중앙(단일)원장 기반 rCBDC

일부 문헌*에서는 중앙(단일)원장 기반 준비금을 wCBDC로 분류하지 않음

*BIS CPMI-M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2018.03.;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주요 이슈별 글로벌 논의 동향", 2022.01. 등

"wCBDC는 중앙은행의 적격 시장 참여자가 DLT와 같은 신기술을 사용하여 기관간 거래를 결제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새로운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
- 프랑스 중앙은행(2023.07.)*

*BANQUE DE FRANCE, WHOLESAL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EXPERIMENTS WITH THE BANQUE DE FRANCE, 2023.07.

wCBDC의 범위 -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만 wCBDC인가?

	금융기관 등 (거액결제용)	모든 경제주체 (소액결제용)
분산원장(DLT) 기반	분산원장(DLT) 기반 wCBDC (도매용 CBDC)	분산원장(DLT) 기반 rCBDC (범용 또는 소매용 CBDC)
중앙(단일)원장 기반	중앙은행 준비금 wCBDC (?)	중앙(단일)원장 기반 rCBDC

"wCBDC는 분산원장이 아닌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으므로
중앙은행 준비금은 이미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wCBDC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 (ECB의 Fabio Panetta)
= 전통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wCBDC가 중앙은행 준비금의 형태로 이미 존재한다는 견해

예금토큰(tokenized deposits)의 개념

예금토큰(tokenized deposits)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플랫폼 위에 존재하는 은행예금의 디지털 표현으로 일반예금과 동일하게 상업은행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냄
- BIS, Blueprint for the future monetary system: improving the old, enabling the new (2023)

대체 기술 형태를 취하는 상업은행화폐 (commercial bank money in an alternative technical form) - 독일 은행산업연합회(2023)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

가치안정 메커니즘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자산, 자산의 집합 등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도모하는 가상자산"
(FSB)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의 정의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또는 그 밖의 준비자산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 (미국 PWG)

EU, 영국, 일본 등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입법을 추진하면서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

규제방안에 대한 협의 문서 등에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례는 존재하나

입법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한 사례는 없음

(최근 미국에서 "payment stablecoi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입법이 완료된 것이 아님)

(EU) MiCA 자산참조토큰과 전자화폐토큰 정의에 공통적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암호자산"이라는 문구를 포함. → FSB 정의를 고려할 때 MiCA의 자산참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은 스테이블코인에 해당.

다만, 자산참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의 규제체계는 차이가 존재하므로 그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

* 이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는 김필수, 주요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 정비 동향 및 시사점, 금융결제원 PaymentInsight 제12호, 2023.09;

보다 자세한 분석은 김필수, 디지털화폐의 규제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3.02. 참고

(영국) 2022년 금융서비스 및 시장 법안에 "디지털 결제 자산(digital settlement asset)"이라는 용어*를 신설

* 암호화보안 기술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 채무의 결제에 이용될 수 있고 전자적으로 전송, 저장, 거래될 수 있으며 정보의 기록 또는 저장을 지원하는 기술(분산원장 기술을 포함할 수 있음)을 활용하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현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의 정의

(일본)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화폐유사형과 암호자산형으로 분류하고 이 중 디지털화폐유사형을 "전자결제수단"으로 명명 후 자금결제법에 정의를 신설하였음

*전자결제수단

"물품 등을 구입·임차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 대가의 변제를 위하여 불특정한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고, 불특정한자를 상대방으로 구입·매각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개정자금결제법 제2조 제5항 제1호)"

"불특정인을 상대방으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상호 교환을 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개정자금결제법 제2조 제5항 제2호)"

"특정 신탁 수익권(개정자금결제법 제2조 제5항 제3호)"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개정자금결제법 제2조 제5항 제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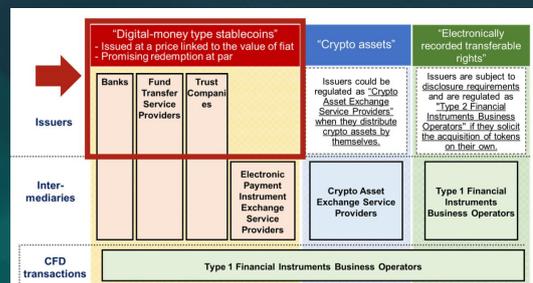


그림: Tomoko Amaya, "Regulating the crypto assets landscape in Japan", 2022.12.p13.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안정 메커니즘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은 스테이블코인 설계의 핵심 요소

가치안정 메커니즘은 스테이블코인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기도 함

크게 자산에 연계하는 방식,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방식, 양자를 혼합한 방식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디지털화폐의 부상 배경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은 가치의 변동성이 높아 지급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려움

스테이블코인의 등장 - 법정화폐로 표시되는 단위에 가치를 고정하여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한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이용 확산을 포함한 화폐제도 및 지급결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CBDC 연구가 정책과제로 부상

Covid 19 - 비대면 지급서비스 성장, 현금 사용 감소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가 빠르게 전개

금융시장과 분산원장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 과정에서 토큰화 자산(tokenized asset)의 잠재력이 주목 받기 시작

스테이블코인은 규제체계가 완비되지 않았고, CBDC는 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토큰화된 화폐의 수요가 증가
- 은행이 기존 규제 체계를 기반으로 예금을 토큰화하여 지급수단 또는 결제자산으로 활용하자는 예금토큰 아이디어가 부상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토큰화하는 이유로 언급되는 사항들

유동성: 자산/권리의 분할이 용이하여 최소 투자 금액을 낮추고 비유동성 자산의 유동성 개선 가능

탈중개화: 토큰 생성부터 전송까지 전체 유통 프로세스가 중개자 없이 온체인에서 완료될 수 있음

접근성: 기관, 일부 고액 자산가 등만 접근할 수 있었던 자산에 대한 투자 접근성 개선

운영 효율성: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을 통해 발행, 유통, 거래 후 프로세스 등을 원활하고 빠르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잠재력

조합력(composability)*, 신뢰 최소화, 투명성 등

* 프로그래밍 가능(programmability)과 이를 바탕으로 레고 블록 쌓기와 같이 다양한 거래를 연계해 하나의 완결된 새로운 거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특성(다수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 패키지로 엮는다는 취지)으로 금융거래를 자동화하는데 활용 가능. (BIS**)

** BIS, Blueprint for the future monetary system: improving the old, enabling the new (2023)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토큰화하는 이유 그리고 한계

“비유동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열어줌”

(예1) 우표 수집가가 자신의 수집 컬렉션을 박물관에 위탁하여 전시 및 보관하면서 해당 컬렉션에 관한 권리를 토큰화 권리를 분할하여 공유하고 이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

(예2) 아티스트가 소셜미디어나 메타버스 공간에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해당 콘텐츠를 상업활동이나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토큰화하여 판매함으로써 중앙화된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지식재산권을 통해 수익을 창출

법률 및 규제의 불확실성: 어떤 법과 규제가 적용될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음

당사자간 법률관계의 불확실성: 토큰을 보유한 자의 권리, 토큰과 실물자산(또는 금융자산) 간 연계의 법적 실체 등이 불명확

토큰화된 자산이 나타내는 자산 또는 권리 등의 관리 체계 부재

25

[참고]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의 정의

“계약조건을 실행하는 컴퓨터화되어 있는 거래 프로토콜” (Nick Szabo, 1994)

계약조건을 코드화하여 컴퓨터가 계약 조건을 해석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아이디어였으나 1990년대 중반의 기술력으로는 아이디어의 실현이 어려워 실제로 구현되는데 이르지 못하고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함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 등장 이후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기술 기반이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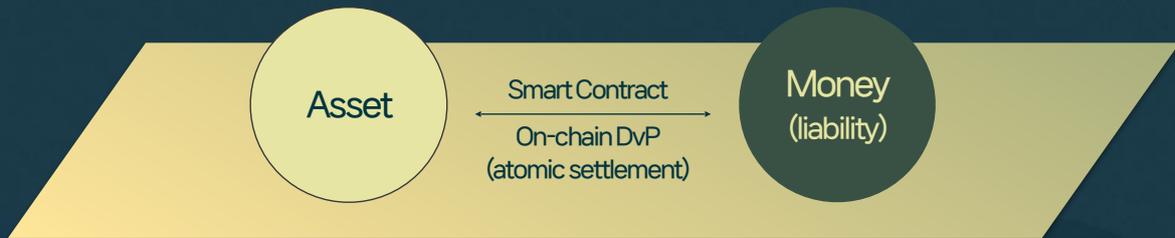
“사전에 정의된 임의의 규칙에 따라 디지털 자산을 자동적으로 이전하는 시스템” (이더리움 백서)

“사람의 개입 없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자동 실행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영국 법률위원회)

“사전 지정된 조건이 충족되면 동작을 트리거할 수 있는 자체 실행(self-executing) 애플리케이션” (FSB)

26

토큰화된 자산과 토큰화된 화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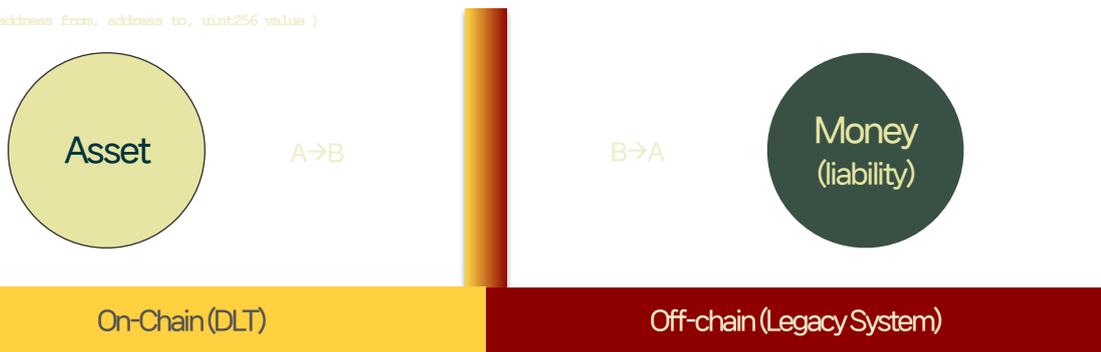
토큰화된 자산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토큰화된 화폐가 필요

atomic settlement*를 활용하면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 분산원장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여 토큰화된 자산과 토큰화된 화폐를 연결하고 자산의 이전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만 화폐의 이전을 처리하는 조건부 거래를 실행하거나 화폐의 이전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만 자산의 이전을 처리하는 조건부 거래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

토큰화된 자산과 토큰화된 화폐

`transfer(address from, address to, uint256 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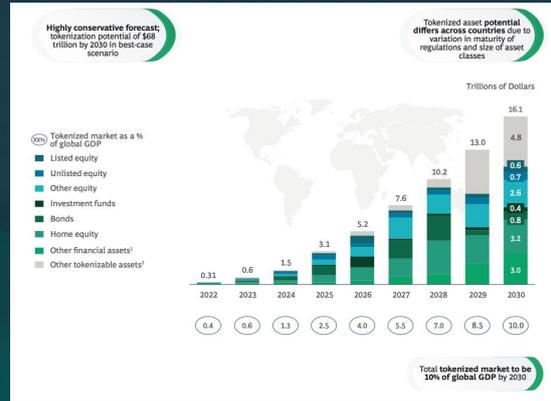
신뢰할 수 있는 토큰화된 화폐가 분산원장 위에 존재하지 않음 = 토큰화된 자산 거래의 위험 요인

최근 토큰화된 자산 시장의 잠재력이 커지고 성장성이 주목받으면서 토큰화된 화폐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더욱 강해지고 있는 양상

토큰화된 자산(Tokenized Asset)의 부상



* Citi GPS, "Money, Token, and Games", 2023.03.



* BCG and ADDX, Relevance of on-chain asset tokenization in 'crypto winter', 2022.09.

01. 서론
02. 디지털화폐의 이해와 논의 현황
03. 화폐와 법제의 간극과 법적 불확실성
04. 디지털화폐 관련 법제 개선과제
05. 결론

03. 화폐와 법제의 간극과 법적 불확실성

- 기관용 CBDC와 민간 디지털화폐 생태계의 법적 기반을 중심으로

3.1.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자와 스테이블코인

3.2. 은행과 예금토큰

3.3. 중앙은행과 CBDC

3.4. 금전 형태의 변화와 사법(private law)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비 동향



암호자산 시장 규정(MiCA Regulation) 입법 완료(2024.06.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



2023년 금융서비스시장법(2023 FSMA) 입법 완료(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규정 마련 중)



자금결제법, 은행법 등 개정 완료(2022.06. 입법완료, 2023.06.부터 시행 중)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공개협의 발표(2022.10.), 의견수렴 결과 반영 최종 규제안 확정 발표(2023.08.)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통과(2023.07.) *하원 및 상원 통과 불투명

우리나라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공식적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가 늦은 편으로 평가됨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관련 국회 부대의견에 따른 규제 사항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 진행 중 (2023.7.~)

검토 과제 중에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확립"도 포함되어 있음

2024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의 의의와 주요국의 규제 정비 방향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의 의의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용자 보호, 금융안정, AML/CFT 등) 관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민간 디지털화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주요국의 규제 정비 방향

*이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는 김필수, 주요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 정비 동향 및 시사점, 금융결제원 Payment Insight 제12호, 2023.09. 보다 자세한 분석은 김필수, 디지털화폐의 규제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3.02.참고

주요국에서는 지급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과 그 밖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분리
⇒ 즉, 지급법제(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와 가상자산법제(그 밖의 스테이블코인)로 구분하여 규제체계를 정비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자(중개자)가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규제 체계 정비

발행자격을 은행으로 한정하지 않고 **비은행도 법정요건을 갖추면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안정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병행(지급결제시스템 감시 체계 고도화 등)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논의의 전제

 = NQA 충족하는 돈

지급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과 그 밖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분리하여 논의할 필요

가상자산(암호자산) so-called stablecoins (including algorithmic)	Private Money (Commercial Bank Money, E-money)	Public Money (Cash, Central Bank Reserves)
	Tokenized Deposits Regulated stablecoins	CBDC
Not Money	Money	

스테이블코인과 지급법제의 간극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질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아래의 1, 2는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공통 요건임

1.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
2.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용성 요건은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삭제(2024.9. 시행)

1, 2를 충족할 경우 전자화폐에 해당하는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환금성 요건 충족 여부

- 전자화폐: 현금 또는 예금과 1:1 교환이 보장되는 지급수단
- 선불전자지급수단: 현금 또는 예금과 1:1 교환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 (발행자가 환급 요청을 위한 사용비율 제한 가능)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상 요건1은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요건2는 발행인 외의 가맹점이 있으면 충족할 수 있으므로 사실판단의 문제임.
 결국 환금성 요건의 충족 여부가 관건이며 환금성 요건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전자화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러한 해석과 관련해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

스테이블코인과 지급법제의 간극

전자금융거래법 규제체계의 불완전성

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 경유 의무와 분산원장 기반 전자화폐토큰의 특성과 구조의 부조화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과 관련하여 받은 자금의 보호 체계의 불완전성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제한적 기능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지급에 한정)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 진입 규제의 문제점

기존 규제 체계의 예금토큰에 대한 적용 가능 여부

기존 규제 체계를 바탕으로 예금토큰이 발행될 수 있는 것인가?

예금토큰은 은행들이 기존의 규제 체계를 바탕으로 토큰화된 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규제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자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비해 장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존재

특히, 현행 이중 구조 통화시스템(Two-tier monetary system)과 예금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현행 제도(은행에 대한 감독, 예금보험 제도,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 등)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예금토큰의 장점으로 제시됨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암호자산 건전성 규제안*에 따르면 "은행에 대한 토큰화된 청구권(예금토큰을 의미)"에 대한 LCR, NSFR 규제 적용시 전통적인 예금과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음.

*BCBS, Prudential treatment of cryptoasset exposures, 2022.12. [SC060.107] - 동 가이드라인은 바젤 프레임워크의 "SCO - 범위 및 정의"를 수정, 보완하며 2025.01.부터 발효됨.

⇒ 예금토큰에 대하여 기존 은행 감독 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예금토큰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은행 감독 체계에 대하여 매우 정교한 수정 작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 (싱가포르가 예금토큰을 SCS 규제체계에서 제외한 것도 같은 취지)

기존 규제 체계의 예금토큰에 대한 적용 가능 여부

기존 규제 체계를 바탕으로 예금토큰이 발행될 수 있는 것인가?

현행 규제 체계상의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예금토큰의 발행, 유통을 시도하기는 어려움
 특히, 예금토큰이 가상자산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발행"에 관한 근거 법령이 부재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음
 2017.9.29. 개최된 가상통화 TF 회의에서 정부가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 이라고 밝힌 이후 가상자산의 발행과 관련한 입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2023.6. 10. 기준)
 정부의 ICO 금지 방침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각하됨(헌법재판소 2022.9.29. 선고 2018헌마1169 전원재판부 결정)
 위 헌법재판소 판례가 설시한 바와 같이 정부의 ICO 금지 방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국민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정기관이 의도하는 바에 따르게 하는 사실상의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상자산의 정의에 포섭되는 예금토큰을 은행이 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한국은행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계획 발표 기자회견(2023.10.04.)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현재는 은행이 예금을 토큰화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기존 규제 체계의 예금토큰에 대한 적용 가능 여부

기존 규제 체계를 바탕으로 예금토큰이 발행될 수 있는 것인가?

예금토큰에 대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제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예금토큰에 대하여 예금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

예금토큰이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예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 여부, 예금자보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예금자 등이 부보금융회사(은행)에 대하여 예금 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 보험관계가 성립되는데 예금토큰의 경우 예금자 등이 은행에 대한 예금 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가 언제인지 등이 문제될 수 있음

[참고 조문] 예금자 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가 예금·적금·부금(附金)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元本)이 보전(保全)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나. 제1호사목 및 아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라 한다)가 고객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證券)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제1호아목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을 포함한다.)과 같은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다. 제1호자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수인보험료,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라. 제1호지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의 합병한 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여금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조달한 금전

마. 제1호거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가 계금(欸金)·부금·예금 및 적금 등으로 조달한 금전.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경우에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만 해당한다.

예금자보호법 제29조(보험관계) ① 공사와 부보금융회사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등이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한다.

기존 규제 체계의 예금토큰에 대한 적용 가능 여부

예금토큰의 전송 모델에 따른 예금계약 성립 여부와 시기에 대한 검토 - 소각 및 발행(Burn & Issue) 모델

동 모델에서는 갑(A은행 거래)이 을(B은행 거래)에게 예금토큰을 전송하는 경우 A은행의 예금토큰(TDa)을 소각하고, B은행의 예금토큰(TDb)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예금토큰의 전송이 이루어지게 됨. "분산원장에 예금토큰의 전송이 기록이 된 때"의 기준은 B은행이 관리하는 예금토큰 지갑주소에 TDb가 전송된 것으로 분산원장의 상태가 최종 업데이트된 시점으로 봐야 할 것이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을이 B은행에 대하여 전송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함. 다만, 현행 예금거래기본약관에서는 예금이 되는 시기와 관련하여 예금토큰의 전송에 의한 입금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약관을 통해 예금이 되는 시기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분산원장기록의 법적 유효성과 관련해서는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분산원장 기반 디지털화폐에 관련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여 기술적 측면을 포함한 거래 현실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한 후 법령 개정 또는 해석론을 통해 분산원장기록의 법적 유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한국은행 CBDC 활용성 테스트에서 고려하고 있는 "미러링"은 기존 규제의 개선 이전에 현행 규제 체계 내에서 이용자 자금 보호 등에 문제가 없도록 실험을 실시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수단일 뿐이며, 예금토큰 규제 정비시에는 분산원장기록을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있어 관리가 필요한 위험을 식별하고 해당 위험의 관리 방법과 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

43

기존 규제 체계의 예금토큰에 대한 적용 가능 여부

*디지털 무기명 토큰(bearer instrument) 양도 모델은 문헌에 따라 transferable 또는 freely tradable 모델로 지정함.

예금토큰의 전송 모델에 따른 예금계약 성립 여부와 시기에 대한 검토 - 디지털 무기명 토큰 양도 모델*

동 모델에서는 갑(A은행 거래)이 을(B은행 거래)에게 예금토큰을 전송하는 경우 A은행의 예금토큰(TDa)이 그 자체로서 A은행과는 별도의 계약관계가 없는 을에게 전송이 되며, 이러한 전송 거래는 을이 거래하는 B은행의 지갑 프로그램(또는 서비스)이 A은행의 예금토큰(TDa)의 보관·관리를 지원하는 경우에만 전송이 가능함. 이러한 전송방식을 지원하는 디지털 무기명 토큰 양도 방식의 예금토큰(TDa)의 법적성격을 예금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될 수도 없음.

위 사안의 경우 예금토큰의 전송이 완료되더라도 이는 B은행의 부채가 아니고 여전히 A은행의 부채라는 점에서 을과 B은행에 대하여 TDa가 표시하는 전송액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TDa와 관련하여 B가 포함되는 보험관계가 성립될 수 없음.

또한, 을은 A은행과도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을과 A은행 사이에서도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거나 을이 A은행에 대하여 전송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경우 지명채권양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민법 제450조 제2항의 강행규정성을 고려하면 예금토큰의 전송을 지명채권양도의 법률관계로 구성하는 것은 검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예금토큰의 전송 모델과 관련하여 디지털 무기명 토큰 양도 방식에 대해서는 개별 양도 거래에 대해 중앙은행 화폐로 최종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폐의 단일성이 깨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적으로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별도의 규제나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디지털 무기명 토큰 양도 방식의 예금토큰은 수용하기 어려움.

* Rodney Garratt and Hyun Song Shin, Stablecoins versus tokenised deposits: implications for the singleness of money, 2023.04.

44

2022년 BIS CBDC 설문조사 결과 (2023.07. 발표)

86개 중앙은행이 설문에 응답하였는데, 약 93%가 CBDC 관련 작업을 진행 중

설문참여 중앙은행의 4분의1이 rCBDC 시범 운영 중

wCBDC 보다는 rCBDC 연구가 더 많이 진행 중

BIS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년에는 15개의 rCBDC와 9개의 wCBDC가 실제로 발행 및 유통될 것으로 예상

BIS 설문조사에 참여한 중앙은행의 60%는 암호자산의 부상에 대응하여 CBDC 작업을 강화하겠다고 응답

* BIS, Making headway – Results of the 2022 BIS survey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nd crypto, 202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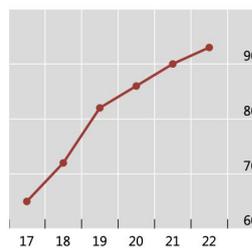
2022년 BIS CBDC 설문조사 결과 (2023.07. 발표)

Central bank involvement in CBDC work advances fur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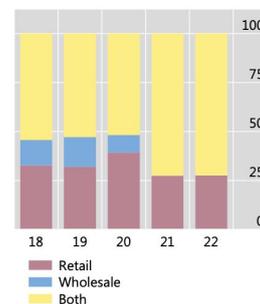
As a percentage of respondents

Graph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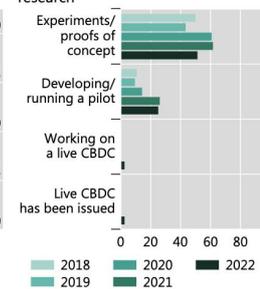
A. Engagement in CBDC work



B. Focus of work¹



C. Type of work in addition to research¹



¹ Share of respondents conducting work on CBDCs.

Sources: BIS central bank surveys on CBDCs and crypto, 2017–22.

* BIS, Making headway – Results of the 2022 BIS survey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nd crypto, 2023.07.

2022년 BIS CBDC 설문조사 결과 (2023.07. 발표)

CBDC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발행권한이 법적으로 명확해야 함

BIS의 설문조사 결과 CBDC 발행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중앙은행은 27%

약 8%의 국가에서 현재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거나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근 디지털 유로 규정 입법 제안(2023)

약 65%의 중앙은행은 CBDC 발행의 법적 권한이 없거나 불확실 (없음 25%, 불확실 40%)

"이 프로젝트는 CBDC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법적 지위 등 CBDC의 법적 토대에 대한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호주 중앙은행 CBDC 파일럿 결과보고서, 2023.08.)

* BIS, Making headway – Results of the 2022 BIS survey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nd crypto, 2023.07.
** 호주 중앙은행(RBA), Australian CBDC Pilot for Digital Finance Innovation - Project Report, 2023.08.

기관용 CBDC와 관련한 법적쟁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음

기관용 CBDC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법적 쟁점의 예시

기관용 CBDC(wCBDC)가 한국은행 당좌예금 및 별단예금의 입금 수단인 한국은행권,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 계좌이체방식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는가?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세칙 제8조)

기관용 CBDC(wCBDC)와 당좌예금 잔액간 전환의 근거가 현행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세칙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기관용 CBDC를 발행할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는?

당좌예금 거래대상 기관이 아닌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자는 기관용 CBDC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인가?

기관용 CBDC를 통한 금융기관(은행) 간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기관용 CBDC에 접근하기 위한 개인키의 관리방법(금융기관이 직접 관리, 한국은행이 수탁 관리)에 수반되는 법적 문제는 없는가?

이상의 법적 쟁점들은 향후 연구, 검토, 논의가 필요한 기관용 CBDC 관련 법적 쟁점의 일부 예시에 불과함
한국은행법, 한국은행 당좌예금거래대상 기관 규정,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세칙 및 절차,
한국은행 지급결제운영관리 규정, 세칙, 절차 등 제반 관련 규정의 세부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함

디지털화폐 시대의 중앙은행

중앙은행 인프라 : 신뢰성 있는 법화의 공급과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완결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공공 인프라

디지털화폐 시대에도 화폐와 지급결제에 관련한 중앙은행의 역할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민간 디지털화폐는 **상업은행 예금에 대한 청구권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을 토큰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형식으로 표현한 것**

민간 디지털화폐의 혁신이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그 신뢰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것인지, 중앙은행 결제 인프라가 민간 디지털화폐의 혁신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등의 과제가 주어진 상황

이중 통화시스템을 기반으로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화폐와 지급결제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효율적으로 분업을 해왔던 구조를 디지털화폐 시대에 적합하게 고도화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며, 법적 개선을 통해 중앙은행 화폐와 민간 디지털화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중앙은행화폐와 민간 디지털화폐의 공존을 위한 제도 설계의 기본원칙



중앙은행화폐와 민간 디지털화폐의 공존을 위한 제도 설계의 기본원칙



"민간의 토큰화된 돈은 '화폐의 단일성'을 위반하여 상대적 교환 가치가 액면가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현대 통화 시스템의 초석은 '화폐의 단일성'입니다."
 -Rodney Garratt and Hyun Song Shin (2023)

중앙은행화폐와 민간 디지털화폐의 공존을 위한 제도 설계의 기본원칙



화폐의 단일성은 정책적, 제도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지만 지급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제주체(이용자)에게 중요한 이용 편의성, 기존 지급결제인프라와의 호환성 등 화폐의 운영적 특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다양한 형태의 화폐가 동일한 운영 특성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기능적 일관성"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

* Lee Braine, Shreepad Shukla and Piyush Agrawal, Functional Consistency across Retail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nd Commercial Bank Money, 2023.08.

중앙은행화폐와 민간 디지털화폐의 공존을 위한 제도 설계의 기본원칙

(소매용) 디지털 화폐의 기능적 일관성(functional consistency)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미래 금융시장인프라를 설계

기능적 일관성 원칙이 없을 경우 디지털화폐 시장에서 소매 예금 및 지급서비스의 파편화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

특히, 소매용 디지털화폐의 경우 프로그래밍 가능한 지급(또는 조건부 지급) 등 새로운 기능의 제공을 차별화 포인트로 삼고 있는데, 이용자는 각 디지털화폐가 제공하는 고유한 운영적 특성을 누리기 위해 다양한 화폐에 유동성을 분산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디지털화폐 발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안정성과 위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

기능적 일관성 원칙을 구현하는 공통 운영 특성을 통해 민간 디지털화폐의 파편화 위험을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여 디지털 화폐의 채택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지급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소매용 디지털 화폐의 경우 BIS와 각 국 중앙은행에서 강조하고 있는 화폐의 단일성을 보완하는 원칙으로서 기능적 일관성 원칙을 제도 및 인프라 설계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다양한 디지털 화폐 생태계 모델을 연구하여 최적의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중앙은행, 금융당국, 은행,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자, 기존 금융시장 인프라(FMI) 운영기관 등이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기능적 일관성 원칙을 염두에 둘 필요

53

디지털화폐 제도 구성을 화폐의 단일성에만 의존할 수 없는 이유

프로그래밍 가능성이라는 운영적 특성이 전통적인 화폐와 디지털 화폐의 가장 큰 차별점으로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

전통적인 화폐인 현금(주화, 은행권)과 예금에 관한 제도는 화폐의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설계만으로도 화폐의 기본적 기능(계정단위, 교환수단, 가치저장)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었음

현재는 소액결제시스템의 모든 참가기관들이 지로, CMS, 오픈뱅킹 등을 활용하여 표준화된 방식으로 동일한 지급서비스(기능)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은행 예금의 교환수단 기능의 균일성이 확보되고 있음

그러나 만약 자동이체, 대량지급, 출금이체 등의 지급서비스를 특정 은행의 예금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면 예금의 교환수단 기능의 균일성이 깨지게 되며 이용자는 매 번 계좌간 유동성을 이전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 또한, 은행별 예금의 유출입이 현재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었을 것이며 은행의 건전성 관리 난이도도 더욱 높아졌을 것임

따라서, 조건부 지급 기능과 같은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디지털 화폐를 기반으로 구현하는 생태계의 인프라와 제도를 설계할 때 교환수단 기능의 균일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이러한 목표는 화폐의 단일성 원칙에만 의존해서 달성하기 어렵고 기능적 일관성의 원칙을 고려할 때에만 달성할 수 있음

⇒ 기능적 일관성의 원칙은 "화폐의 단일성" 유지와 "프로그래밍 가능성" 활용 사이의 균형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기능적 일관성의 원칙이 대고객 지급서비스의 다양성과 혁신성을 저해하는 "서비스의 획일성"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54

중앙은행화폐와 민간 디지털화폐의 공존을 위한 제도설계의 기본원칙

디지털화폐의 상호 운용성 확보 : 전통적인 화폐와 디지털화폐의 상호운용성, 디지털화폐 간의 상호운용성이 모두 확보되어야 함

현금, 은행예금과 같은 전통적인 화폐는 상호간에 쉽게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가 마련되어 운영되어 왔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주화, 은행권과 은행의 예금은 별개의 화폐 시스템이지만 주화, 은행권, 예금이 모두 동일한 가치로 상호간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이 확보되어 있음. 이는 은행이나 ATM을 통해 예금을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와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이며 한국은행(중앙은행)과 금융시장인프라가 수행해온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

A은행의 예금과 B은행의 예금이 상호운용성이 확보된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이 효율적으로 지급거래를 청산하고 최종 결제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임

디지털화폐 시대에도 현금, 은행예금, rCBDC, 예금토큰, 스테이블코인(전자화폐토큰) 등이 상호간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적 인프라를 구성하고 필요한 법제 개선을 추진할 필요

G7의 CBDC 관련 공공 정책 원칙(2021.10.)에서도 CBDC, 은행 예금, 현금 등 다양한 형태의 화폐를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CBDC 생태계 내에서 지급과 같은 지급 인터페이스 간에도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CBDC와 다른 디지털형태의 지급에 모두 적용되는 정책, 규제, 운영 표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금전 형태의 변화와 사법(private law)

"19세기 통화체계의 입법적 기반에서는 금전채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민법의 규율이 불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안법영, 금전사법의 법리에 관한 소고 - 권리대상으로서 금전의 탈유체화에 관해서 -, 1998.12.

"금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 민법은 다수의 규정에서 '금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규정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교환 및 지급수단의 등장은 금전의 법적 지위 및 이에 터잡은 민법규정의 정비를 요구한다."

*정진명, 암호화폐의 민사법적 문제, 2022.03.

CBDC, 예금토큰, 전자화폐토큰 등 새로운 화폐의 등장 ⇒ 민법을 포함한 사법적 규율 체계의 수정 필요성 제기

금전 형태의 변화와 사법(private law)

“예금토큰”을 은행에 예치하는 계약을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러바 보통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4.24. 선고 2008도1408 판결)

A가 비수탁형 지갑을 통해 예금토큰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B은행에 예치하기 위해 B은행의 예금 스마트계약으로 예금토큰을 전송한 경우에는 토큰을 전송하기 전에는 비수탁형 지갑을 통해 예금토큰에 대한 지배권(control)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으나 B은행에 예치하기 위해 예금 스마트계약으로 전송이 완료된 이후에는 전송한 양만큼의 예금토큰에 대한 지배권이 A로부터 B은행으로 이전됨

이 경우, 예금토큰이 금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B은행이 관리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전송이 완료되는 시점에 금전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A는 B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채권을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예금토큰(또는 전자화폐토큰)이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해석론이나 판례법리가 정립되거나 입법적으로 해결되기 이전에는 A와 B간의 예금토큰 관련 법률관계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금전 형태의 변화와 사법(private law)

A가 은행이 제공하는 수탁형 지갑을 통해 예금토큰을 보관하고 있다가 B은행의 예금상품에 예치하기 위해 B은행의 예금 스마트계약으로 예금토큰을 전송한 경우에는 문제가 더 복잡함. 은행이 제공하는 수탁형 지갑(custodial wallet)을 사용하는 경우 예금토큰, 전자화폐토큰의 지배권(control)은 전적으로 은행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예금토큰을 금전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전의 소유권이 개인키를 수탁, 관리하는 은행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은행이 제공하는 수탁형 지갑을 통해 예금토큰을 보관 관리하는 계약 자체가 예금계약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수탁형 지갑으로부터 은행이 관리하는 별도의 예금 스마트 컨트랙트로 예금토큰의 전송이 완료된 경우에만 예금계약의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이 불명확함

무엇보다 “금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예금토큰 또는 전자화폐토큰의 법적 지위나 규율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이를 “금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금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면 이를 “물건”의 임치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됨

그러나 비트코인을 민법상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와 전자적 기록이나 정보가 물건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 의견인 점을 고려하면 예금토큰, 전자화폐토큰 등을 민법상 물건으로도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고 금전과 물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93조의 임치는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예금토큰의 예치가 민법상 임치에 해당할 수 없게 됨

⇒ 현재로서는 예금토큰을 은행에 예치한 경우 예금토큰이 금전과 물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예금토큰의 예치계약은 임치 유사비전형계약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은행은 종류물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22.4.14. 선고 2021가단 5068564 판결 참고).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A가 B은행에 예금토큰 등을 보관 또는 예치한 경우 보관 또는 예치 약정(개별약정 또는 약관)의 내용에 따라 예금토큰 자체 또는 예금토큰에 표시된 금액에 상응하는 금전적 가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임

금전 형태의 변화와 사법(private law)

금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 이용에 수반하는 법률관계의 법적 불확실성

아울러 예금자보호법상 "예금 등"은 은행이 예금, 적금, 부금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으로 정의되어 있어 예금토큰을 "금전"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음

한편, 예금토큰이나 전자화폐토큰 등을 금전 또는 금전의 대용물로 해석할 근거가 없는 경우 금전 외의 재산권에 해당하게 되어 이를 이용한 거래는 금전 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매매계약이 아닌 교환계약에 해당하게 됨(민법 제596조).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거래 관념에 부합하지 않음. 예금토큰, 전자화폐토큰이 거래에서 지급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이는 금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예금토큰이나 전자화폐토큰과 같은 디지털 화폐를 지급수단으로 이용한 거래에는 매매계약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거래 관념에 부합

따라서, 예금토큰이나 전자화폐토큰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 이용에 수반하는 법률관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금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해석상 이를 기존의 현금, 예금 등과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이러한 규율체계를 바탕으로 사법적 법률관계를 명확하기 위한 해석론을 정립하거나 입법적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디지털자산의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

디지털화폐의 법적성격과 관련하여 해석론을 통해 예금토큰이나 전자화폐토큰의 유가증권성을 인정하고 유가증권 법리의 적용을 논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됨

유가증권에 관한 기존 법리는 유가증권이 서면이라는 것을 전제로 발전하였음
서면 형태의 유가증권을 대신하여 전자 기록, 또는 디지털 정보 등의 형태로 존재하고 유통되는 지급수단, 증권, 자산 등에 관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존재

전자기록 또는 디지털 정보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화폐의 경우 서면 증권의 점유에 대응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전자정보가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점유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민법학계에서는 전자정보를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또한, 비트코인이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해석론을 유추할 경우 디지털화폐의 물건성도 부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론적으로 점유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음.

디지털자산의 취득, 전송(양도), 보관, 담보설정, 선의취득 등 민사법적 쟁점의 경우 디지털자산의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해외의 연구 및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변화된 현실에 맞는 법리를 연구하고 법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자산의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리의 기반 위에서 디지털화폐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리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의 디지털자산 프로젝트, 미국 통일법위원회의 통일상법전 개정안(UCC 2022 Amendments), UK Law Commission의 Digital Asset 프로젝트 등

디지털화폐와 전자금융거래법의 거래법적 규정

스테이블코인 시스템 설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지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문언해석상으로는 "분산원장 지급주소"가 "계좌"라는 용어에 포섭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스테이블코인 전송을 전자자금이체에 포섭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예금토큰의 전송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제2조 제12호에서 "계좌나 계정"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을 보면 더욱 명확함 계정이라는 용어를 추가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자금이체업자(현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가 고객에게 부여한 계정이 계좌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기 때문

전자자금이체는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함)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지급인의 지급지시 또는 수취인의 추심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하는 것(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전자자금이체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를 전자자금이체의 효력발생시기로 규정하고 있음. 전자자금이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스테이블코인 전송이나 예금토큰의 전송을 전자자금이체 관련 조항에 포섭할 수 없는 현 상황은 채무해소의 시기와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의 채택과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므로 향후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참고] EU 자금이체규정의 용어 정의 사례

참고로 EU 자금이체규정(TFR)에서는 자금 이체(transfer of funds)와 암호자산 전송(transfer of crypto-asset)을 구별하여 별도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으며, 자금이체의 당사자는 송금인(payer), 수취인(payee)으로, 암호자산 전송의 당사자는 송신인(originator), 수신인(beneficiary)으로 표현하고 있음



참고로 EU 자금이체규정(TFR)에서는 자금 이체(transfer of funds)와 암호자산 전송(transfer of crypto-asset)을 구별함 e-money token에 해당하는 예금토큰(tokenized deposits)의 전송은 자금 이체(transfer of funds)에 해당됨 (자금이체의 정의에 "계좌" 등의 표현이 없기 때문에 e-money token의 전송을 자금이체로 포섭하는데 문제가 없음)

자산참조토큰(e-money token에 해당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이나 기타 암호자산의 전송은 암호자산의 전송에 해당됨

[참고] PSD3 Recital (16) Regulation (EU) 2023/1114 of 31 May 2023 lays down that electronic money tokens shall be deemed to be electronic money. Electronic money tokens should therefore be included, as electronic money, in the definition of funds.

01. 서론

02. 디지털화폐의 이해와 논의 현황

03. 화폐와 법제의 간극과 법적 불확실성

04. 디지털화폐 관련 법제 개선과제

05. 결론

63

04. 디지털화폐 관련 법제 개선과제

4.1.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정립

4.2. 예금토큰의 규제 정비 관련 고려사항

4.3. 디지털화폐 생태계의 기반 조성 - 중앙은행과 CBDC

4.4. 돈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비와 사법적 법률관계의 명확화

64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 기본 방향

규제 프레임워크(안)

전자지급수단과 동일한 기능, 동일한 위험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급수단 규제 체계로 포섭 (규제차익 방지)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의 새로운 위험	→	입법 정책적 결정의 영역 (가상자산법 vs 전자금융거래법)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전자화폐 토큰)	→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발행자, 서비스 제공자 규제
그 밖의 스테이블코인(알고리즘형 포함)	→	가상자산법에 규제 마련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안정 위험 관리	→	한국은행법, 지급결제도운영관리 규정 등을 개정하여 한국은행의 감시 체계 고도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과제

전자화폐 정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예: 2020.1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사례)

전자화폐의 기능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용도로 한정하기 보다는 **자금이체, 출금 등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에 의해 표시되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화폐적 가치로서 지급 거래를 할 목적으로 현금 또는 예금의 수령에 의해 발행되며 발행자 외의 자가 수용하는 것"이라는 EU 및 영국의 전자화폐 정의 참고

새로운 전자화폐의 정의와 기능의 확장을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전자화폐토큰) 규제 체계의 기초로 활용

전자화폐 발행자는 **언제든지 액면가에 상응하는 금전적 가치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동 규정을 준용 (예금토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상환청구 조건, 절차, 상환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보유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 (MiCA의 관련 조항 참고 가능)

전자화폐토큰과 현금, 예금과의 상환성 보장을 위해 현금 또는 예금과 교환을 통해서만 발행하도록 규제

전자화폐 및 전자화폐토큰 발행과 교환하여 수령한 자금(현금 또는 예금)을 발행자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과제

전자화폐토큰 준비자산을 은행에 예치, 신탁하는 방식은 금융안정에 대한 위험을 고려할 때 준비자산 관리 모델로 적합하지 않음
 중앙은행 당좌계좌(결제계좌)에 준비자산 100%를 예치하도록 규제하는 모델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상환성을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나(단, 도산 격리 특칙은 별도로 마련할 필요) 동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과 예금거래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포함될 수 있어야 함
 (한국은행법 개정 또는 한국은행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제2조 개정 등의 방안 등을 고려 가능)
 전자화폐토큰 도입 초기에는 금융안정 위험을 고려하여 적정 이용한도를 두되,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주기적으로 한도를 재검토
 전자화폐토큰 발행, 전송, 환급 등의 거래에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활용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해 스마트 컨트랙트의 표준 적합성, 기능 검증 필요
 발행자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대고객 설명과 실제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일인지 여부를 제3자가 검증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의 오작동, 오류 발생시 발행자(또는 지급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금융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마련 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

67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과제

주요국에서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적절한 규제 체계 마련을 통해 은행과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자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필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기존 전자지급수단 진입규제와 조화롭게 마련하고 규제 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진입규제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
 최소 자본금 요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자본금 특례 부여 필요 여부, 새로운 운영리스크와 금융안정 위험을 고려한 추가 자본금 적립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본금 규제 체계 마련 (자본금 규제가 상환청구권 보장과 금융안정 위험 최소화의 핵심 장치)
 중요 전자화폐토큰 발행자에 대한 규제 체계 마련(추가 자본금 적립, 정기적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별도 부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 등 검토 필요
 전자화폐토큰의 경우 중앙전산시스템 경유 의무 예외 인정 근거를 마련하여 분산원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지급서비스 제공의 법적 장애물을 해소할 필요 (분산원장기록을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있어 관리가 필요한 위험을 식별하고 해당 위험의 관리 방법과 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이는 예금토큰 관련 규제 정비에도 동일한 고려사항)

68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과제

전자화폐토큰의 전송은 계좌이체를 통한 자금의 이동 또는 화폐적 가치의 이전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실현하고자 하는 점과 이에 수반되는 위험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전자자금이체로 규율하지 못하는 현행 규제 체계는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개선 필요

전자자금이체에 준하는 "디지털화폐의 전송"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거나 "자금"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는 방안(4.4에서 논의) 검토 필요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2)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별도의 주체일 수 있다는 점을 규제 체계에 반영

발행자

준비자산 규제(준비자산의 구성, 분리 보관 및 도산 격리 등), 액면가 상환을 위한 직접적인 법적 청구권의 보장, 발행자 건전성 규제(자본금, 유동성, 경영업무 제한 등), 정보공개 및 설명의무(백서 공개, 이용약관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서비스 제공자(중개자) 규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운영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

서비스 제공자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및 관리가 별도의 주체에 의해 분리되어 수행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발행자 규제 체계 범위 밖에 있음
 서비스 제공자 별도 규제 필요 - 진입규제, 건전성, 영업행위, 운영 복원력, 이용자 자금 보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등
 ⇒ 영국의 디지털 결제 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및 관련 규제, EU의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 정의 및 관련 규제 체계, 일본의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의 정의 및 관련 규제 체계 등 주요국의 규제 체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탈중앙화 금융(DeFi) 서비스 형태로 스테이블코인 스테이킹이나 대출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전통 금융규제를 우회하거나 규제차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체계 형평화, 이용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글로벌 디파이 규제 논의 동향을 함께 참고하여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함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3)

은행에만 발행을 허용할 것인가, 비은행에게도 발행을 허용할 것인가?

스테이블코인은 은행만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거나 은행 규제 체계 내로 포섭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Arthur E. Wilmarth Jr., It's time to regulate stablecoins as deposits and require their issuers to be FDIC-insured banks, 2022.02.; US PWG, Report on stablecoins, 2021.11.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이 오직 지급수단으로서 기능하고 발행자가 대출업무 취급을 통해 신용을 창출하지 않는다면 은행에 대한 엄격한 규제 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반론이 제시됨

* Wilko Bolt et al., Getting the balance right: Crypto, stablecoin and CBDC, 2022.01.; Dan Awrey, Unbundling Banking, Money and Payments, 2022.06.

- 예금보험제도 등의 공적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에 수반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규제가 필요
- 준비자산 100%를 중앙은행 당좌계좌에 예치하거나 wCBDC로 담보하는 규제 모델을 채택할 경우 발행자 파산이나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로부터 유발되는 대량 인출 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예금보험제도 등 공적안전망 적용이 불필요
-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은행 규제 체계를 적용하는 주장은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발행자에게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부담시키고 은행과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우려

71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4)

금융안정 위험 관리를 위한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체계 고도화 등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한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감시대상의 개편 및 감시권한 강화를 검토해야 함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지급서비스 제공자 등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시스템이나 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면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준하는 감시대상으로 편입할 필요

지급결제시스템과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중심의 한국은행 감시대상을 지급결제시스템과 연계된 서비스 제공자,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과 연계된 서비스 제공자,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 및 이에 연계된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확대 검토

이러한 감시체계 고도화 추진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이자 한국은행의 감시 대상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시, 감독 관련 요구사항의 충돌이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상호 협력할 필요

72

예금토큰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의 관계

예금토큰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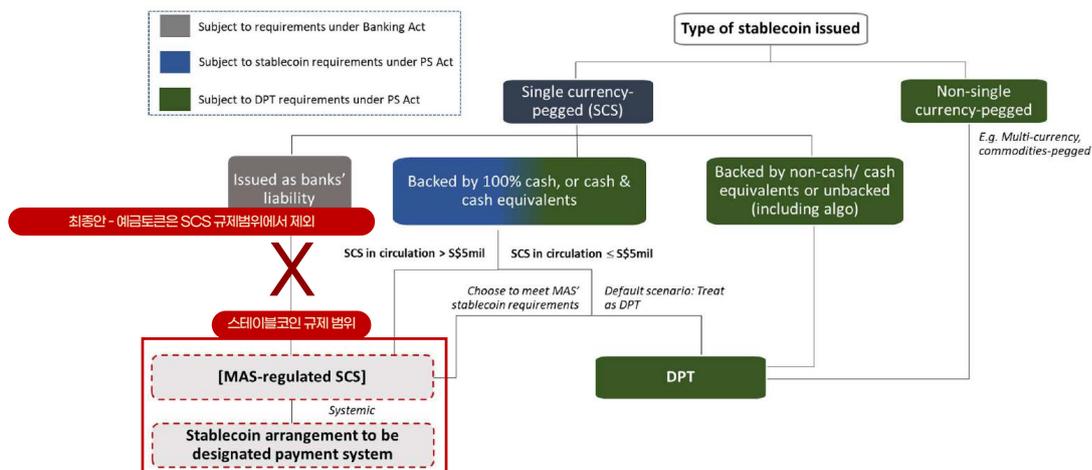
예금토큰에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규제 사례에서도 차이가 존재

EU의 경우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예금토큰(commercial bank money token)의 경우 MiCA 전자화폐토큰 규제 체계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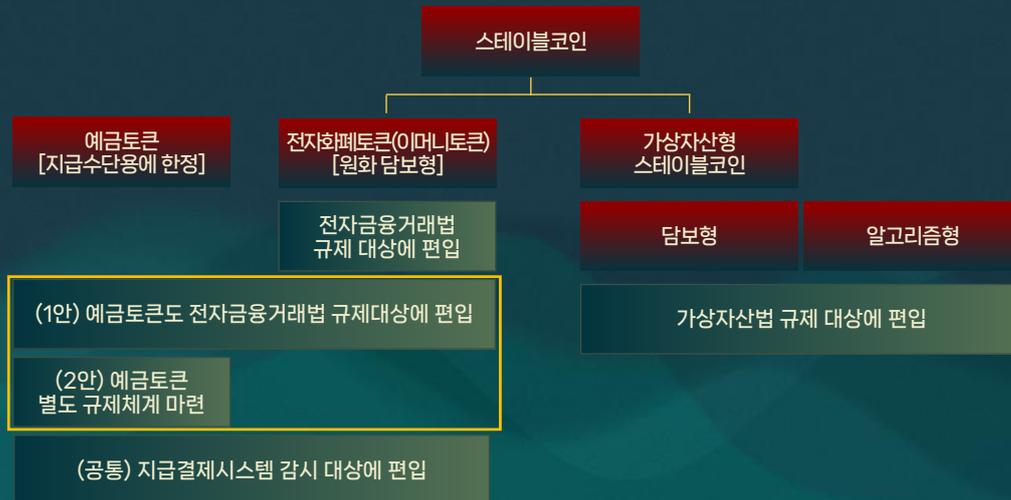
싱가포르 통화청은 당초 예금토큰을 단일통화고정 스테이블코인(Single-Currency Stablecoins, SCS)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은행이 예금토큰(은행의 부채)을 별도의 추가적인 규제(준비금, 건전성 요건) 없이 SCS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의견 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예금토큰을 SCS 규제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 100% 준비자산으로 담보되는 SCS와 부분 지급준비금을 기반으로 하는 예금토큰의 가치안정 메커니즘이 차이가 있어 보유자에 미치는 위험이 다르다는 피드백을 싱가포르 통화청이 수용
- 다만, 싱가포르 통화청은 예금토큰의 설계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과 은행 발행자가 SCS 규제 체계와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는 SCS를 설계하면 이를 SCS 규제 체계에 따른 스테이블코인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의 유연성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힘

[참고] 싱가포르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예금토큰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의 관계



예금토큰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의 관계

지급수단으로 이용되는 예금토큰의 규제 체계 정비 방안

(1안) "전자화폐토큰(이머니토큰)"의 정의를 전자금융거래법에 신설하고 은행이 발행자인 경우 일부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예금토큰의 기본적 규제체계를 전자화폐토큰(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로 일원화

EU의 규제체계 정비와 유사한 방식으로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에 부합하는 규제 설계가 용이

예금토큰에 대해서도 상환청구권의 보장, 이자 지급의 금지 등의 규제는 전자화폐토큰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예금토큰에 예금보험 제도 적용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점, 예금토큰에 대한 이자지급을 허용할 경우 전자화폐토큰과 불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

(2안) "전자화폐토큰(이머니토큰)"과 "가상자산" 정의에 "예금토큰"이 포섭되지 않도록 용어를 정비하여 예금토큰의 규제체계를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와 분리하여 별도의 규제체계를 마련

현행 법령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예금"을 가상자산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새롭게 정의해야 할 수 있고,

예금에 관한 정의를 가상자산법에 마련할 경우 기존 법령과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규제 복잡도가 올라갈 수 있음.

규제체계 정비 완료시까지 예금토큰의 실증실험을 적극 지원할 필요

민간의 실증실험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정비가 병행되다가 규제 체계 정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즉시 본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측면의 준비와 기술적 측면의 준비가 함께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예금토큰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한 은행이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하고 동 신고가 수리되어야 함

⇒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금융규제 샌드박스 대상 법령이 아니므로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의 관심과 지원 필요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정비 논의가 많이 늦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은행,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자,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 민간 주체들이 협력하여 우리나라 지급결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 및 한국은행의 많은 관심과 디지털화폐 실증실험 가이드라인 제시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

⇒ 한국은행 CBDC 활용성 테스트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민간 영역의 실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참고] MiCA와 예금토큰

EU의 전자화폐토큰과 암호자산의 정의

전자화폐토큰(제3조 제1항 제7호)

하나의 공식통화의 가치를 참조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암호자산

암호자산(제3조 제1항 제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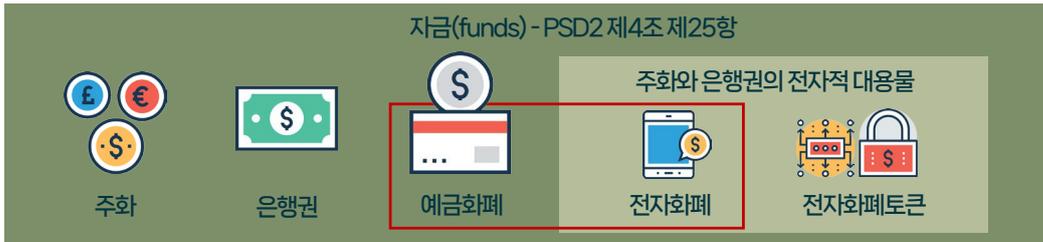
분산원장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전송 및 저장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현

전자화폐토큰(e-money tokens): 액션가에 상응하는 금전적 가치의 상환이 보장(MiCA 제49조).

전자화폐와 동일하게 주화(coins)와 은행권(banknotes)의 전자적 대응물(surrogates)로서 지급수단으로 기능

[참고] MiCA와 예금토큰

(EU MiCA 규제 원칙) 분산원장 기술 등에 의하여 발행된 금융상품(예: 증권형 토큰) → MiCA 적용범위에서 제외



(예외) 분산원장 기술 등에 의하여 발행된 예금화폐, 전자화폐가 "전자화폐토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금화폐와 전자화폐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MiCA도 함께 적용됨

EU의 예금토큰(Tokenized Deposits) → 설계 등을 고려하여 전자화폐토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MiCA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참고] MiCA와 예금토큰

EU의 경우 예금토큰(Tokenized Deposits)에 MiCA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음

MiCA 제2조 제4항은 암호자산이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 예금(deposits), 자금(funds)*에 해당하는 경우 MiCA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 단, 자금의 경우 전자화폐토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MiCA가 적용되도록 함.

[참고] PSD2 제4조 제25항의 자금(funds)에는 현금(주화, 은행권) 외에 예금화폐나 전자화폐도 포함

예금토큰의 경우 예금에 해당하여 MiCA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자금을 해당하여 전자화폐토큰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MiCA가 적용되는지 문제됨

EU는 EMD2(Directive 2009/110/EC) 등 기존의 규제체계를 통해 전자화폐 및 전자화폐와 교환하여 받은 자금을 "예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화폐와 교환하여 받은 자금의 법적 성격을 예금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기존의 전자화폐 규제체계와 MiCA가 충돌되지 않도록 MiCA Recital(9)에서는 "전자화폐토큰이 MiCA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예금으로 취급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EU MiCA의 문언해석상 은행이 예금토큰을 발행하고 등 예금토큰이 MiCA의 전자화폐토큰 요건을 충족한다면 PSD2, EMD2와 함께 MiCA의 전자화폐토큰 관련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판단됨

MiCA 제3조 제2항에서 제3조 제1항의 정의에 관한 기술적 요소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시장 및 기술 발전에 부응하여 정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EU 집행위원회가 위임법률을 통해 MiCA 규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금토큰과 관련한 위의 해석에 관해서는 향후 EU 집행위원회의 위임법률 제정 동향을 추가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 MiCA와 예금토큰

독일 은행산업위원회

"MiCA가 계좌기반의 예금을 명시적으로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예금토큰은 그렇지 않음.
MiCA의 규제 대상인 전자화폐토큰(e-money token)에는 토큰화된 상업은행 화폐가 포섭될 수 있음."

* German Banking Industry Committee, Working Paper on Commercial Bank Money Token v.151, 2023.07.

독일 중앙은행

"예금토큰이 토큰의 구체적인 설계와 토큰이 전송되는 방식에 따라 예금, MiCA 전자화폐토큰, 양도가능한 증권 또는 그 밖의 MiFID에의 금융상품에 해당할 수 있음. 예금토큰 발행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토큰이 예금보험으로 부보될지 여부도 불확실"

* Deutsche Bundesbank, Digital money: options for the financial industry, Deutsche Bundesbank Monthly Report July 2023, 2023.07.

[참고] MiCA와 예금토큰

ESRB 보고서

ESRB(European Systemic Risk Board, 유럽 시스템 리스크위원회)
: ECB 총재 및 부총재, EBA 의장, ESMA 의장 등이 총회(general board) 멤버로 참가

MiCA 입법협상 과정에서 신용기관(은행)이 엄격한 건전성 규제 등 은행 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산참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을 발행하는 신용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을 검토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신용기관이 전자화폐토큰을 발행하는 경우 신용기관은 이용자 자금 보호, 준비자산 관리, 자기자본 요구사항 등에 관한 EU 전자화폐지침 제2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관련 조항에 대한 특칙으로 마련된 건전성 규제 관련 MiCA의 조항도 적용되지 않음
또한, 중요전자화폐토큰 발행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 관련 추가적인 규제 요구사항도 동일한 이유로 신용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MiCA Recital 71도 같은 취지)

다만, 상환청구권, 이자 지급의 금지, 백서 규제, 백서 기재 정보에 관한 전자화폐 발행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회생 계획 및 상환계획 등에 관한 MiCA의 규정들은 신용기관이 전자화폐토큰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ESRB Task Force on Crypto-Assets and Decentralised Finance, Crypto-assets and decentralised finance: Systemic implications and policy options, 2023.05.

[참고] MiCA와 예금토큰

은행이 예금토큰을 발행하고 동 예금토큰이 MiCA의 전자화폐토큰 요건을 충족한다면 MiCA 제50조, MiCA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화폐토큰(예금토큰)의 보유 기간에 관련한 이자, 보상 등의 지급이 금지됨

* MiCA Article 50 Prohibition of granting interest

Notwithstanding Article 12 of Directive 2009/110/EC, issuers of e-money tokens shall not grant interest in relation to e-money tokens.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shall not grant interest when providing crypto-asset services related to e-money tokens.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1 and 2, any remuneration or any other benefit related to the length of time during which a holder of an e-money token holds such e-money token shall be treated as interest. That includes net compensation or discounts, with an effect equivalent to that of interest received by the holder of the e-money token, directly from the issuer or from third parties, and directly associated to the e-money token or from the remuneration or pricing of other products.

* MiCA Article 48. Requirements for the offer to the public or admission to trading of e-money tokens

2. E-money tokens shall be deemed to be electronic money. An e-money token that references an official currency of a Member State shall be deemed to be offered to the public in the Union.

3. Titles II and III of Directive 2009/110/EC shall apply with respect to e-money tokens unless otherwise stated in this Title.

[참고] MiCA와 예금토큰

EU MiCA에서는 예금토큰이 전자화폐토큰에 해당하는 경우 예금보험제도(및 투자자 보상 제도)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됨

MiCA 제51조 제5항에서 전자화폐토큰 백서에 전자화폐토큰이 예금보험제도(및 투자자 보상 제도)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경고를 포함하도록 규제

MiCA Article 51.

4. The crypto-asset white paper shall contain a clear warning that

- (a) the e-money token is not covered by the investor compensation schemes under Directive 97/9/EC;
- (b) the e-money token is not covered by the deposit guarantee schemes under Directive 2014/49/EU.

기능적 일관성과 조건부 지급서비스(conditional payments)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와 지급의 프로그래밍 가능성은 구별해야함 (ECB, 2022.11)

지급의 프로그래밍 가능성: 사전에 정의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지급을 지시하는 기능 (digital euro glossary)

ECB는 지급의 프로그래밍 가능성(programmability of payments)라는 용어를 조건부 지급(conditional payments)으로 변경 (ECB, 2023.02)

conditional payments, which is understood as the ability to instruct a payment automatically when pre-defined conditions are met.

*These payments were formerly referred to as "programmable payments". The new term will be used going forward in public communication.

"조건부 지급을 현재와 미래의 사용 사례에서 제외한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는 특정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구매할 때만 디지털 유로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는 다른 형태의 화폐와 동등한 수준의 전환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화폐의 단일성이 보장되지 않음)

디지털 유로의 기본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유로 시스템은 디지털 유로가 결코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CB, 2023.04)

Conditional payments, not conditional money(스웨덴 중앙은행, 2023.04). 일본 재무성 제2회 CBDC 전문가 회의에서도 같은 논의(2023.05).

rCBDC 자체를 프로그래머블하게 구현하는 방안은 주요국 중앙은행이 경계하고 있으며 기능적 일관성 원칙에도 위배됨

기능적 일관성과 조건부 지급서비스(conditional payments)

디지털 유로 규정에서는 지급서비스 제공자와 디지털 유로 사용자가 조건부 디지털 유로 지급거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제24조 제1항), 그러나 디지털 유로가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명문으로 규정

"The digital euro shall not be programmable money." (제24조 제2항)

*"조건부 디지털 유로 지급 거래"란 지급인과 수취인이 합의하여 사전에 정의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디지털 유로 지급거래를 의미 (제2조 제17호)

**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란 각 단위의 완전한 대체가능성을 제한하는 내재적 로직이 있는 디지털 화폐 단위를 의미(제2조 제18호). 즉, 특정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시간 제한이 부여되어 완전한 대체가능성(full fungibility)이 제한된 화폐 단위를 의미.

유럽중앙은행은 지급서비스 제공자가 상호 운용 가능한 조건부 디지털 유로 지급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세부 조치, 규칙, 표준을 채택해야 하며, 자금의 예치(reservation of funds)를 포함한 조건부 디지털 유로 지급 거래 실행에 필요한 기능을

디지털 유로 결제 인프라를 통해 제공해야 함 (제24조 제1항 a호 및 b호)

디지털 유로 규정의 관련 조항은 EU의 디지털 화폐가 화폐의 단일성과 기능적 일관성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

Conditional Payments API (Project Rosal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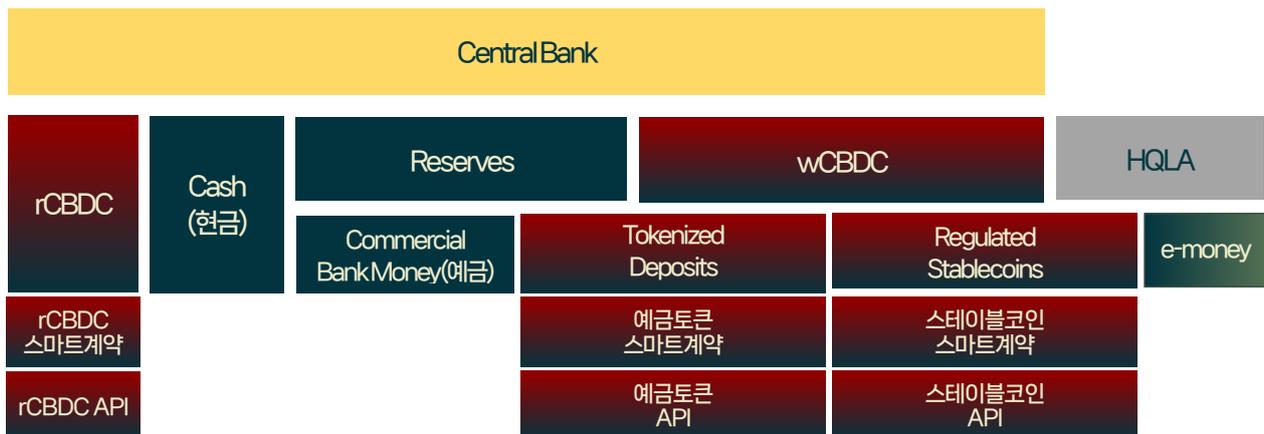
Categories	Sub-categories	API endpoints	Description
Programmability	Set locks	RequestToLock	Sends requests to lock funds in an account with one of the three types of lock specified below.
		TwoParty	Locks an amount of CBDC in an account. Decision to unlock and release the funds is given to the recipient's PIP. This lock contains an expiry date to ensure that funds will not be locked indefinitely.
		ThreeParty	Locks an amount of CBDC in an account. Decision to unlock and release the lock is given to a third-party PIP with an appropriate permission. This lock contains an expiry date to ensure that funds will not be locked indefinitely.
		HTLC	Locks an amount of CBDC in an account using HTLC.
	Cancel locks	CancelLock	Removes the lock previously placed on an account.
		DrawDownLock	Removes the TwoParty or ThreeParty lock previously placed on an account and draws down the funds either in full or in part.
		DrawDownHTLC	Removes the HTLC lock previously placed on an account and draws down the funds either in full or in part.
	Locks information	LockbyLockID	Returns information on a single active lock.
		LockbyPIP	Returns information on one or more active locks placed on all accounts with a specific PIP.
		LockbyAccount	Returns information on one or more active locks placed on an account.

"자금의 예치(reservation of funds)를 포함한 조건부 지급 거래 실행에 필요한 기능"의 제공 사례

"디지털 파운드에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영란은행, 202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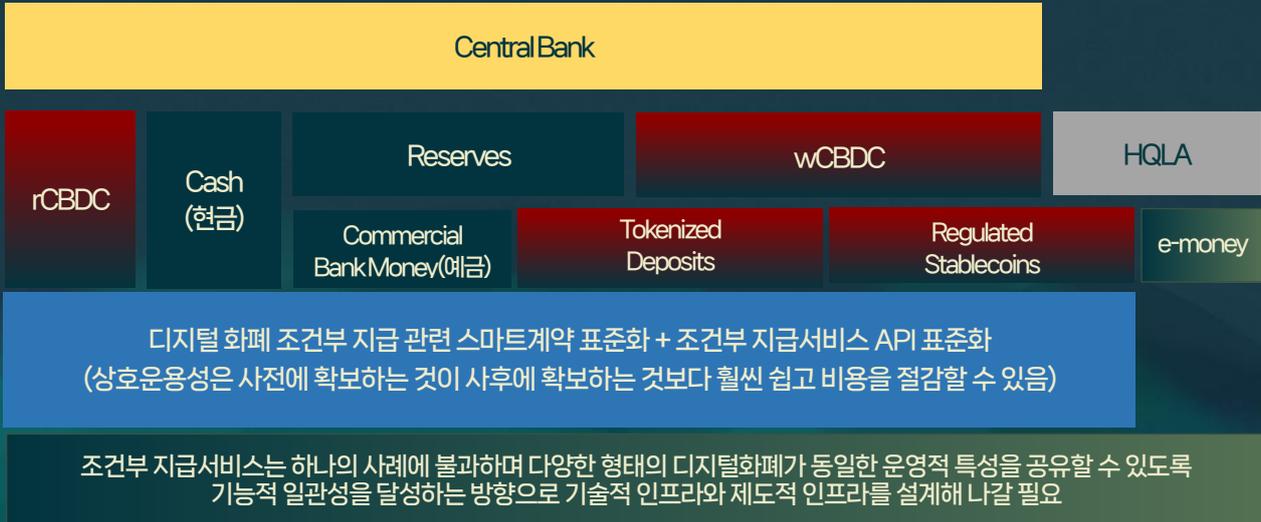
*그림: BIS, Project Rosalind - Building API prototypes for retail CBDC ecosystem innovation, 2023.06.

기능적 일관성과 조건부 지급서비스(conditional payments)



디지털화폐별 기능이 상이하다면 디지털화폐의 파편화와 이용기관, 이용자 모두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

기능적 일관성과 조건부 지급서비스(conditional payments)



중앙은행화폐와 민간 디지털화폐의 공존을 위한 제도설계의 기본원칙의 구현

중앙은행 당좌계좌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개선은 화폐의 단일성, 기능적 일관성, 상호운용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

특히, 다양한 형태의 화폐간의 상호운용성의 확보는 결국 상호간 원활한 교환(전환)을 뒷받침하는 금융시장인프라와 중앙은행 화폐를 통한 최종 결제가 보장되어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중앙은행 당좌계좌에 대한 접근 정책과 wCBDC에 대한 접근 정책은 매우 중요한 제도적 의의를 지니고 있음

한국은행의 정책적 결정 사항이지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중앙은행 당좌계좌 개설과 지급결제시스템 직접 참가 허용 등의 접근성 개선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화폐의 단일성, 기능적 일관성, 상호운용성이라는 제도설계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음

주요국에서는 화폐(money)-지급서비스(payments)-은행업(banking)의 분리*가 이미 현실화 되었음.

기술 발전과 지급결제 환경 변화로 인해 화폐-지급서비스-은행업을 강하게 결합하고 있던 법과 제도 역시 변화하고 있는 것임.
특히, EU와 영국의 규제 체계는 전자화폐 및 전자화폐와 교환하여 받은 자금이 예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체계를 바탕으로 전자화폐와 성격이 유사한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이 아니라는 결론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설계의 출발점이 되고 있음

*이 표현은 Dan Awrey 교수의 논문을 참고한 것임. Dan Awrey, Unbundling Banking, Money and Payments, 2022.06.

전자화폐를 발행하면서 수령한 자금과 예금을 구별하는 영국과 EU의 입법례

영국은 2001년 금융서비스시장법 시행령에서 전자화폐를 발행하면서 이와 교환하여 수령한 자금을 예금(deposits)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2001년 금융서비스시장법 시행령 제5조 및 제9A조). 또한, 전자화폐를 발행하고 이와 교환하여 수령한 자금을 기반으로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2011년 전자화폐규정 제32조 제2항).

⇒ 전자화폐를 발행하면서 이와 교환하여 수령한 자금을 여신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함으로써 동 자금의 성격을 예금과 구별

EU 전자화폐지침(Directive 2009/110/EC) Recital 13에서는 전자화폐의 발행이 Directive 2006/48/EC에 따른 예금수취행위(deposit-taking activity)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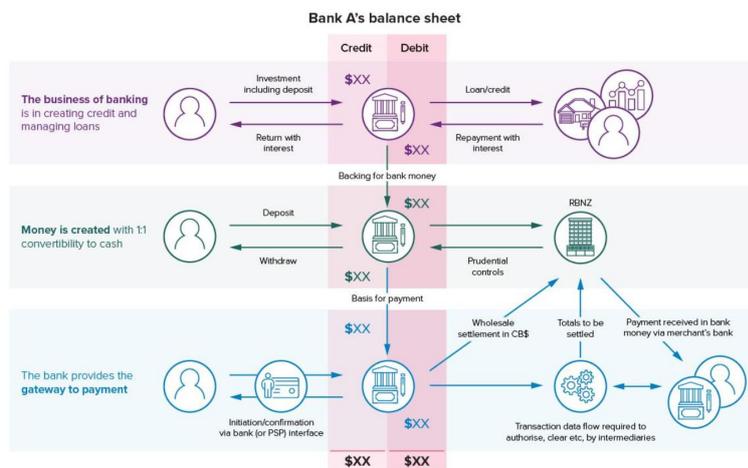
한편, EU 암호자산시장규정 Recital 9에서는 Directive 2014/49/EU에 정의된 deposits 요건을 충족하는 암호자산이 MiCA 적용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지만 암호자산이 전자화폐토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MiCA 규정이 적용)라는 점을 강조하고 전자화폐 및 전자화폐와 교환하여 수령한 자금이 EU 전자화폐지침에 따라 예금(deposits)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전자화폐토큰을 MiCA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예금(deposits)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밝힘

* Directive 2006/48/EC는 현재 Directive 2013/36/EU로 변경되었음

Directive 2013/36/EU 제9조 제1항에서는 각 회원국이 신용기관(은행) 이외의 개인 또는 사업체가 대중으로부터 예금 또는 기타 상환 가능한 자금을 받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EU 전자화폐지침에서 전자화폐 발행이 Directive 2013/36/EU에 규정된 예금수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의 의미는 전자화폐 발행이 Directive 2013/36/EU 제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은행업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Money, Payments, Banking의 결합(현행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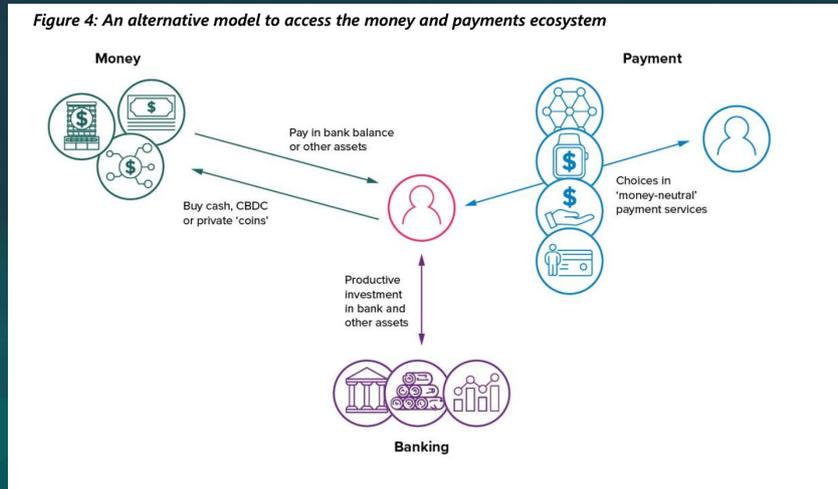
Figure 3: The bundling of banking, money and payments



"이 시스템이 신뢰할 수 있는 민간화폐의 유일한 모델일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위험을 수반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모델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규제는 위험을 제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형태의 화폐에 대하여 현재 은행이 누리고 있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신뢰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를 개발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 2023.04.)

*그림 : 뉴질랜드 중앙은행, Future of money - private innovation, 2023.04.

Money, Payments, Banking의 분리



*그림 : 뉴질랜드 중앙은행, Future of money - private innovation, 2023.04.

Money, Payments, Banking의 분리

영국의 디지털 결제 자산(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세부 규제 체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관련 규정들이 기존 전자화폐 규정과 지급서비스 규정 등을 기반으로 설계되므로 전자화폐를 발행하면서 수령한 자금과 예금을 구별하는 기존 규제체계의 틀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디지털 결제 자산을 발행하면서 이와 교환하여 수령한 자금이 대해서도 이를 여신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 ⇒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결제 자산을 발행하면서 수령한 자금이 예금이 아니고, 디지털 결제 자산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여신 업무 취급 등을 통해 은행 규제 체계를 회피하여 사실상 은행업을 영위하려는 것이 아닌 이상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위험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에 위배됨

Dan Awrey 교수는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무중개규칙(no-intermediation rule)"을 제안하는데,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자는 지급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취한 자금으로 신용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준비자산 100%를 중앙은행 당좌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Dan Awrey, Unbundling Banking, Money and Payments, 2022.06.

"화폐와 지급결제는 더 이상 은행의 전유물이 아니다."
(존 쿤리프 전 영란은행 부총재, 2023.02.)

Money, Payments, Banking의 분리에 따른 중앙은행 당좌계좌 개방

주요국에서는 이미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중앙은행 당좌계좌(또는 결제계좌) 개방이 이루어졌거나 추진되고 있음
일부 국가에서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결제계좌를 개방하기도 함

(영국) 영란은행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자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결제계좌를 개방

(일본)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자격을 자금이동업자까지 확대, 자금이동업자가 일본은행에 당좌계좌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청산참여자로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청산참여자는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스템 직접 참가기관으로 이해하면 됨)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연방준비은행 결제계좌(master account) 접근 관련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자가 동 가이드라인의 각 원칙별 세부 평가기준을 충족하도록 준비하여 연방준비은행 결제계좌 이용 신청을 하고 심사를 통과할 경우 결제계좌 개설이 가능

(EU)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의한 PSD3, PSR1 법안에는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자의 지급결제시스템 직접 참가를 허용하고 은행 계좌 접근성을 개선하며 중앙은행 계좌에 이용자 자금을 보관할 수 있는 이용자 자금 보호 옵션을 추가로 도입(단, 중앙은행 재량 인정)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결제안결성 지침에 따라 회원국이 지정한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할 수 있는 기관 목록에 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급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직접참가의 법적 기반을 정비할 예정

*EU는 PSD3를 통해 지급서비스지점(PSD2)과 전자화폐지점(EMD2)의 통합을 추진 중이며, PSD3의 지급기관은 PSD2에 따른 지급기관과 EMD2의 전자화폐기관을 포괄하는 용어임

기관용CBDC(wCBDC)를 통한 중앙은행 결제 인프라 접근성 확대

기관용 CBDC의 이점 중 하나로 은행 외에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자까지도 중앙은행 화폐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급결제시스템의 경쟁과 활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음

* BIS, The future monetary system, BIS Annual Report 2022, 2022.06.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중앙은행 당좌계좌 개방과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자가 기관용 CBDC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기술적인 측면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관용 CBDC와 비은행 지급서비스 제공자가 발행한 전자화폐토큰을 연계하는 것도 간접형CBDC(또는 합성CBDC) 모델 중 하나로 검토될 수 있음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CBDC 활용성 테스트의 CBDC 네트워크도 향후 비은행 금융기관 또는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발행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100%를 기관용 CBDC로 보유하고 이에 기반하여 디지털 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도록 설계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동 보도자료, 한국은행-금융당국, BIS와 손잡고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 공동 추진, 2023.10.4.

"비은행 금융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을 조성하고, 은행-비은행 간 경쟁 제고"가 한국은행 CBDC 활용성 테스트 의의 중 하나로 제시됨

화폐의 단일성, 기능적 일관성, 상호운용성의 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관용 CBDC를 활용한 중앙은행 결제 인프라 접근성 개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향후 한국은행법, 지급결제운영관리규정, 한국은행 당좌예금거래대상기관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 필요

[참고] 영란은행의 Omnibus Account 사례

영란은행의 옴니버스 계좌는 규제 대상 결제시스템 운영자가 참가기관의 자금을 대신하여 통합보관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됨

옴니버스 계좌는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시간 뿐만 아니라 운영시간 외에도 자금을 보유할 수 있어 참가기관은 언제든지 규제 대상 결제시스템 운영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자금이체 가능 (단, 참가기관 명의 지급준비금 계좌와 옴니버스 계좌간의 이체는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중에만 가능하므로 거액결제시스템 마감 전에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함)

옴니버스 계좌를 기반으로 규제 대상 결제시스템 운영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결제되므로 신용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고 참가기관들은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에 할당된 자금을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어 일중 유동성을 유연하게 관리 가능

영란은행은 민간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자가 영란은행 거액결제시스템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옴니버스 계좌를 신설(2021.04.)하였으며 분산원장 기반의 민간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자도 옴니버스 계좌 개설 신청 가능

[참고] 옴니버스 계좌를 통한 분산원장 기반 민간 거액결제시스템 - Fnality

다국적 금융회사들이 기관 간 채권거래, 자금이체 등에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공동 출자하여 설립(2019.6)한 Fnality사가 옴니버스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으며, 영국 재무부는 Sterling Fnality Payment System을 은행법에 따른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공식 지정하고 영란은행의 감독 대상으로 편입(2022.8)

Fnality Payment System은 영란은행의 옴니버스 계좌를 통해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최초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서 운영 개시를 준비하고 있음 (2023년 3분기 운영 개시 예정이었으나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중앙은행 화폐로 최종 결제가 보장되는 분산원장 기반의 민간 거액결제시스템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사례임

돈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비 - "자금"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전자금융거래법에 "자금"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전자지급거래"(제2조 제2호), "전자자금이체"(제2조 제12호), "직불전자지급수단"(제2조 제13호), 지급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제13조) 등에서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자금을 지급", "자금을 이체" 등의 표현이 등장

"자금"에는 현금, 예금뿐만 아니라 전자화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예금토큰, 전자화폐토큰 등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새롭게 도입하고자 했던 지급지시전달업(개정안 제2조 제2호의6)과 관련하여 지급지시전달업자가 이용자의 지급지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자금"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개정안 제36조의3 제2항 제5호)

⇒ 자금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전자화폐 또는 전자화폐토큰 등을 보유함으로써 규제를 회피할 위험이 존재

* 2020년 11월 발의된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안번호 2105855)을 기준으로 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 개념인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모두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거나 이체하는 행위로 정의(동 법 제2조 제2호). "자금"에 전자화폐, 전자화폐토큰 등이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악용되고 동 법을 우회한 신종 금융사기에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에 신설할 것을 제안한 자금에 관한 정의와 동일한 정의 규정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도 동일하게 규정하는 방안이 대해 검토해볼 필요

* 아울러 금융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동 법의 적용대상을 비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자, 지급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계좌"만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는 동 법 제2조의5에 따른 임시조치, 지급정지 등의 대상을 계정, 지급주소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돈에 관한 법률 용어의 정비 - "자금"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법적으로 "자금"의 개념을 명확하게 할 경우 "돈(금전)"으로 기능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과 그렇지 않은 가상자산형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차이가 더욱 선명해지고 이에 관련된 사법적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됨

EU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전자화폐토큰에 해당하는지, 자산참조토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상당히 달라지게 됨

전자화폐토큰은 자금(funds)에 해당하므로 전자화폐토큰과 암호자산을 교환하는 행위는 "암호자산과 자금의 교환(MiCA 제3조 제1항 제9호 c목)"

자산참조토큰과 암호자산을 교환하는 행위는 "암호자산과 다른 암호자산의 교환(MiCA 제3조 제1항 제9호 d목)"

자금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통해 제3장에서 살펴본 디지털화폐의 금전성에 관한 사법적 법리의 문제점도 해결 가능

자금에 관한 정의 규정에 포섭되는 화폐, 지급수단, 디지털화폐 등의 법적 성격은 모두 금전 또는 금전의 대용물로 파악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예금토큰, 전자화폐토큰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화폐를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에 이를 금전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됨

⇒ 예금토큰, 전자화폐토큰 등을 금전 또는 금전의 대용물로 해석하지 않는 경우 이는 금전 외의 재산권에 해당하게 되어

이를 이용한 거래가 금전 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에 해당되어 매매계약이 아닌 교환계약에 해당하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나 자금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면 관련 거래의 사법적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음

[참고] 디지털화폐의 금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EU의 입법 추진 동향

소매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가 자금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정의를 수정하였음.
이에 따라 주화, 은행권, 예금화폐, 전자화폐 외에 디지털 유로와 같은 rCBDC도 PSD3 자금의 정의에 포함됨.
MiCA의 전자화폐토큰은 전자화폐로 간주되므로 PSD3 자금의 정의에 포함됨.
단, 도매용 CBDC는 PSD3 자금을 포함되지 않음.

PSR Article 3(Definitions)

(30) 'funds' means central bank money issued for retail use, scriptural money and electronic money;

PSD3 Recital

(15) The definition of funds should cover all forms of central bank money issued for retail use, including banknotes and coins, and any possible futur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electronic money and commercial bank money. Central bank money issued for use between the central bank and commercial banks, i.e. for wholesale use, should not be covered.

(16) Regulation (EU) 2023/1114 of 31 May 2023 lays down that electronic money tokens shall be deemed to be electronic money. Electronic money tokens should therefore be included, as electronic money, in the definition of funds.

PSR1 Recital

(28) The definition of funds should cover all forms of central bank money issued for retail use, including banknotes and coins, and any possible futur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e-money and commercial bank money. Central bank money issued for use between the central bank and commercial banks, i.e. for wholesale use, should not be covered.

(29) Regulation (EU) 2023/1114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lays down that electronic-money tokens shall be deemed to be electronic money. Electronic money tokens are therefore included, as electronic money, in the definition of funds in this Regulation.

* 디지털 유로 규정 제5조에서는 PSD3가 디지털 유로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 PSR3, PSR1에서는 디지털 유로가 자금(funds)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의를 수정

101

01. 서론

02. 디지털화폐의 이해와 논의 현황

03. 화폐와 법제의 간극과 법적 불확실성

04. 디지털화폐 관련 법제 개선과제

05. 결론

디지털화폐에 관한 법적 검토의 목적과 논의 대상

"디지털화폐가 발행, 유통될 경우에 대비한 법적 기반의 조성을 위해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법적 쟁점과 그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
(IMF, "Legal aspects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2020.11.)

현재의 통화시스템은 공공화폐와 민간화폐가 공존하고 있음
CBDC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화폐가 실제로 발행되는 경우에도 전통적인 형태의 화폐 및 새로운 형태의 민간 디지털화폐와 공존하는 것을 전제로 관련 논의와 연구가 진행 중

디지털화폐에 관한 법적 검토의 논의 대상도 CBDC와 민간 디지털화폐(예금토큰, 전자화폐토큰)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

화폐와 관련한 법의 역할

화폐가 활용되는 거래의 안전과 경제주체의 화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역할

금전 형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금전이 활용되는 거래의 안전과 금전에 대한 경제주체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법의 역할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음

화폐 형태의 변화에 부응하는 입법과 법리의 발전을 위해서 기존 법제 및 법리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논의는 화폐 역사의 새로운 변곡점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

주요국이 그리고 있는 화폐의 미래

"디지털유로는 기존의 현금 및 민간 디지털 지급수단과 병존하며 더욱 경쟁력있고 효율적이며 혁신적인 지급결제와 디지털 금융을 뒷받침 할 것" (EU 집행위원회, 2023.06.)

"Payment Stablecoin을 화폐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 2023.06.)

"화폐와 지급결제의 발전이 현상 유지로 끝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안일한 생각일 것이다."
(존 쿤리프 전 영란은행 부총재, 2023.02.)

"현재 구체적인 사용 사례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해서 디지털 화폐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일 필요는 없다.
철도와 아이폰에서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이 없을 것이라고 의심했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된다."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2023.07.)

"Web 3와 같은 새로운 온라인 경제활동이 어떻게 등장할지 염두에 두고 지급결제의 진화를 고려해야 한다."
(구로다 전 일본은행 총재, 2023.03.)

디지털화폐 시대를 맞이하는 법학계의 과제

CBDC, 예금토큰,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디지털 형태의 화폐의 부상에 따라
기술발전에 따른 금전 형태의 변화와 법제 사이의 간극을 좁혀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는 상황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화폐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Bad Money를 Good Money로 전환하기 위한 규제 체계를 설계하는 일이며,
지급서비스 이용자가 지급수단 이면의 작동 구조와 위험성에 대한 걱정 없이
지급수단을 신뢰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작업이다."

디지털화폐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디지털화폐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제 개선 및 법리 발전을 위한 법학계의 관심과 연구가 절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특별주제】

● ● ●

토 론

김흥기

연세대학교 교수

토론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민간디지털화폐의 법적 검토)



2023. 10. 13.(금)

연세대학교 김흥기 교수

Yonsei Law School

자산과 화폐



달러가 묻는다,
듣도 보도 못한 통화가
미래화폐가 될 수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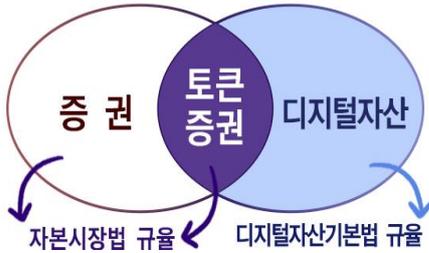
화폐

자산

BTC USD 차트 (BTC)



- "자산(assets)"은 개인 또는 기업이 소유하는 유/무형의 가치물 (긍정적 이미지 ⇄ 현실??)
- "가상자산", "토큰형 증권" 등은 자산의 일종
- "화폐(currency)"란 상품의 가치를 나타내어 지불 기능을 가진 교환 수단. 주화, 지폐, 은행권 등
- "법정화폐"(국가에서 발행하고 보증), "암호화폐", "전자화폐"(전자금융거래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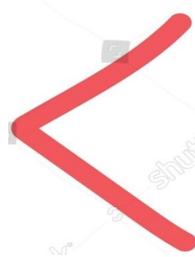


- 전자토큰 (일반용어)
- 전자적 증표 (가상자산법)
- 토큰형 증권 (자본시장법)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공통요소
 (1) 인터넷 네트워크상에서 발행, 유통되는 (2) 경제적 가치가 있는 (3) 전자적 파일(증표)

내용과 기능에 따른 판단

명칭
이름



내용
기능

가상화폐, 코인, 토큰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암호자산
 DAO(Data Access Object)

전자토큰 (일반용어)
 전자적 증표 (가상자산법)
 토큰형 증권 (자본시장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1) 인터넷 네트워크상에서 발행, 유통되는 (2) 경제적 가치가 있는 (3) 전자적 파일(증표)

이름때문에 오해, 현혹되어서는 안됨 🙅 '무엇인지는' 내용과 기능에 따라 판단



발표문 13면

- 전자토큰은 자산 또는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가상자산은 화폐 기능 어려움 (동의)**
- 지급결제수단으로서는 **CBDC, 예금토큰, 스테이블코인이 현실적 대안**
- (질문)** 21면,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화폐유사형'과 '암호자산형'으로 구분 → 우리도 같은 방식을 취하면, 디지털화폐형은 '전자금융거래법', 암호자산형은 '가상자산법'에 의해서 규율될 가능성이 높는데, **한국은행법(화폐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디지털화폐, 디지털자산에 사용되는 기술

- 1 분산장부기술**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위조와 변조 방지)
- 2 컴퓨터 프로그래밍** (다양한 사용처, 스마트계약, 전자토큰)
- 3 인터넷 네트워크** (국경 간 거래, 신속성)

디지털화폐 제도 구성을 화폐의 단일성에만 의존할 수 없는 이유

프로그래밍 가능성이라는 운영적 특성이 전통적인 화폐와 디지털 화폐의 가장 큰 차별점으로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

전통적인 화폐인 현금(주화, 은행권)과 예금에 관한 제도는 화폐의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설계만으로도 화폐의 기본적 기능(계정단위, 교환수단, 가치저장)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었음

현재는 소액결제시스템의 모든 참가기관들이 지로, CMS, 오픈뱅킹 등을 활용하여 표준화된 방식으로 동일한 지급서비스(기능)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은행 예금의 교환수단 기능의 균일성이 확보되고 있음

그러나 만약 자동이체, 대량지급, 출금이체 등의 지급서비스를 특정 은행의 예금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면 예금의 교환수단 기능의 균일성이 깨지게 되며 이용자는 매 번 계좌간 이동성을 이전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 또한, 은행별 예금의 유출입이 현재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었을 것이며 은행의 건전성 관리 난이도도 더욱 높아졌을 것임

따라서, 조건부 지급 기능과 같은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디지털 화폐를 기반으로 구현하는 생태계의 인프라와 제도를 설계할 때 교환수단 기능의 균일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이러한 목표는 화폐의 단일성 원칙에만 의존해서 달성하기 어렵고 기능적 일관성의 원칙을 고려할 때에만 달성할 수 있음

⇒ 기능적 일관성의 원칙은 "화폐의 단일성" 유지와 "프로그래밍 가능성" 활용 사이의 균형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기능적 일관성의 원칙이 대고객 지급서비스의 다양성과 혁신성을 저해하는 "서비스의 획일성"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발표문 54면

디지털화폐의 특성을 고려하면 특정한 법률에만 의존할 수 없음. 기능과 내용을 보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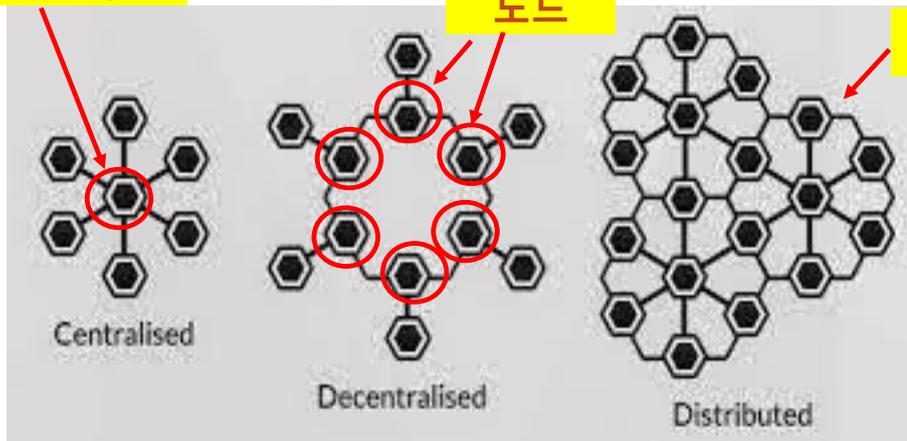
7 | Yonsei Law School

CBDC 체계

중앙집중기관

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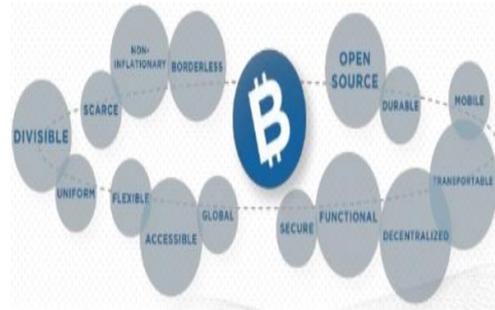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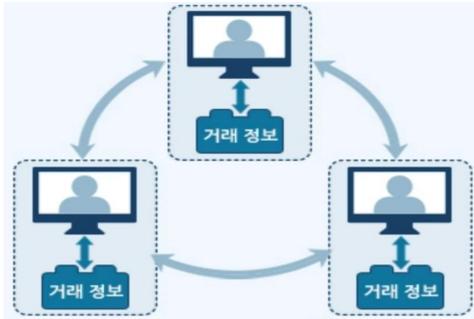
P2P



- ✓ CBDC 발행시 중앙집중기관(한국은행)을 둘 것인지?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 ✓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 스테이블코인 등의 법적 쟁점과 제도화 검토에 필요한 논의가 부족 ☞ 동의. 민감한 문제이므로 외국의 운용사례 검토

8 | Yonsei Law School

분산장부형 거래시스템



- ✓ **중개기관 없음** ⇨ P2P네트워크에 거래정보 기록
- ✓ 블록체인 기술(*해시에 의한 작업증명)을 통해서 위조(해킹) 방지
- ✓ 스마트계약(*실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래조건 관리
- ✓ 실제로는 일시중지, 래핑 등으로 관여 (**진정한 탈중앙은 어려움. 과장되어 있음**)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토큰화하는 이유 그리고 한계

"비유동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열어줌"

(예1) 우표 수집가가 자신의 수집 컬렉션을 박물관에 위탁하여 전시 및 보관하면서 해당 컬렉션에 관한 권리를 토큰화 권리를 분할하여 공유하고 이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

(예2) 아티스트가 소셜미디어나 메타버스 공간에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해당 콘텐츠를 상업활동이나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토큰화하여 판매함으로써 중앙화된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지식재산권을 통해 수익을 창출

법률 및 규제의 불확실성: 어떤 법과 규제가 적용될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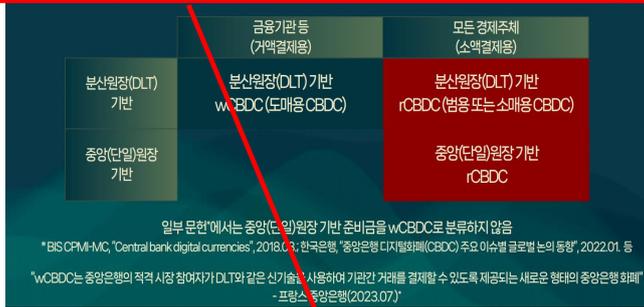
당사자간 법률관계의 불확실성: 토큰을 보유한 자의 권리, 토큰과 실물자산(또는 금융자산) 간 연계의 법적 실체 등이 불명확

토큰화된 자산이 나타내는 자산 또는 권리 등의 관리 체계 부재

발표문 25면

- 어떤 법규제가 적용될지 불명확한 경우 많음 (동의)
- 기술이 사용되는 내용과 기능에 따라 **관련법령의 유추적용이 현실적 대안**
- **자본시장법, 가상자산법, 전자금융거래법, 한국은행법** 등
- 기술의 사용범위와 폭이 너무 넓어서 일률적인 규제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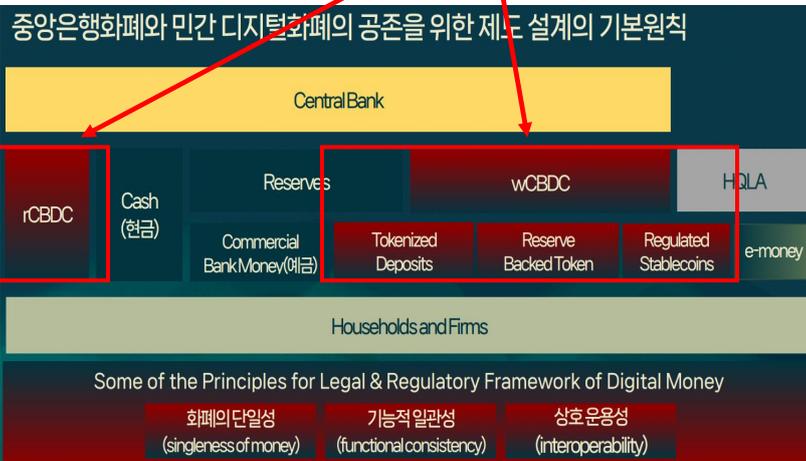
wCBDC의 범위 -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만 wCBDC인가?



발표문 16면

- 분산원장 기반하는 경우에만 CBDC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중앙단일원장 방식이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일 수 있음
- (질문) 17면, 금융기관결제용과 소액결제용 CBDC를 **이원화하겠다는 것인지?** 운영사례가 있는지?
- (질문) 18면, 38면, 예금토큰은 예금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현행 제도를 활용 가능. **물건을 사고 예금토큰을 건네주는 것과 계좌 이체와의 차이?** 은행계좌 없이도 예금토큰을 건네준다는 것인지?

한국은행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특별 규정을 두어야 할듯
 - 특별규정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 중앙은행의 성격상 적절할 것 같지 않음
 - 가상자산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화폐는 가상자산에서 제외



발표문 50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1)

규제 프레임워크

전자지급수단과 동일한 기능, 동일한 위험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급수단 규제 체계로 포섭 (규제자의 방지)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의 새로운 위험	→	입법 정책적 결정의 영역 (가상자산법 vs 전자금융거래법)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전자화폐 토큰)	→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발행자, 서비스 제공자 규제
그 밖의 스테이블코인(알고리즘형 포함)	→	가상자산법에 규제 마련

발표문 64면

- 일단 증권규제를 하는 것이 안전 ⇨ EU의 경우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예금토큰은 MiCA 전자화폐 토큰 규제체계에 포섭될 가능성이 높음(발표문 73면)
- 중앙은행 CBDC의 경우에는 특칙을 두어서 각종 규제 면제
- 지급수단 기능만을 하고 발행자가 대출업무 취급을 통해 신용을 창출하지 않는다면 엄격한 은행 규제를 실시할 필요가 없음 (발표문 71면)
- 대형플랫폼이 사업을 할 경우에 생각 이상의 파급력을 가지므로 가벼이 볼 문제는 아닌 듯

13 | Yonsei Law School

금전 형태의 변화와 사법(private law)

"19세기 통화체계의 입법적 기반에서는 금전채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민법의 규율이 불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안법령, 금전사법의 범위에 관한 소고 - 권리대상으로서 금전의 발유체제에 관해서 -, 1998.12.

"금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 민법은 다수의 규정에서 '금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규정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교환 및 지급수단의 등장은 금전의 법적 지위 및 이에 터잡은 민법규정의 정비를 요구한다."

*장진영, 암호화폐의 민사법적 문제, 2022.03.

CBDC, 예금토큰, 전자화폐토큰 등 새로운 화폐의 등장 → 민법을 포함한 사법적 규율 체계의 수정 필요성 제기

발표문 56면

지급결제법

디지털화폐 시대를 맞이하는 법학계의 과제

CBDC, 예금토큰,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디지털 형태의 화폐의 부상에 따라 기술발전이 따른 금전 형태의 변화와 법제 사이의 간극을 좁혀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는 상황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화폐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Bad Money를 Good Money로 전환하기 위한 규제 체계를 설계하는 일이며, 지급서비스 이용자가 지급수단 이면의 작동 구조와 위험성에 대한 걱정 없이 지급수단을 신뢰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작업이다."

디지털화폐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디지털화폐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제 개선 및 법리 발전을 위한 법학계의 관심과 연구가 절실

발표문 106면

14 | Yonsei Law School



【제1주제】



민사분쟁의 해결에서의
가상자산의 법적 평가 문제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가상자산 관련 분쟁과 가상자산의 평가

2023. 10. 13.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환

목차

1. 들어가며
2. 가상자산의 개관
3. 가상자산 겨울
4. 가상자산 평가의 문제
5. 가상자산 평가 문제에 대한 대안
6. 나가며

들어가며

2022년 초반의 가상자산 겨울(Crypto Winter)

암호화폐 시세가 급락하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가상화폐의 대표격인 비트코인 시세가 2만2000달러 밑으로 내려간 가운데,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번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2만달러 아래로도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략)

미국 연준 이외에도 유럽중앙은행(ECB)과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암흑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오피니언뉴스(<http://www.opinionnews.co.kr>)

암호화폐 시장의 겨울이 끝났나?

비트코인이 올들어 72% 상승했다.

규제 단속, 은행 파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암호화폐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비트코인, 이더 및 다른 시장 토큰은 올해 초부터 급등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72% 상승해 최근 3만 달러 문턱을 넘었다.

출처 : 포춘코리아(FORTUNE KOREA)(<https://www.fortunekorea.co.kr>)

들어가며

가상자산 겨울의 효과

- 투자자의 현저한 손실
-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분쟁 증가
- 분쟁의 수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측

가상자산 관련 분쟁의 증가

- 가상자산의 평가(valuation) 문제 대두
- 가상자산 분야의 짧은 역사와 복잡한 특성
- 가상자산 시장의 극심한 불안정성
- 규제의 모호함
- 투자자들의 손실

가상자산의 개관

가상자산의 정의

- 분산원장 또는 유사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전송 및 저장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화된 표상 (EU)
- 교환의 수단 또는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 가치로서 디지털 단위의 형태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 중앙은행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지 않았거나 보증하지 않으며 통화 또는 금전의 법률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연인 또는 법인이 합의 또는 사실상의 관행에 근거하여 교환 또는 지급수단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투자목적에 기여하며, 전자적 방식으로 이전되고 보관되며 매각될 수 있는 자산의 디지털 표현 (§ 1 Abs. 11 KWG)
-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적 권리를 포함)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

가상자산의 종류

- 가상화폐(cryptocurrency)
-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 NFT)
-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 유틸리티토큰(utility token)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가상자산의 개관

가상자산 관련 산업

- 가상화폐거래소(Binance, Coinbase, FTX)
- 가상화폐 대부 플랫폼(Celsius Network)
- 가상화폐 채굴(Riot Blockchain)
- 가상화폐 투자펀드(Three Arrows Capital)
- 가상자산지갑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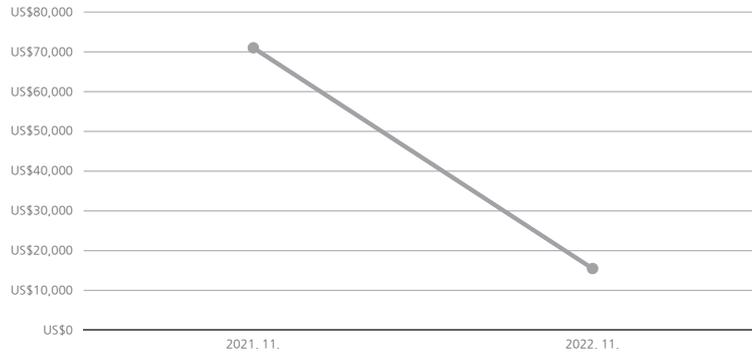
가상자산 관련 규제

- 혼란스럽고, 일관성 없으며, 땀질식의 규제
-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자산과 관련산업은 분명한 규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적 무인지대에 위치
- 가상자산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기업 거버넌스 기준과 적절한 내부통제 혹은 세이프가드의 도입을 통한 투자자 보호
- 가상자산의 겨울 → 국가로부터의 보다 적극적인 가상자산 관련 분야의 규제 + 명시적인 규제와 적극적 규제조치의 증가

가상자산 겨울

2021년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가치증가 → 2022년 가상자산의 수직적 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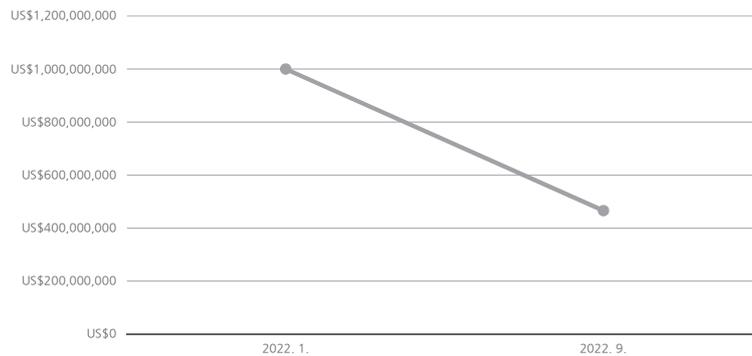
- 비트코인의 가치변화



Source: Billy Bambrough, *JPMorgan Reveals Shock 'Cascade' Bitcoin Price Prediction after Stunning FTX Meltdown*, Forbes (2022. 11. 13.), <https://www.reuters.com/business/finance/crypto-assets-shed-800-bin-market-value-month-2022-05-10/> (last visited: 2023. 10. 1.)

가상자산 겨울

- NFT 거래량의 97% 감소
- NFT의 가치변화



Source: Sidhartha Shukla, *NFT Trading Volumes Collapse 97% from January Peak*, Bloomberg (2022. 9. 28),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9-28/nft-volumes-tumble-97-from-2022-highs-as-frenzy-fades-chart?leadSource=verify%20wall> (last visited: 2023. 1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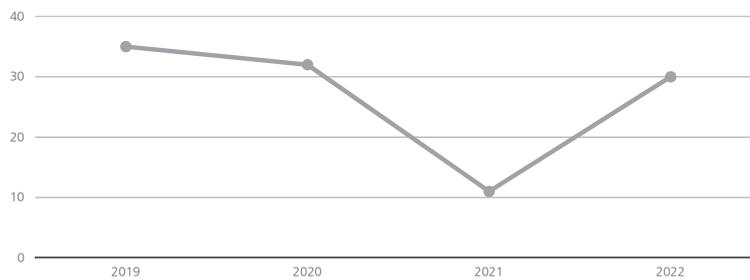
가상자산 겨울

가상자산 관련 산업 붕괴

- 루나/테라 사태
- Three Arrows Capital의 파산
- CoinFLEX의 구조조정 신청
- Celsius Network의 파산보호절차(Chapter 11)
- FTX의 파산보호절차(Chapter 11)

가상자산 겨울

가상자산 관련 분쟁 증가(소송)



Source: Farshad Ghodoosi, *Crypto Litigation: An Empirical Review*, 40 Yale J. on Reg. 87, 94 (2022)

가상자산 관련 분쟁 유형(소송)

- 과실 또는 사기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소송
- 증권관련 규제 위반을 이유로 한 소송
-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소송

가상자산 겨울

가상자산 관련 분쟁 증가(중재)

- CoinFLEX가 bitcoin Jesus를 상대로 HKIAC에 제기한 84,000,000 USD의 청구
- Genesis의 자회사가 Three Arrows Capital을 상대로 2022. 7. ICDR에 제기한 2,400,000,000 USD의 청구
- Coinbase와 Gemini를 상대로 한, 집단적 중재청구(class action arbitration claim)

가상자산 관련 분쟁 증가 이유

- 가상자산의 가치하락
- 가상자산 사업체들 사이의 복잡한 재정적 관계
- 가상자산 관련 채무 증가
- 레버리지의 과도한 활용
- 핵심 가상자산 사업체의 파산

가상자산 겨울

가상자산 관련 분쟁의 유형

유형	설명 및 사례	비고
사기 및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g pull(가상자산 개발자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금을 모은 뒤 돌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 관련 분쟁 - 가상자산 겨울 기간 동안 해당 유형의 분쟁 증가 - 루나/테라 사태에서 투자자들의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과 안전성에 대한 부실표시(fraudulent misrepresentation) 주장 	
가상자산 사업체와의 투자, 기업간 거래, 조인트 벤처 등에 관한 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 거래에서 인수회망자가 인수목표로 한 가상자산 업체의 성과가 부실하여 인수합병을 마무리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 등 - 2022. 8. 디지털 자산 상업은행(digital asset merchant bank) Galaxy Digital이 가상화폐 지급 공급자인 BitGo와의 1,200,000,000 USD에 달하는 인수합병건을 특정감사재무제표가 인수합병 약정상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행하지 아니한 사례 	
가상자산 관련 규제와 연계된 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영역에서의 변화, 규제수단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분쟁으로 이어짐 - 가상자산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투자약정(investment treaty) 관련 청구 	
가상자산 플랫폼 해킹으로 인한 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nin Network으로부터 615,000,000 USD를 해킹으로 탈취한 사건 	
가상자산 업체의 도산과 관련한 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산법상 여러 규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 	

가상자산 평가의 문제

가상자산 관련 분쟁에서 평가의 중요성

- 소송 혹은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 어떤 종류의 구제수단을 구할 것인가? → specific performance와 명목화폐로 환산되는 손해배상 중 어떤 것을 고를 것인가?
- 가상자산 관련 분쟁에서 당사자의 전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

평가와 관련된 법적 문제(준거법의 문제)

- 가상자산의 탈중앙성으로 인한 준거법 문제 발생 (가상자산이 탈중앙화된 분산원장에 소재한다면 관할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준거법의 차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이 달라질 수 있음[화폐(currency)인지, 재산(property)인지, 상품(commodity)인지, 증권(security)인지의 차이점]
- 준거법이 가상자산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거나 금지하고 있을 경우의 문제
- 준거법이 가상자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가상자산 관련 분쟁과 관련한 판결 혹은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의 문제

가상자산 평가의 문제

준거법의 문제(사례1)

Diamond Fortress Technologies, Inc. v. EverID Inc., C. A. No. N21C-05-048 (Del. Super. Ct. 14 April 2022) 사건

- 계약위반으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가상화폐 12,500,000코인을 이전받지 못하자 그 손해배상을 구한 사례
- 12,500,000코인의 가치가 쟁점
- 법원은 12,500,000코인 X (계약위반 후 3개월의 기간 동안 가장 높았던 시장가치) = 25,125,000 USD로 손해배상액 산정
→ 가상화폐를 증권(security)로 보았음
- 법원이 가상화폐를 상품(commodity)으로 보았다면 12,500,000코인 X (판결이 내려진 날의 시장가치) = 2,000,000 USD로 손해배상액 산정
- 가상자산의 불안정성으로 평가가 행해지는 시점 혹은 가상자산이 이전되는 시점이 언제로 결정되는가는 분쟁의 당사자에게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

준거법의 문제(사례2)

- 상대방이 가상자산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절차에서 상대방이 청구에 대해 당해 계약이나 중재약정이 준거법상 불법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 가상자산 관련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해 준거법상 가상자산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 그리스 항소법원이 비트코인으로 산정된 중재판정의 집행을 공서양속에 반함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Edward Taylor, Jennifer Wu & Zach Li, *Crypto Arbitration: A Survival Guide*, Kluwer Arbitration Blog (2022. 9. 29.), <https://arbitrationblog.kluwerarbitration.com/2022/9/29/crypto-arbitration-a-survival-guide> (last visited: 2023. 10. 1.)]

가상자산 평가의 문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업체의 평가 문제

- 전통적인 평가방법이 가상자산에도 그대로 유효할 것인가?

전통적인 평가방법

- 시장접근법 (market approach)
- 수익접근법 (income approach)
- 비용접근법 (cost approach)

전통적인 평가방법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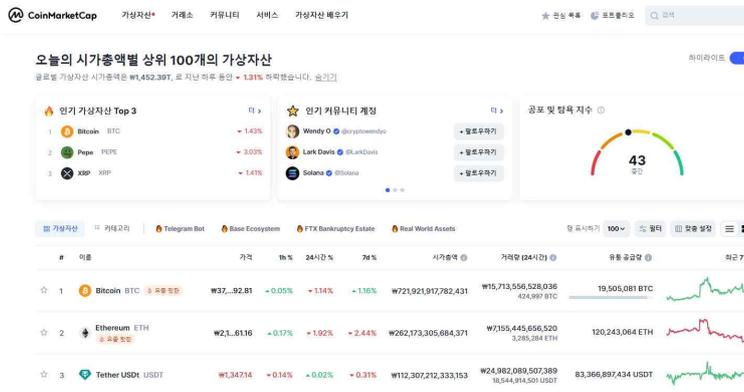
-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가상자산 관련 분쟁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전통적 평가방법이 활용됨
- 손해배상액을 변동성이 큰 자산과 관련하여 산정한 사례
[B2C2 Ltd v Quoine Pte Ltd [2019] SGHC(I) 03]

가상자산 평가의 문제

가상자산의 평가

시장접근법의 적합성

-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의 거래가격에 초점
-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의 상장가(quoted price)는 이미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
- CoinMarketCap 웹사이트 → 미국 법원에 의해 신뢰할 수 있고, 공개적인 가상화폐 평가 도구로 인정
(Diamond Fortress Technologies, Inc. v. EverID, Inc., C. A. No. N21C-05-048 (Del. Super. Ct. April 14, 2022))



가상자산 평가의 문제

가상자산의 평가
시장접근법의 문제

문제점	설명 및 사례
가상화폐의 지역마다 다른 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치 프리미엄(한국에서의 가상화폐가치가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음) - 지역마다의 다른 가상화폐가치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관련이 있을 것인가?
가상화폐의 거래규모에 따른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은 시가총액으로 소규모로 거래되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 - 시장조작으로 인한 인공적 시장가격 조작[선행매매(front running), 가장매매(wash trading), 스푸핑(spoofing) 등] - 조작된 시장(rigged market) 주장이 가능할 것인가?
가상화폐의 매수-매도호가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화폐의 매수가와 매도가 사이에서 나타나는 가격 차이(bid-ask spread)
가상화폐 이외의 다른 가상자산에 대한 적용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화폐 외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움 - NFT나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에 시장접근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가상자산 평가의 문제

가상자산의 평가
수익접근법의 활용

- 자산이 만들 수 있는 장래의 현금흐름(cash flow)에 기초하여, 장래에 기대되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변환
- 주로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analysis, DCF)을 사용
-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문제 존재
-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과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수익접근법은 가상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적용되기 어려움
- 수익접근법은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제한된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임

비용접근법의 활용

- 시장접근법과 수익접근법 모두 적용 불가능한 경우에 고려 가능
- 가상자산의 가치가 평가일에 극적으로 추락한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최초에 당해 가상자산에 투자되었던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것 고려해볼 수 있음

가상자산 평가의 문제

가상자산업체의 평가

시장접근법의 활용

- 비교 가능한 업체에 관한 재정적 정보를 얻는 것의 문제
-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변동성과 혁신의 속도 → 정보를 얻었다고 해도 적절한 비교자료로서 활용 가능한지의 문제

수익접근법의 활용

- 가상자산 업체에 신뢰할 만한 재정적 정보가 부족한 경우 / 전통적인 산업분야보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문제점	설명 및 사례
가상자산에 대한 공인된 회계기준의 부재 / 가상자산 업계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회계법인의 부족	-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의 공정가치(fair value)를 어떻게 적정하게 계산하는가?
가상자산 업체의 설립지 문제	- offshore jurisdiction(상대적으로 제한된 공시정보와 기업기록의 제공 가능)
장래수익 예측의 문제	- DCF 모델에서 핵심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장래수익 예측의 문제 - 가상자산 업체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 과거 성공의 기록이 없고, 가상자산 업계 외에서는 운용하지 아니하는 모델 - 가상자산 업계의 상대적으로 짧은 업력과 변화의 속도, 시장의 매우 큰 변동성 (Coinbase의 경우 2019년 30,400,000 USD의 손실 후 2020년 322,300,000 USD의 순수익) - 불분명한 규제체계 → 새로운 규제 도입에 따른 리스크, 업체의 성공가능성, 평가
가상자산 업체가 활용하는 새로운 기업구조	- 수익접근법 활용에 있어 과정의 복잡성과 결과의 불명확성 초래

가상자산 평가 문제에 대한 대안

분쟁 발생 이전 단계

- 가상자산 관련 분쟁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을 단순화하기 위해 계약의 작성 단계에서부터 고려
- 계약위반의 결과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혀두는 것
(계약위반의 경우 특정 장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 / 지정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약정 / 가상자산이 평가기준일, 평가시에 활용될 시세, 평가방법 등의 명시)
- 준거법에 대한 명시적 합의
- 분쟁해결 방식에 대한 합의
(가상자산의 탈중앙화 속성은 어느 국가의 법원이 관할을 행사하는지에 관한 복잡한 문제 발생 가능)
- 당사자가 분쟁해결 방식으로 중재를 선택한 경우 당해 중재지의 법이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있어 친화적인지를 사전에 고려
- 중재기관의 선택
(UK Digital Dispute Resolution Rules → 디지털 자산 관련 분쟁에 특화된 규칙 / 당사자의 익명(anonymous) 허가 등)
- 다수의 당사자와 거래가 관여하는 경우 다수당사자(joinder)와 병합(consolidation)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중재약정

가상자산 평가 문제에 대한 대안

분쟁 발생 단계

적절한 상대방(피고)의 식별

- 충분한 자력을 가진, 적절한 피고의 식별
-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가상자산의 탈중앙화되고 익명화된 특성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 → NFT나 온라인 가상자산 지갑으로 법적 절차에 관한 송달
- 상대방의 신원이 불명이거나 정확하게 판명될 수 없을 때 → 잠정적 구제명령(interim orders) 신청
- *Janesh s/o Rajkumar v Unknown Person* [2022] SGHC 264 사건
(NFT 분쟁에서는 피고를 정확한 방식으로 그 이름을 밝혀서 해야 한다는 싱가포르법상 형식성 요구를 엄격하게 따르는 것은 사법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사례 / 트위터와 디스코드 계정, 가상화폐 지갑에서의 메시지 기능을 사용하여 피고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NFT를 수령한 불명의 피고에 대한 잠정적 구제명령 인정)

가상자산 평가 문제에 대한 대안

분쟁 발생 단계

적절한 분쟁해결지의 식별

- 계약에서 분쟁해결지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당해 분쟁은 그 법정지에서 다루어짐
- 가상자산 업체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경우에는 분쟁해결조항의 회피 가능성 존재 →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사용자가 약관조항에 의해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의 중재조항에 강제로 따라야 할 것인지의 문제
- *Chechetkin v Payward Ltd and others* [2022] EWHC 3057 (Ch.) 사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샌프란시스코의 JAMS 중재원에서 당해 분쟁을 다루기로 한 가상화폐거래소의 약관에서 중재관련 조항의 존재로 인해 영국 법원의 관할이 배제되지는 아니한다고 본 사례 /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손실에 관한 당해 분쟁이 영국에 거주지를 둔 소비자와의 소비자계약(consumer contract)이고, 그러므로 소비자계약에 관한 청구의 경우 그 소를 영국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Civil Jurisdiction and Judgments Act 1982 제15B조에 해당한다고 봄)
- 적절한 분쟁해결지의 선택과 비용문제
- (잠재적) 원고가 여러 명일 경우 집단적 구제(collective redress)의 고려 (비용 절감의 측면)
→ 소송·중재 모두에 선택가능한 옵션

가상자산 평가 문제에 대한 대안

분쟁 발생 단계

적절한 소송물(cause of action)과 구제수단(remedy)의 파악

-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과 손해배상 사이의 선택
 -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평가일의 고려
 - 예) 비트코인의 가격이 가장 높을 때 비트코인을 이전하기로 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현재는 시세가 폭락한 경우
 - 원고에게는 계약위반이 발생한 날의 시세로 평가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
- 분쟁 발생 초기에 가상자산 업계에 전문성을 갖춘, 평가전문가를 관여시키는 것의 고려

가상자산 평가 문제에 대한 대안

분쟁 발생 단계

강제집행을 위한 가상자산의 소재파악과 보존

- 유리한 판결이나 중재판정을 얻더라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자산이 존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음
- 가상화폐 포렌식 전문가 선임 → 가상자산의 추적 및 최종적인 행선지 파악



- 가상자산이 은행계좌로 이체된 것의 교환물 혹은 수익물(proceeds)로 존재하는 경우
- 자금추적에 관하여 가상화폐거래소의 원조를 얻는 방법

가상자산 평가 문제에 대한 대안

분쟁 발생 단계

강제집행을 위한 가상자산의 소재파악과 보전

- 가상화폐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전문기업과 프로그램 활용(Crystal Block Explorer, GreyList Trace 등)



We have recently launched **GreyList Crypto**.

Cryptocurrencies are increasingly used by individuals seeking to hide their wealth.

Bitcoin alone has 106m owners, 53m traders and over 200m cryptowallets.

- 가상자산의 소재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법원의 구제(interim relief), 증거개시절차(discovery)의 활용
- 자산동결명령의 활용 가능성
(*Constanțin Antonius Samara v Stive Jean Paul Dan* [2022] HKCFI 1254 사건 → 피고의 자산을 동결하고 그의 비트코인 및 그 판매수익을 동결하기 위해 *Mareva injunctio*과 *proprietary injunction* 모두를 인정한 사례)

가상자산 평가 문제에 대한 대안

분쟁 발생 단계

적절한 절차와 사건관리기법의 선택

- 어떠한 절차단계를 거치고, 어떠한 사건관리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 혹은 중재판정을 얻을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을지 고려
- 중재절차에서 적절한 중재인의 선택
→ 중재인의 기술적 전문성이 가상자산 관련 분쟁에서 필수적일 수 있으며, 중재기관 중 기술전문가인 중재인 목록을 제공하는 곳이 늘어남



Technology Dispute Capabilities

The AAA-ICDR is uniquely positioned to handle disputes in the technology space. Both the executives and case-administration staff possess a combination of technological sophistication and perception to provide guidance in arbitrator selection and process that could lead to settlement and/or a procedure less disruptive to business. The diverse panel has a range of expertise in the tech area. The AAA-ICDR designed proprietary software and online tools from creating a tailored clause for a contract to filing and managing a case online.

Technology Arbitration Cases

In 2018, the AAA-ICDR arbitrated 380 technology cases. The largest subtypes of cases included software/systems development, partnership/joint venture, subcontracting/independent contractor, and licensing. Over two-thirds of technology cases settle prior to an award hearing—and 39% prior to incurring any arbitrator compensation.

Technology Panel Expertise

Technology expertise matters. Knowledge in technology disputes is crucial because of what is at stake. AAA panels are composed of 426 accomplished arbitrators and mediators—attorneys with exceptional subject-matter expertise, former federal and state judges, and business owners who understand the essence of the dispute.



News > VIAC getting tech savvy - VIAC launches Legal Tech Think Tank

VIAC getting tech savvy - VIAC launches Legal Tech Think Tank

Given how rapidly the tech sector is growing, accelerated digital transformation and innovation will continue to impact the ADR landscape in years to come. New product areas, like cryptocurrency, blockchain and AI will result in new types of commercial disputes. Not to mention increased government action to regulate big tech companies, which will likely result in an increasing number of tech-related investor-State disputes. VIAC wants to be fit for the future. It is vital for our growth to gather the expertise and knowledge of thought leaders in the sector to steer the institution in the right direction in order to understand how we can provide the best, cutting edge service.

In order to do this, VIAC officially kicked off its Legal Tech Think Tank (LTTT) on 25 October 2022 bringing together arbitration practitioners from a myriad of jurisdictions, skilled in multiple fields of technology disputes to consider how arbitration can get closer to the tech industry and make its offering more tech-fit. Our members include Michel Leclerc, Ajja Lejniece, Matthias Lehmann, Eliane Fischer, Duarte Henriques, Ema Vidak Friedman, Sean McCarthy, Sophie Nappert, David Tebel, Maud Piers and Dominik Loidl, supported by VIAC's secretariat team: VIAC's Secretary General, Niamh Leinwath, Ema Potocnik, Jessica Pühr and Vladislava Donchyk, as well as by VIAC's President Nikolaus Pitkowicz.

가상자산 평가 문제에 대한 대안

분쟁 발생 단계

적절한 절차와 사건관리기법의 선택

- 복잡한 평가 관련 쟁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적절한 사건관리기법의 선택
→ 중재의 경우 hot tubbing의 활용 등

나가며

- 가상자산 거울로 인한 가상자산 관련 분쟁의 증가 → 평가 문제의 증가 예상
- 평가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는 분쟁 이전 단계부터 평가의 문제 고려
-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상이 된 가상자산 혹은 가상자산 관련 업체의 특징을 파악하고, 준거법을 파악하며, 최적의 분쟁해결장소를 정하고, 정보격차를 메꾸는 작업을 함과 동시에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와 가상자산 평가 전문가를 분쟁의 초기단계에 관여시키는 것이 최적의 분쟁해결전략

감사합니다

【제1주제】

● ● ●

토 론

김수정

명지대학교 교수

안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가상자산 관련 분쟁과 가상자산의 평가 토 론 문

김수정 (명지대학교 법학과)

우선 가상자산에 관하여 국내외에서 분쟁이 많아지고 다양한 입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가상자산에 관련된 분쟁에서 가상자산의 평가 문제라는 시의적절하고 흥미로운 발표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표자께서 지적하셨듯이, 가상자산은 “분산원장 또는 유사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전송 및 저장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화된 표상” 전반을 의미하지만, 가상자산에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또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분쟁도 가상자산 사업체와의 투자, 기업간 거래·조인트 벤처 등에 관한 분쟁 가상자산 플랫폼 해킹으로 인한 분쟁 가상자산 업체의 도산과 관련한 분쟁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해당 발표에서 중점을 두어 다루신 가상자산 평가 문제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와 상황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로 시장접근법을 사용하더라도 보충적으로 수익접근법이나 비용접근법이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리라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상황마다 다양한 평가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시장의 안정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이 점점 더 중요한 재화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예측가능성 확보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비용접근법에 대해서 “가상자산의 가치가 평가일에 극적으로 추락한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최초로 당해 가상자산에 투자되었던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만일 이것이 허용된다면 가상자산 투자자가 투자의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가 평가일에 극적으로 추락한 경우”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에 대해 발표자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평가문제에 대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적절한 상대방(피고)의 식별과 적절한 소송물(cause of action)과 구제수단(remedy)의 파악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거래소 등 수탁자가 보유하고 그 수탁자를 통해 소유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통해 법원은 개입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이행이 어렵지 않을 것이지만, 가상자산 보유자가 수탁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누가 보유자인지 식별하더라도 특정이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상자산을 이전하지 않으면 특정이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분산원장에 기초한 가상자산은, 기존의 다른 재화나 자산들과 달리 국가나 공권력의 개입을 어렵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산 자체의 특정이행이 어려운 만큼 자산 가치의 평가가 그만큼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대해 발표자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토론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2023년 사법학자대회 (2023. 10. 13.)

「가상자산 관련 분쟁과 가상자산의 평가」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

한양대 법전원 안태준 교수

<1> [발표문 슬라이드 24~25면¹⁾ 등 관련]

- 가상자산의 경우 그 가치의 변동성이 매우 크고 익명성과 탈중앙화의 특징으로 말미암은 은닉·산일(散逸)·사기적 양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지급 또는 반환 등을 구하는 가상자산 관련 (소송 또는 국제중재의) 본안 절차와 별도로 분쟁의 대상 내지 목적이 되거나 피고 (피신청인)의 책임재산이 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임시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을 유체동산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채권으로 볼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국내 법원 절차를 통해 보전처분을 하는 것에도 실무상 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²⁾ 중재판정부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임시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도 비슷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가상자산 관련 분쟁에서의 법원의 보전처분 내지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조치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의 제도상 미비점이 있다면 민사집행법이나 중재법상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할지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발표문 슬라이드 13~14, 20~23면 등 관련]

- 가상자산의 경우 탈중앙화, 국제적 거래 등의 특징으로 인해 관련 분쟁을 특정 국가의 재판절차를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국제)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합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관련 분쟁을 국제중재로 해결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 우선, 유효한 중재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특정 당사자들 사이의

1) 발표문 PDF 파일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함.

2) 대전지방법원 2018. 10. 29.자 2018카단53308 결정을 보면,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사례도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5.자 2021카단815391 결정을 보면, 비트코인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기재한 채권 가압류 신청도 각하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효한 중재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경우 분쟁당사자들 사이에 중재합의를 미리 체결하는 것은 물론 분쟁의 상대방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 자체부터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가상자산보유자와 가상자산거래소 내지 가상자산플랫폼 사이의 분쟁도 적지 않을 텐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부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그 법인격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그러한 가상자산거래소와의 분쟁에서 중재합의를 누구와 어떻게 체결해야 할지도 의문입니다. 한편 특정 가상자산거래소 차원에서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용약관 등에 포괄적인 중재합의조항을 미리 포함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그 경우 약관 형태의 중재합의가 유효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둘째, 국제중재절차가 유효하고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는 중재가능성(arbitrability)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뉴욕협약에 따르면 분쟁의 대상이 집행국의 법률상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모델중재법은 중재지의 법에 따라 중재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고 일부 국가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를 아예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상자산 관련 분쟁의 중재가능성이 인정될지 여부는 중재지와 집행지를 어느 국가로 하는지에 따라 그 결론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셋째,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상에 전자적 기록 내지 정보의 행태로 존재하는 가상자산의 개념상·거래상 특징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의 지급 내지 반환 등을 구하기 위한 국제중재절차에서 신청인이 이겼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어느 국가에서 구할지를 결정하는 문제(즉, 집행지를 결정하는 문제)도 실무상 큰 난점이라 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뉴욕협약과 대부분의 개별 국가 중재법에 따르면, 어떤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해당 집행지의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할 경우 그 집행지의 법원은 그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또는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국가마다 다르고 일부 국가는 가상자산의 거래를 아예 금지하는 경우도 있어서 가

상자산 관련 국제중재절차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선택한 집행지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여부와 정도에 따라 그 중재판정문의 승인 또는 집행은 거부될 수 있는데, 실제 영국, 중국, 그리스 등에서 가상자산 관련 국제중재판정의 집행이 해당 국가의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부된 사례도 있습니다.³⁾

- 이와 같은 상황에서, ① 국내 법원에서는 아직 가상자산 관련 분쟁의 중재가능성이 문제된 사례 또는 가상자산 관련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또는 집행 신청 사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② 만약 (그러한 사례가 아직 없다면) 국내 법체계상의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내지 가상자산에 규제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법원은 가상자산 관련 국제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또는 집행결정 절차에서 국내의 공서양속과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③ 또한 가상자산 관련 분쟁을 국제중재절차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유효한 중재합의를 누구와 어떻게 체결해야 하는지, 집행지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중재이론이나 중재법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실무상 난점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가상자산 관련 분쟁의 해결에 적합한 새로운 ADR 제도나 법체계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Payward Ltd and others v Chechetkin [2023] EWHC 1780 (Comm); Gao Zheyu v Shenzhen Yunsilu Innovation Development Fund Enterprise (LP) and Li Bin (2018) Yue 03 Min Te No. 719; Court of Appeal of Western Central Greece, Decision No. 88/2021.

【제2주제】



착오송금인의 보호방안

이상용

건국대 교수

착오 송금인의 보호 방안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용

1. 들어가며

오늘날 가장 중요한 지급결제 수단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 상의 이체에 의하여 지급결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자금이체, 특히 수취인이 아닌 지급인에 의하여 개시되는 지급이체라고 할 수 있다.¹⁾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지급이체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인이 의도하지 않은 입금기장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착오 송금, 중복 또는 과다 입금, 위조된 지급지시나 권한 없는 자의 지급지시에 의한 입금 등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 중에서도 착오 송금으로 인한 피해는 자연 이체 서비스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²⁾ 지급이체 이용 확대의 계기가 되었던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은 전자기기 이용의 특성상 착오 송금 피해 증가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³⁾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송금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으로 상계하거나(예컨대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수취인의 채권자가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예컨대 수취인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으로는 착오 송금인의 보호에 불충분하다. 2021년 개정 예금자보호법은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지만⁴⁾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⁵⁾ 무엇보다 착오 송금에 관한 종래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취은행에 의한 상계나 수취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부당함은 여전하다.⁶⁾

본고는 착오 송금인의 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상 어떠한 대안이 존재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지급이체의 법률적 구조와 지급지시나 원인관계의 흠결이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위 대안들의 논리적, 구체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1) 수취인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은 '추심이체'라고 불린다.

2) 지난 2020년 국내에서 발생한 착오송금 건수는 20만건으로, 이 중 절반(10만 1000여 건)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배근미, "[착오송금 반환지원 1년] "잘못 보낸 돈 돌려드려요"...제도 안착 속 지원 확대 과제," 아주경제 2022. 7. 7.자. <https://www.ajunews.com/view/20220706151609125>)

3)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기간 중 발생한 착오 송금 사례 중 74%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에서 발생하였다(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의 소리 2015-01호, 11면)

4)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4, 제39조의2 참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절차>

2. 지급이체의 법률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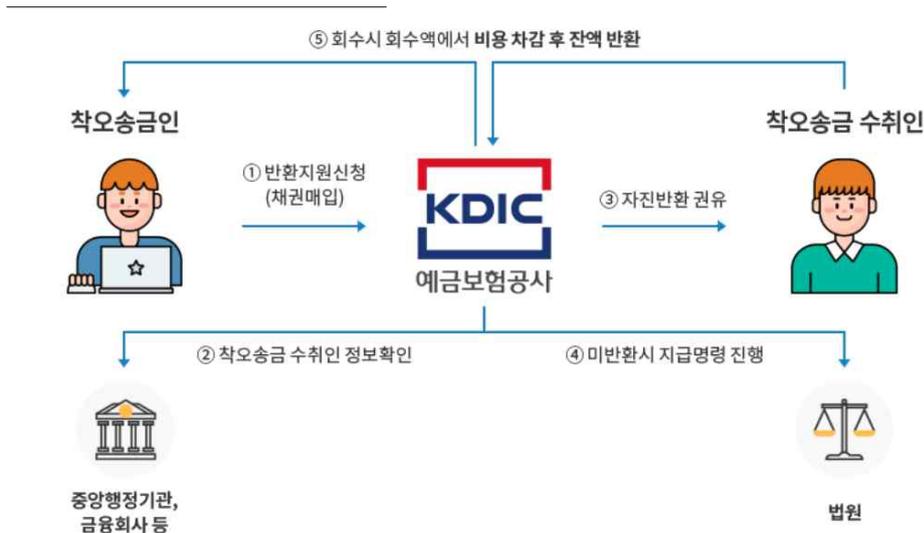
가. 지급이체의 법률관계

1) 지시적 구성

통상적으로 지급이체 과정에는 지급인, 지급은행, 수취은행, 수취인이 순차적으로 개입한다. 지급이체의 법률적 구성 방법은 크게 계약적 구성과 지시적 구성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시적 구성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⁷⁾ 즉, 지급인이 지급은행에게 지급지시를 하면, 지급은행은 이를 수취은행에 전달하고, 수취은행이 지급지시를 실행하여 수취인 계좌에 입금기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2) 당사자 간의 관계

지시적 구성에 의할 경우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먼저 지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는 지급이체계약⁸⁾과 지급인의 지급지시에 의하여 권리·의무



- 5) 2021. 7. 6.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및 2023.1.1 이후 발생한 5만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사례만이 지원 대상이 된다(<https://kmrs.kdic.or.kr/ko/index.do>).
- 6) 마이너스 통장의 자동변제 약정에 의한 상계의 경우 송금인은 수취은행이 아닌 수취인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등 참조.
- 7)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4A편은 계약적 구성을 취하는 반면 1999년 개정 전 독일 민법은 지시적 구성을 취하였다. 개정 후의 독일 민법은 계약적 구성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상용, “지급이체의 법률관계”, 충남대 법학연구 제 28권 제2호(2017), 164면 참조.
- 8) 지급이체계약은 계좌개설계약과 함께 체결되지만 그것과는 개념상 구별되는 것이다.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지급이체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어졌다.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경우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이체자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인과 사이의 보상관계에 기한 사유로 항변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지급결제제도로서의 기능을 훼손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부정

가 발생한다. 지급은행은 행내이체의 경우 수취인 계좌에 입금기장할 의무가, 타行间 이체의 경우 지급지시를 중개은행이나 수취은행에 전달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응하여 지급인은 지급은행에게 지급지시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보상관계, Deckungsverhältnis), 법률적으로 이는 위임계약상의 비용선급청구권 또는 비용상환청구권에 해당한다.⁹⁾

지급은행과 수취은행 사이의 법률관계는 환거래계약¹⁰⁾과 지급은행의 지급지시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수취은행은 지급지시의 내용에 따라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이체 자금을 입금기장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지급은행은 그 보상으로서 수취은행에게 이체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수취은행과 수취인의 관계는 계좌개설계약, 특히 그에 포함된 입금승낙계약에 기한 수취인의 권리가 수취은행의 지급지시 수령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것으로 설명된다.¹¹⁾ 수취인은 입금기장 전에는 수취은행에 대하여 입금기장을 청구할 권리를 가질 뿐이지만(입금기장청구권, Anspruch auf Gutschrift), 일단 입금기장이 이루어진 뒤에는 그 금액만큼의 금전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입금기장에 기한 권리, Anspruch aus Gutschrift). 입금기장청구권은 위임계약상 수임인의 취득물 등 인도·이전의무의 성격을 가지므로 보상의 취득과 유인적 관계에 있고, 따라서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¹²⁾ 지급이체가 지급결제제도로서 기능하려면 보상관계상의 항변이 절단된 무인적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입금기장의 권리이다(입금기장의 추상성). 입금기장의 추상성의 법적 근거에 관하여 독일의 다수설¹³⁾과 판례¹⁴⁾는 독일 민법 제780조의 추상적 채무약속(Schuldversprechen)을 든다. 우리 민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지만, 수취인이나 수취은행은 계좌개설계약 당시 묵시적으로 무인적인 채무약속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입금기장의 추상성의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¹⁵⁾

마지막으로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는 대물변제계약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¹⁶⁾

함은 타당하다(이상용, 앞의 논문(2017), 168면).

9) 정경영, 전자금융거래와 법, 박영사(2007), 293면.

10)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과의 관계를 포함한 환거래계약의 실제 모습에 관하여는 이상용, 앞의 논문(2017), 171-172면.

1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취은행의 일방적인 입금처리에 의하여 예금채권이 성립하는 것은 수취은행과 수취인 사이의 예금거래약정에 기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13. 선고 2006가단295047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의 제1심 판결임). 한편 독일 민법 §676g는 수취인의 입금기장청구권의 근거가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지로계약임을 명시하고 있다.

12) 정대익, “타인의 계좌 또는 지정하지 않는 수취인 계좌로 이루어진 지급이체의 법률문제 - 대구지법 판결(2004. 1. 28. 선고 2003나10191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비교사법 제11권 4호(2004A), 275면; Canaris, Bankvertragsrecht(3. Aufl.), 1988, Rn. 399-400.

13) Canaris, *op. cit.*, Rn. 415ff; Schlegelberger, Handelsgesetzbuch(5. Aufl), Band 4, 1976, §365 Rn. 58ff.

14) RGZ 54, 332; BGH NJW 51, 437

15) 정대익, 앞의 논문(2004A), 275면; 이상용, 앞의 논문(2017), 174면; 판례도 지급이체 제도의 기능과 예금거래약관의 내용 등을 근거로 입금기장의 추상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16)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의 원인관계에 있어서 지급은행은 지급인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김형석,

입금기장에 의하여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무인적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의 원인관계상의 채무는 입금기장 시점에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물변제계약으로 보는 이상 수취인의 승낙이 요구되는데, 그것이 결여된 경우에는 소위 강요된 부당이득(aufgedrangte Bereicherung)의 문제가 생긴다.¹⁷⁾ 수취인은 지급인에 대한 원인관계상의 채권 외에 수취은행에 대한 무인적 예금채권을 추가로 취득하는 이익을 얻는 반면, 지급인은 지급이체에 따른 출금기장으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되므로, 수취인은 지급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 결과 수취인이 지급인에게 원인관계상 채무의 이행을 구하더라도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의한 상계의 대항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에서는 수취인에게 입금기장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입금기장거절권(Zurückweisungsrecht)이 인정되고 있다.¹⁸⁾

나. 지급이체 과정에서의 하자과 부당이득

1) 지시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지급이체 과정에서의 하자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흔히 지시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법리가 원용된다. 지시삼각관계란 수령자가 지시자에 대하여 어떤 급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대가관계), 지시자는 피지시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급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보상관계), 3자 사이의 간편한 결제를 위하여 지시자가 피지시자에 대하여 수령자에게 일정한 출연을 할 것을 지시(Anweisung)하고, 그에 따라 피지시자가 수령자에게 출연함으로써(출연관계), 피지시자는 지시자에게, 그리고 지시자는 수령자에게 급부한 것으로 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¹⁹⁾ 이러한 지시삼각관계에서 지시의 흠결이 있거나 대가관계나 보상관계 등 원인관계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부당이득의 반환이 원인관계를 따라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출연관계를 따라 이루어질 것인지 문제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시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문제이다.

아래에서는 국내 논의에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의 법상황을 간략히 소개한 뒤 우리나라의 논의를 설명하고, 지급이체 사안의 특수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2) 독일의 논의

“지급지시·급부관계·부당이득”,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3호(2006), 292면; 오흥록, “지급인의 수취인 착오에 의한 지급이체시의 제반 법률문제의 해결 - 특히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2009), 40면; 정대익, “지급이체의 법률관계 -원인관계를 중심으로 한 독일법의 비교법적 분석”, 상사판례연구 제17집, 한국상사판례학회(2004B), 339면. 수취은행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수취인의 수령보조자로 보는 견해(정대익, 앞의 논문(2004B), 339면), 이에 반대하는 견해(오흥록, 앞의 논문, 40-41면, 오히려 지급인의 이행보조자로 보는 견해(윤진수, “2007년도 주요 민법 판례 회고”,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1호(2008), 379면) 등이 대립한다.

17) 정경영, 앞의 책, 286-287.

18) Canaris, *op. cit.*, Rn. 473; BGH NJW 1990, 323 = WM 1989, 1560 = ZIP 1989, 1317.

19) 김형배, 사무관리·부당이득, 박영사(2003), 290-291면.

대가관계나 보상관계와 같은 원인관계에 흠결이 있는 경우 독일의 학설은 급부관계설, 재산이동설, 실질적 평가기준설 등으로 나누어 있다.²⁰⁾ 통설적 견해인 급부관계설은 급부관계를 따라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당사자를 결정한다.²¹⁾ 이에 따르면 대가관계 및 보상관계는 급부관계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반환관계가 성립하지만, 피지시자의 수령자에 대한 직접청구는 급부관계의 부존재로 인하여 부정된다.²²⁾ 재산이동설은 급부 개념보다는 지시와 그에 따른 재산이동이라는 사실 자체를 중시하는 견해이다.²³⁾ 즉 지시 자체의 효력에 따라 지시자를 경유하는 재산이동이 이루어진다고 봄으로써 보상관계나 대가관계가 흠결된 경우 해당 원인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 부당이득 반환이 이루어진다고 본다.²⁴⁾ 실질적 평가기준설은 실질적인 기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²⁵⁾ 즉 상대방에 대한 항변은 유지하되 제3자와의 계약에 기한 항변이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무자력 위험은 적절히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⁶⁾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보상관계나 대가관계가 흠결된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은 해당 원인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독일의 판례는 급부관계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당사자가 결정된다고 함으로써 급부관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²⁷⁾

원인관계의 흠결이 있는 경우와 달리 지시의 흠결이 있는 경우는 피지시자가 수령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²⁸⁾ 이 경우 수령자는 지시자와 사이의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²⁹⁾ 독일의 판례도 유효한 지시의 흠결이 있는 경우 피지시자인 은행의 수령자에 대한 직접청구를 긍정한다.³⁰⁾

20)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상용, 앞의 논문(2017), 178-186면.

21) Staudinger-Lorenz, *Kommentar zum BGB 2. Buch, Recht der Schuldverhältnis*, §§812-822, 1999, §812 Rn. 4-8.

22) 김형배, 앞의 책, 292, 306-307면; 박세민, “부당이득법상의 인과관계와 법률상 원인 -「편취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예시로 -”, 민사법학 제41호, 한국민사법학회(2008), 108면; 급부관계설은 이른바 ‘이중하자(Doppelmängel)의 사례에서 맹점을 보인다. 즉 보상관계와 대가관계가 모두 무효인 경우 피지시자는 지시자를 상대로 하여 지시자의 수령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자체를 부당이득으로서 양도하여 달라고 할 수밖에 없고(부당이득의 부당이득, Kondiktion der Kondiktion), 이 경우 피지시자는 보상관계상의 항변은 물론 대가관계상의 항변에도 대항을 받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재산이동설과 실질적 평가기준설은 급부관계설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다.

23) Lieb in :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5. *Schuldrecht, Besonderer Teil III : §§ 705-853(4. Aufl.)*, 2004, Rn. 36; Flume, *Zum Bereicherungsausgleich bei Zahlungen in Drei-Positionen-Verhältnissen,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1991, 2521ff.

24) 박세민, 앞의 논문(2008), 107면 참조.

25) Larenz/Canaris, *Lehrbuch des Schuldrechts, Band 2, Besonderer Teil(13. Aufl.)*, 1994, S.222-223.

26) 김형배, 앞의 책, 314-315.

27) BGH 1972. 2. 24., BGHZ 58, 184; BGH, NJW 1993, 1914, 1915; 이중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보상관계 및 대가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피지시자가 수령자에게 직접청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BGHZ 48, 70, 72.)

28) MünchKomm BGB/Lieb, *op. cit.*, Rn. 45ff; Canaris, *op. cit.*, Rn. 432.

29) Medicus, *Bürgerliches Recht(18.Aufl.)*, 1999, Rn. 677.

30) BGHZ 66, 372(의도하지 않은 수취인에 대한 지급이체); BGHZ 87, 393(철회된 지급지시에 기한 지

3) 국내의 논의

우리나라의 학설 역시 급부관계를 중시하는 입장과 재산이동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있다.

급부관계를 중시하는 견해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은 급부관계를 따라 이루어져야 하되 실질적 평가기준에 따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본다.³¹⁾ 즉 보상관계나 대가관계가 흠결된 경우에는 각 급부관계에 따른 급부부당이득 관계가 성립하고, 유효한 지시가 흠결된 경우에는 피지시자의 수령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급부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된다고 한다.³²⁾ 이에 비하여 재산이동을 중시하는 견해는 급부 개념에만 의지하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재산이동의 측면을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따르면 대가관계가 흠결된 사안에서 지시자에 대한 재산의 귀속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되므로 피지시자의 수령자에 대한 직접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반면, 지시가 흠결된 사안에서는 피지시자의 수령자에 대한 직접청구가 인정된다.³³⁾

4) 지급이체와 지시삼각관계

위에서 본 것처럼 국내외의 학설이나 판례는 비록 세부적 논리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결론에 있어서는 유사한 태도를 취한다. 즉 지시삼각관계에 있어서 원인관계가 흠결된 경우에는 원인관계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부당이득 반환이 이루어지는 반면, 지시가 흠결된 경우에는 출연관계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부당이득 반환이 이루어진다.

통상 넓은 의미의 지시삼각관계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지급이체 관계에서도 지급인을 지시자, 은행을 피지시자, 수취인을 수령자로 치환하여 유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급이체의 법률관계에서는 은행이 수취인과의 계좌개설 계약에 따라 수취인에게 입금기장 의무(취득물 등 인도 의무)를 부담하고 그 이행으로서 입금기장하는 것이므로 수취인에 대한 은행의 급부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³⁴⁾ 그러나 지급이체의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하면 입금기장의 추상성에 기한 항변배제의 원칙은 법률행위의 영역을 넘어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따라서 은행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³⁵⁾ 타행간이체에서 은행이 지급은행과 수취은행으로 분리되어 있는

급이체); BGHZ 66, 362, 364f; BGHZ 67, 75, 78f; BGH NJW 1987, 185, 186f; 지시의 흠결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령자에 대하여도 직접청구를 허용한 것으로는 BGH 2001. 2. 20. 및 BGHZ 147, 145. 지시 철회의 경우에 철회 사실을 알지 못한 수령자에 대한 직접청구를 부정한 것으로는 BGHZ 61, 289, 292.

31) 박윤직 편집대표(양창수 집필부분), 민법주해[XVII], 박영사(2005), 205-228면; 김형배, 앞의 책, 315-317면.

32) 김형배, 앞의 책, 294-298면.

33) 박세민, 앞의 논문(2008), 112-116면.

34) Canaris, *op. cit.*, Rn. 428.

점도 분석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수취은행은 지급인의 지급지시의 흠결로부터 영향 받지 않고 지급인의 보상관계 및 대가관계와도 절연되어 단순히 통로로서 기능할 뿐이므로, 이 경우 지급은행을 피지시자로 보아 분석하면 족할 것이다.³⁶⁾

3. 착오 송금인 보호를 위한 두 가지 접근 방법

착오 송금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첫째는 송금인의 지급지시의 하자에 착안하여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것이고, 둘째는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의 원인관계 부존재에 착안하여 구제방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가. 지급지시의 취소와 철회

1) 지급지시의 취소

일부 학설은 대규모로 신속히 이루어지는 지급이체의 특성상 지급지시의 취소 자체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도 하지만,³⁷⁾ 국내의 대체적인 견해는 지급지시 역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9조의 취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지급인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어 취소권이 발생하지 않고,³⁸⁾ 발생한 다 해도 수취은행이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되는 결과³⁹⁾ 실제에 있어서는 취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또한 설령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인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인의 신뢰이익 배상의무로 인하여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⁴⁰⁾ 지급지시의 취소에 따라 지급은행이 지급인 계좌에 재입금기장할 금액과 지급인이 지급은행에 배상할 신뢰손해배상액은 일치하고 이들은 서로 상계가 가능하여 지급은행이 재입금기장의무를 면하기 때문이다.⁴¹⁾⁴²⁾

35) 이상용, 앞의 논문(2017), 184-185면.

36) 이상용, 앞의 논문(2017), 186면; Canaris, *op. cit.*, Rn. 429.

37) 정동윤, 어음·수표법, 법문사(2004), 584-585면; 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 홍문사(2006), 829면(수취인 계좌에 입금기장이 있기 전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수취인 상위나 중복이체 등의 경우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지급지시의 취소를 허용한다(UCC 4A-205). 즉, 지급인이 보안절차(security procedure)를 준수하였고, 지급지시를 수신한 은행(receiving bank)이 보안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지급지시의 하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만 지급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

38) 정경영, 앞의 책, 88면; 정대익, 앞의 논문(2004A), 271면; 김형석, 앞의 논문, 317면; 오흥록, 앞의 논문, 98면; 김남한, “전자자금거래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은행거래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1992), 97면; 김창모, “착오로 수취인을 잘못 지정하여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경우 예금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민사판례연구 제31권, 박영사(2009), 466면

39) 정경영, 앞의 책, 88-89면; 오흥록, 앞의 논문, 99면.

40) 정경영, 2007, 90면; 정대익, 앞의 논문(2004A), 271-272면; 지급지시가 취소된 경우 지급은행의 지급인에 대한 신뢰이익배상 청구가 인정된다는 독일의 학설로는 Canaris, *op. cit.*, Rn. 377 참조.

41) 정대익, 앞의 논문(2004A), 273면; 정경영, 앞의 책, 78-79면, 90면; 김상중, “송금인의 수취인 착오로 이루어진 계좌이체에 따른 반환관계”, 고려법학 제55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2009), 243-244면; UCC 4A편에 의하더라도 발신인은 일정한 내용을 입증하여 면책되는 경우(UCC 4A-205)를 제외하고는 자금이체가 완료되면 지시금액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며, 이 경우 발신인(지급인)은 착오에 의한 지급에 근거하여 지급을 수령한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을 뿐이다(The American Law Institute(ALI),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결국 착오 송금의 사안에서는 지급지시의 취소권 발생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취소권이 인정되더라도 지급인이 과실로 취소한 경우에는 실익이 없으므로, 지급지시의 취소는 지급인을 위한 실질적 보호수단이 되기 어렵다.

2) 지급지시의 철회

지급지시는 취소원인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 시점 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⁴³⁾ 철회 가능 시점은 입법례마다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이 수취인 계좌에 입금기장이 이루어져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점⁴⁴⁾에 비추어보면 원칙적으로 지급지시의 철회는 입금기장 이전에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⁴⁵⁾ 한편 은행거래의 실무상으로는 수취인 계좌에의 입금기장 이후에도 수취인의 동의를 전제로 지급인의 신청에 따라 역이체 또는 입금취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도 이와 유사한 ‘조환(組還)’의 상관행이 있는데, 수취인 계좌에의 입금기장 후 수취인이 반환을 승낙하는 경우에 수취은행이 지급인의 조환 요청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쟁이 있다.⁴⁶⁾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상관행이 법적 확신까지 획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⁴⁷⁾

전자적 방식의 실시간 자금이체의 비중이 커지는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입금기장 전에 지급지시를 철회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최근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연이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급인이 이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소용이 없다. 결국 지급지시의 철회를 통한 착오 송금인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나. 원인관계의 부존재

이처럼 지급지시의 하자에 초점을 맞춘 해결책들이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원인관계의 흠결, 특히 착오 송금의 사안과 관련이 있는 대가관계의 흠결에 착안하

Law, UCC Official Text(11th). West Publishing Co, 1989, p.535).

42) 지급지시가 취소 등으로 흠결되는 경우에는 원인관계 상의 급부관계에 효과귀속이 될 수 없으므로 (김형배, 앞의 책, 294-298면), 은행(타행간이체의 경우 지급은행)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취득하지만, 지급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이상용, “착오 송금의 법률관계와 착오 송금인의 구제 수단”,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2013), 94-95면; 異見 김상중, 앞의 논문, 243-244면). 다만 은행이 지급인에 대한 신뢰손해배상청구권과 재입금기장의무를 상계한 경우 지급인이 손해배상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한다(정대익, 앞의 논문(2004A), 272면).

43) 정경영, “자금이체제도의 법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1994), 141면; 다만 입금이체의 경우에는 지급지시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청약에 해당하므로 청약의 구속력에 의하여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이상용, 앞의 논문(2013), 96면).

44)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 제14조 제1항.

45) 정동윤, 앞의 책, 574면; 정찬형, 앞의 책, 829면; 정경영, 앞의 책, 231-232면.

46) 수취인이 착오 송금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를 긍정하는 견해로는 本多正樹, “誤振込と被任向銀行の相殺(下)”, 「金融法務事情」 1734號, 金融財政事情研究會(2005), 48-58면; 松本貞夫, “振込規定ひな型の逐條解説”, 「金融法務事情」 1410號, 金融財政事情研究會(1995), 26-27면; 계약상 또는 상관행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로는 岡本雅弘, “誤振込と被任向銀行による相殺(下)”, 「金融法務事情」 1752號, 金融財政事情研究會(2005), 42면.

47) 이상용, 앞의 논문(2013), 103-104면.

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우리의 학설과 판례는 원칙적으로 대가관계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한다고 보아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의하여 지급인을 보호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수취인이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지급인을 보호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나타났다.

우선, 대가관계가 흠결된 경우에는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계약 해석에 의하여 처음부터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급인을 보호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취한 것으로는 주로 일본에서 논의되어 온 원인관계필요설과 주로 독일에서 논의되어 온 입금기장거절권이 있다. 대가관계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전자는 곧바로 예금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는 반면 후자는 수취인의 입금기장거절권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소급적으로 예금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한편, 대가관계가 흠결된 경우에도 수취인의 예금채권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최종적인 담보로서 수취인이 취득한 예금채권의 존속을 확보하고, 나아가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지급인이 우선변제권을 갖도록 하려는 입장도 있다. 이는 특히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하거나, 수취인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려는 경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수취인의 예금채권

가. 수취인의 예금채권 취득 여부

1) 일본에서의 논의

대가관계가 흠결된 경우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한 국내의 논의는 일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므로 일본에서의 논의를 먼저 간략히 소개한다.

일본의 학설은 크게 원인관계필요설과 원인관계불요설로 나뉘어 있다. 원인관계필요설은 수취인이 수취은행과 계좌개설계약을 하면서 대가관계가 있는 지급인으로부터의 입금의 수용만을 위임하였다고 해석한다.⁴⁸⁾ 이에 비하여 원인관계불요설은 수취인과 수취은행이 계좌개설계약 당시 지급지시에 따른 입금기장이 이루어지면 대가관계의 존부와 무관하게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본다.⁴⁹⁾

48) 牧山市治, “振込の原因となる法律關係が存在しない場合における振込にかかる普通預金契約の成否”, 「金融法務事情」 1467號, 金融財政事情研究會(1996), 16面 ; 木南敦, “誤った振込と預金の成否”, 「金融法務事情」 1304號, 金融去來事情研究會(1991), 9面 ; 山田誠一, “誤った資金移動取引と不當利得(下)”, 「金融法務事情」 1325號, 金融財政事情研究會(1992), 25-26面.

49) 松岡久和, “受取人を誤記した誤振込による預金契約の成否”, 「ジュリスト」 1113號, 有斐閣(1997), 73-75面.

일본의 하급심 판례 중에는 원인관계필요설을 취한 것도 많았다.⁵⁰⁾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1996년의 판결을 통하여 원인관계불요설의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보통예금 규정에는 예금채권의 성립 여부를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의 대가관계에 의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안전하고 신속한 자금이동 수단으로서의 기능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⁵¹⁾ 그런데 그 뒤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위 최고재판소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칙적으로는 대가관계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한다고 하면서도, 수취인이 지급인의 반환 요청을 승낙한 경우에는 법적 처리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예금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구성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⁵²⁾ 그 근거로는 수취인의 입금거부 의사표시,⁵³⁾ 수취인이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사기죄를 구성하는 점,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동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 정의나 공평의 관념 등이 제시되었다. 학설은 대체로 나고야 고등법원의 결론에 찬성하고 있지만, 법적 구성의 타당성에 관하여는 많은 논쟁이 있다.⁵⁴⁾

2) 국내의 논의

우리나라의 통설⁵⁵⁾은 대가관계가 흠결된 경우에도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는 원인관계불요설을 취한다. 계좌개설계약에 포함된 추상적 채무약속계약은 대가관계 등 원인관계에서 나오는 항변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⁵⁶⁾ 비대면적인 지급이체에서 수취은행에게 예금채권의 유효성을 일일이 조사·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⁵⁷⁾ 예금거래기본약관상 지급인과 예금계약의 성부를 수취인 사

50) 名古屋高等裁判所 1976. 1. 28. 判決(判例タイムズ 337號 260面). 위 법원은 예금거래약관 상의 수취인의 입금 승낙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수취인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하였다; 유사한 취지의 판시로는 鹿兒島地方裁判所 1989. 11. 27. 判決(判例タイムズ 718號 124面).

51) 最高裁判所 1996. 4. 26. 判決(民集 50卷 5號 1267面).

52) 名古屋高等裁判所 2005. 3. 17. 判決(金融法務事情 1745號 34頁).

53) 이 부분 설치는 뒤에서 볼 독일의 입금기장거절권 법리를 상기시킨다.

54) 찬동하는 견해로는 藤田祥子, “誤振込された預金の被任向銀行による貸付債權との相殺”, 「法學研究」 79卷 10號, 慶應義塾大學(2006), 59-72面; 반대하는 견해로는 松岡久和, “銀行が受取人の銀行口座に誤振込された預金について受取人に對する貸付債權をもつて相殺することは正義·公平の觀念に照らして無効とされた事例”, 「金融法務事情」 1748號, 金融財政事情研究會(2005), 11-13面.

55) 정경영, 앞의 책, 262-263면; 김형석, 앞의 논문, 309면; 김창모, 앞의 논문, 469-470면; 윤진수, 앞의 논문, 378-379면; 정대익, 앞의 논문(2004A), 275면; 김상중, 앞의 논문, 237-238면; 김남한, 앞의 논문, 93면 이하; 오흥록, 앞의 논문, 112면; 정경영, “착오에 의한 자금이체거래와 지급인의 권리”, 성균관법학 제21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2009), 633면; 강위두,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40권 제1호(1999), 291면; 고영태, “원인관계 없이 이루어진 지급이체의 법률관계”, 판례연구 제21집, 부산판례연구회(2010), 231면; 김상호, “착오 송금시 수취은행의 상계권 제한”, 재판과 판례 제20집, 대구판례연구회(2011), 264-265면; 김지희, “착오송금과 상계”, 재판실무연구 2010-II, 서울남부지방법원(2010), 136면; 최재혁, “착오 자금이체(착오송금)와 수취은행의 상계권행사(대상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재판실무연구 제4권, 수원지방법원(2011), 78면.

56) 정경영, 앞의 논문(2009), 633면; 김형석, 앞의 논문, 309면 역시 유사한 입장이다.

57) 강위두, 앞의 논문, 291면; 김창모, 앞의 논문, 466-467면; 정경영, 앞의 책, 634-635면; 오흥록, 앞의 논문, 112면.

이의 대가관계의 존재에 의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⁵⁸⁾ 등이 근거로 제시된다.

판례 역시 원인관계불요설의 입장에 서 있다. 즉, 대법원은 2007년 원인관계필요설을 취한 하급심 판결⁵⁹⁾을 파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⁶⁰⁾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할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지급이체에 따른 입금기장으로 인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되는 법률적 근거는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계좌개설계약이다. 따라서 대가관계가 흠결된 경우에도 예금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계좌개설계약의 해석 문제이다. 그런데 계좌개설 계약은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충적 해석에 의할 수밖에 없다. 보충적 해석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의가 아니라 ‘가정적 의사’가 기준이 되며, 이는 일종의 의제로서 계약의 맥락 및 계약의 목적이라는 객관적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⁶¹⁾ 자금이체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금채권의 성립 여부가 대가관계의 존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의 대가관계 유무를 조사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수취은행의 입장에서는 수취인과의 계좌개설계약 당시 예금채권의 성립 여부를 대가관계의 존부에 의존하도록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통설 및 판례와 같이 대가관계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봄으로써 입금기장의 추상성을 확보하는 계약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58) 고영태, 앞의 논문, 231면.

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9. 선고 2007나1196 판결. 위 판결은 “사전의 포괄적인 (필자 주 : 입금기장) 승낙의 의사표시는 무제한적인 것이라 할 수 없고 수취인이 계좌이체에 의한 송금액의 정당한 수취인이 될 수 있는 법률적 원인이 있을 경우를 전제로 할 것이라 함이 예금계약의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시하였다.

60)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위 판결에서의 대법원이 설시한 판결 이유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1996년 판결(最高裁判所 1996. 4. 26. 判決, 民集 50卷 5號 1267)과 상당히 유사하다.

61) Larenz, *Allgemeiner Teil des Deutschen Bürgerlichen Rechts*(6. Aufl.), 1983, S.528ff.; Pils, *Richterliche Vertragsergänzung und Vertragsbänderung*, Diss. 1963, S.55f.

3) 지급이체 당사자들의 관계

앞서 보았듯이 지급이체의 법률관계는 넓은 의미의 지시삼각관계로서 원인관계의 흠결이 있는 경우 각각의 급부관계를 따라 급부부당이득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의 대가관계가 흠결된 경우 수취인은 위와 같이 취득한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지급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⁶²⁾ 수취인에 의한 상계나 수취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수취인은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여전히 그 이익을 보유하므로 역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⁶³⁾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⁶⁴⁾

그 외에 지급인, 지급은행, 수취은행, 수취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정상적으로 성립하고 이행된 것으로 평가된다.⁶⁵⁾ 종종 수취인보다 자력이 월등한 수취은행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시도된다. 그러나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의 대가관계 결여로 인한 부당이득관계는 그들 사이에만 성립할 뿐이고,⁶⁶⁾ 수취은행은 이체자금을 취득하는 동시에 수취인에 대한 예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⁶⁷⁾ 이러한 청구는 이유 없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태도이다.⁶⁸⁾

결국 대가관계 흠결을 이유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의 성립을 저지하려는 방식에 의하여 착오 송금인을 보호하려는 방안은 채택하기 어렵다.

나. 입금기장거절권에 의한 해결

1) 강요된 부당이득의 문제와 입금기장거절권

앞서 본 것처럼 수취인의 의사에 반하여 대가관계 없이 지급이체가 이루어지거나 대가관계는 존재하나 지급이체의 합의 없이 또는 합의에 반하여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지급이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⁶⁹⁾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단지 지급인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할 뿐이다. 그런데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수취은행이 상계를 하거나 수취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경우, 결과적으로 수취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수취은행이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함과 동시에 그 채무에 부착된 항변을 상실한 채 지급인이라는 새

62) 정경영, 앞의 책, 272면; 김형석, 앞의 논문, 284, 308면; 김상중, 앞의 논문, 239-240면; 김창모, 앞의 논문, 455-456면; 윤진수, 앞의 논문, 378-379면; 박세민, "삼각관계상의 부당이득 : 지시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2007), 158면 이하.

63) 김창모, 앞의 논문, 476-478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1. 선고 2006나1526 판결(소액사건임을 이유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됨).

64)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65) 정경영, 앞의 책, 271면; Canaris, *op. cit.*, Rn. 429.

66) 윤진수, 앞의 논문, 379면; 김상중, 앞의 논문, 240-241면.

67) 정경영, 앞의 논문(2009), 636-637면; 김창모, 앞의 논문, 476-478면.

68)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69) 전자를 법적 원인 없는 지급이체(rechtsgrundlose Überweisung)라고 하고, 후자를 합의에 반한 지급이체(vereinbarungswidrige Überweisung)라고 한다.

로운 채권자를 상대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경우에 따라 수취인에게 매우 불이익할 수도 있는데, 이를 '강요된 부당이득(aufgedrangte Bereicherung)'이라고 한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경우 수취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취인에게 이른바 입금기장거절권(Zurückweisungsrecht)을 인정하여 그 행사에 따라 수취인의 예금채권 자체를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논의 되어 왔고, 이는 우리 학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2) 입금기장거절권의 인정 여부

가) 독일에서의 논의

독일의 학설은 입금기장거절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있다.⁷⁰⁾ 긍정설의 논거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상 제3자의 수익거절권(독일 민법 제333조)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⁷¹⁾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지로계약의 보충적 해석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가 유력하다.⁷²⁾ 즉 대가관계 등 법적 원인 없이 또는 수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입금되는 경우에는 위 지로 계약이 포섭하는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부정설⁷³⁾은 입금기장의 추상성, 즉 대가관계로부터 독립된 이체 질서의 안정에서 근거를 찾는다.

독일의 판례는 1989년 독일 연방법원이 처음으로 입금기장거절권을 인정⁷⁴⁾한 이래 입금기장거절권의 법리를 승인하고 있다.⁷⁵⁾ 특히 Celle 고등법원은 착오 송금의 사안에서 수취인의 입금기장거절권 행사에 따라 수취은행의 상계를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⁷⁶⁾

나)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70) 그 밖에 수취인이 개개의 입금기장마다 입금 승낙을 하지 않으면 무인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Schwintowski/Schäfer, *Bankrecht, Commercial Banking - Investment Banking*, 1997, Rn. 124, 182ff; Meder, Stephan, *Stillschweigende Annahme der Kontogutschrift und Verwahrungsvorbehalt*, 1999, 2137ff.)도 있으나, 지급이체제도의 신속성과 확실성을 크게 해하는 것이어서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71) Canaris, *op. cit.*, Rn. 473. 이에 대하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낙약자와 수익자와는 달리 수취은행과 수취인 사이에는 사전에 지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추적용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Häuser, *Zurückweisungsrecht gegen eine "aufgedrängte Gutschrift" nur bei fehlendem Valutaverhältnis - Eine Besprechung des Urteils des Bundesgerichtshofs vom 6. 12. 1994*,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1995, S.92ff.)

72) Häuser, *op. cit.*, S.433.

73) Schlegelberger, *op. cit.*, Rn. 112; Bydlinski, Peter, *Zivilrechtsfragen bei Zahlung auf ein nicht autorisiertes Gläubigerkonto*, Österreichisches Bankarchiv, 1995, S.605f; Köndgen, *Die Entwicklung des privaten Bankrechts in den Jahren 1992-19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1996, S.565.

74) BGH NJW 1990, 323 = WM 1989, 1560 = ZIP 1989, 1317.

75) 독일 연방법원은 법적 원인 없는 지급이체의 경우 입금기장거절권을 인정한 반면, 합의에 반한 지급이체의 경우에는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BGHZ 128, 136 = NJW 1995, 520 = WM 1995, 149 = ZIP 1995, 109).

76) OLG Celle WM 1994, 625.

우리의 학설 역시 입금기장거절권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있다. 긍정설의 논거로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의 유추적용이 주장되기도 하지만,⁷⁷⁾ 최근에는 수취은행과 수취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보충적 해석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가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즉 법적 원인 없는 입금기장이나 수취인의 의사에 반한 입금기장으로 인하여 ‘강요된 부당이득’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인하려는 의사가 수취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무인적 청구권 발생을 위한 사전계약을 보충적으로 해석하여 이러한 경우 수취인에게 입금기장을 거절할 권한이 유보되어 있다는 것이다.⁷⁸⁾ 이에 비하여 입금기장거절권 부정설은 긍정설에 따른 경우 지급이체의 추상성에 반한다거나,⁷⁹⁾ 수취은행으로서는 입금기장거절권을 유보하는 내용의 합의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긍정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충적 해석은 불가능하다는 점⁸⁰⁾을 근거로 한다. 또한 본래 수취인 보호를 위한 이론인 입금기장거절권의 법리를 지급인 보호를 위하여 활용하려는 것은 타당하지도 실효적이지도 않다는 지적⁸¹⁾도 있다.

입금기장거절권의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다만 하급심 판결 가운데는 이를 인정된 것이 있어 주목된다. 비록 항소심에 의하여 파기되기는 했지만 위 판결은 착오 송금의 사안에서 입금기장거절권을 정면으로 인정하면서 그 요건과 효과를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⁸²⁾

77) 정경영, 앞의 책, 280-282면; 정경영, 앞의 논문(1994), 249-250면; 정경영, 앞의 논문(2009), 637-640면.

78) 정대익, 앞의 논문(2004A), 280-281면; 김상중, 앞의 논문, 251-254면.

79) 오영준,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시 수취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상계의 가부 - 대상판결 :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 「BFL」 제43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2010), 99-100면; 최준규, “금전의 이동과 물권적 청구권”, 법조 제638호, 법조협회(2009), 92, 129-132면.

80) 윤진수, 2008, 379면 ; 김창모, 2009, 469면.

81) 윤진수, 2008, 379면 ; 김창모, 2009, 469면 ; 오영준, 2010, 99-100면 ; 최재혁, 2009, 95면.

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9가소246156 판결. 위 판결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원고 X는 2009. 6. 17. A 은행에 개설된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폰뱅킹의 방법으로 거래처인 B가 A 은행에 개설한 계좌로 물품 대금을 지급이체하려고 했으나, 착오로 다른 거래처인 C가 피고 Y 은행에 개설한 계좌로 지급이체하고 말았다. 본래 0원이었던 C의 Y 은행 계좌 잔액은 위 지급이체로 인한 입금기장으로 인하여 5,883,000원이 되었으나, 불과 3초 뒤에 Y 은행의 C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에 의하여 차감기장되어 다시 0원이 되었다. X는 이를 뒤 착오 송금 사실을 알게 되자 C에게 착오 송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C는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어서 반환받지 못하였다. 한편, C는 착오 송금액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인정하면서 X 및 Y 은행에게 그에 관한 입금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X는 피고 Y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보충적 해석에 입각하여 입금기장거절권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지급인이 지급인 은행에게 일정액에 관한 구체적 지급지시를 하면 앞서 본 자금이체계약, 환거래계약, 예금거래계약 등의 고리를 거쳐 수취인 은행이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에 관한 입금기장을 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일단 입금기장이 이루어지면 수취인은 입금기장에 대한 개별적 승낙을 할 필요 없이 수취인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며, 입금기장으로부터 나오는 위 채권은 무인적 채권으로서 지급인과 지급인 은행, 수취인과 수취인 은행, 또는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의 원인관계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의 개별적인 승낙 없이 위와 같은 예금채권이 성립한다는 것이 수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연히 예금채권이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취인의 의사와 무관한 예금채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심히 훼손하는 것이 되고 이는 자금 이동을 안전·신속·원활하게 한다는 계좌이체 제도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수취인의 개별적인 승낙 없이 예금채권이 성립하게 되는 이유는 수취인이 무인적 청구권의 성립시기를 빨리 확정시켜 자금이체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전에 수취인 은행과 사이의 예금거래계약을 통하여 입금기장에 관하여 포괄적으

당초 입금기장의 추상성이 인정되는 법적 근거가 계좌개설계약 당사자인 수취인과 수취은행의 보충적 의사 해석에 있었던 이상, 입금기장거절권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한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사적자치의 원칙상 입금기장에 의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계좌개설계약 당시 앞으로 이루어질 개개의 입금기장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미리 포괄 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다만 대가관계 없는 지급이체로서 수취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입금기장의 경우에는 수취인이 사후적으로 입금기장을 거절함으로써 강요된 부당이득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수취은행이 수취인과 사이에 입금기장정정권(Stornorecht)을 약정하여 지급이체상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⁸³⁾ 착오 송금의 경우 통상적으로 수취인의 동의 하에 지급은행을 통한 지급인의 자금반환 신청에 응하고 있는 현실과도 부합한다. 입금기장거절권이 지급이체의 추상성에 반한다는 비판은 입금기장거절권이 입금기장의 추상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수취은행으로서는 입금기장거절권을 유보하는 내용의 합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 역시 가정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기준'의 성격도 갖는 점⁸⁴⁾을 간과하고 오직 심리적 추론의 관점에서만 접근함으로써 결국 경제적 우위에 있는 수취은행을 돕는 결과만을 가져온다는 점에서⁸⁵⁾ 타당하지 않다.

3) 입금기장거절권의 요건

입금기장거절권이 인정되려면 i) 법적 원인 없는 지급이체 또는 합의에 반한 지급이체가 있을 것, ii) 수취인이 입금기장을 인정한다는 신뢰상태를 유책하게 야기함으로써 입금기장거절권이 실효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이 요구된다. 그 밖에 수취인 계좌가 압류되었거나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입금기장거절권이 인정된다는 견해⁸⁶⁾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강요된 부당이득의 문제는 여전하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법적 원인 없는 지급이체의 대표적인 예는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⁸⁷⁾ 실효 사유의 사례로는 입금기장을 계기로 수취인이 추가적

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권한을 포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착오 송금의 경우에 수취인의 동의를 전제로 지급인의 요청에 의하여 수취인의 입금기장과 지급인의 차감기장이 말소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당사자의 의사가 법률상 원인 없는 자금이체로서 수취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금기장이 된 경우까지 수취인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권한을 미리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취인이 입금기장을 인정함으로써 봄이 마땅한 신뢰상태를 야기하거나 제3자가 입금기장을 신뢰하여 이에 근거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전까지는 수취인이 입금기장을 거절함으로써 처음부터 자신에게 착오 송금액에 대한 예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 계약 해석이 될 것이다.”

83)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8조 제1항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17조 제1항.

84) BGHZ 7, 231; BGHZ 9, 273; LM Nr. 1 zu §157 (D) BGB; LM Nr.5 zu §133 (A) BGB.

85) Zweigert/Kötz, *Einführung in die Rechtsvergleichung, Band 2(2. Aufl.)*, 1984, S.102.

86) 정대익, 앞의 논문(2004A), 281-282면.

87) 당사자들의 이익을 형량하여 볼 때 대가관계 자체가 없는 지급이체의 경우에만 입금기장거절권이

으로 수취은행으로부터 신용을 얻는 경우⁸⁸⁾⁸⁹⁾를 들 수 있다. 입금기장거절권이 실효되었다는 점은 소극적 요건으로서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⁹⁰⁾ 수취인의 채권자가 입금기장거절권의 행사 전에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수취인이 신뢰상태를 유책하게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취인은 여전히 입금기장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⁹¹⁾

4) 입금기장거절권 행사의 효과

수취인이 입금기장거절권을 행사하면 처음부터 입금기장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착오 송금액에 관한 수취인의 예금채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⁹²⁾ 수취은행은 수취인 계좌에 이루어진 입금기장을 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지급인은 지급은행을 상대로 출금기장된 금액에 관하여 재입금기장을 청구할 수 있다.⁹³⁾ 그 법적 근거에 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⁹⁴⁾ 지급인 계좌에서의 출금기장을 지급이체를 위한 비용상환·선급청구권과 지급인의 예금채권과의 상계로 이해되고, 입금기장거절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지시가 실행되지 못한다면 비용상환·선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상계는 효력을 잃게 되어 예금채권이 소급적으로 부활한다는 견해⁹⁵⁾가 설득력이 있다.

지급은행은 수취은행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지급은행은 지급인에 대하여 재입금기장의무를 부담하면서도 한국은행에 설정된 당좌예금 계좌를 통하여 수취은행과의 차액결제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그대로 부담하는 반면, 수취은행은 수취인에 대한 예금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지급은행과의 차액결제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그대로 보유하기 때문이다.

5. 수취은행의 상계로부터의 보호

가. 두 가지 접근방법

대가관계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보는 이상 수취은

인정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김상중, 앞의 논문, 256면).

88) Häuser in : *Münchener Kommentar zum Handelsgesetzbuch*(2. Aufl.), 2009, Rn. 437.

89) 그 밖에 입금기장거절권이 '지체 없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행사기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 부적절하다(정대익, 앞의 논문(2004A), 283면).

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9가소246156 판결 참조.

91) 김상중, 앞의 논문, 257-258면.

92) 김상중, 앞의 논문, 252면 ; 최재혁, 앞의 논문, 81면 ; 오영준, 앞의 논문, 92-93면.

93) 전자금융거래법 제12조 제2항.

94) 출금기장을 해제조건부 행위로 이해하는 견해로는 Schönle, *Bank- und Börsenrecht*, 1971, §31 III. 2.;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의무를 근거로 제시하는 견해로는 Canaris, op. cit., Rn. 346.

95) 정경영, 앞의 책, 301면. 따라서 출금기장으로부터 재기장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한다고 한다.

행이 수취인에 대한 별도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내 학설들은 대부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⁹⁶⁾ 판례 역시 마찬가지이다.⁹⁷⁾ 이 경우 수취인은 지급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지만,⁹⁸⁾ 수취인에게 위 예금채권 외에는 재산이 없었다면 사실상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가치가 없게 되어 버린다.⁹⁹⁾

이러한 수취은행의 상계로부터 지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는, 권리남용의 법리 등에 의하여 상계 자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담보가 되는 수취인의 예금채권 존속을 확보하려는 입장이다. 입금기장거절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수동채권이 될 예금채권이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상계의 효력이 없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입금기장거절권 역시 상계 효력의 부인에 의한 보호 방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일단 상계는 허용하면서도 편취금 변제의 법리나 전용물 소권의 법리 등에 의하여 지급인이 수취은행을 상대로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장이다.

나. 상계 효력의 부인에 의한 보호 방법

1) 상계권 남용

가) 학설

우리나라의 학설들은 대체로 수취은행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크지 않거나, 무인성 인정을 전제로 한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의 필요성, 은행의 공공적 성격과 자금이체시스템 운용자로서의 역할 등을 근거로 착오 송금의 사안에서 수취은행의 상계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¹⁰⁰⁾

96) 김남한, 앞의 논문, 96면 ; 김창모, 앞의 논문, 476면 ; 김상호, 앞의 논문, 265면 ; 오흥록, 앞의 논문, 128면.

97) 대구지방법원 2004. 1. 28. 선고 2003나10191 판결(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여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됨) ; 전주지방법원 2005. 9. 1. 선고 2005나1585 판결(상동)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1. 선고 2006나1526 판결(상동)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1. 선고 2006나1526 판결 (상동) ; 울산지방법원 2008. 7. 3. 선고 2008가단3434 판결(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5. 선고 2010나11711 판결(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여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됨).

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1. 선고 2006나1526 판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여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됨).

99) 이 경우 지급은행은 지급인의 위임사무 처리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지급은행에 대한 청구는 불가능하며, 수취은행은 상계에 의하여 수취인에 대한 예금채무를 면하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수취인에 대한 채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불가능하다.

100) 최재혁, 앞의 논문, 82-84면. 위 견해는 그 밖에도 상계권 남용의 법리가 요구되는 근거로서, 무인성 인정을 전제로 한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의 필요성, 은행의 신속·원활한 업무 처리와의 병존 가능성, 은행의 공공적 성격과 자금이체시스템 운용자로서의 역할, 횡령·편취금전을 수령한 자의 피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권리남용이 되는지에 관하여는 주로 수취은행의 주관적 요소의 필요성 여부를 중심으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일부 견해¹⁰¹⁾는 상계권 남용의 경우에는 일반적 권리남용의 경우와 같은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수의 견해는 수취은행이 착오 송금 사실을 알면서도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된다고 하여 수취은행의 주관적 요건을 요구한다.¹⁰²⁾

나) 판례

대법원은 2010년 처음으로 수취은행의 상계권 남용을 인정하는 판결¹⁰³⁾을 선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에 다수인 사이의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수취은행을 보호할 필요성은 현저히 감소되고,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원인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수취은행이 휘말리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우려는 없는 점, 금융기관인 은행은 영리법인인 일반의 주식회사와는 달리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용질서 유지와 자금중개 기능의 효율성 유지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에 참가하여 송금·입금에 관한 용역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점, 수취인이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한 상태는 공평·정의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수취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입금액 상당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착오송금 사실을 알고 있는 수취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예금을 인출·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금지되어 있는바,¹⁰⁴⁾ 위와 같은 상태에 놓인 수취인이 그 법적 상태를 교정하기 위하여 송금의뢰인의 반환요구에 응하여 수취은행에게 착오로 입금된 금원의 반환을 승낙하고 있음에도 수취은행이 그 입금액 상당의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상계의 대상으로 삼아 채권회수를 도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평·정의의 이념에 합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참작할 때,

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판례(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와의 균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오영준, 앞의 논문, 101-103면 역시 동일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101) 김재형, “2010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0권, 한국사법행정학회(2011), 31-32면.

102) 김지희, 앞의 논문, 136면; 김창모, 앞의 논문, 477면; 김상호, 앞의 논문, 266-267면; 오영준, 앞의 논문, 101면.

103)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104) 대법원은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최근 대법원은 자신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사용·처분한 사안에서 이체받은 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면서도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여 주목을 받은바 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위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김동윤·윤상훈, “착오송금 사안에서 위탁관계의 존부 및 횡령·배임죄 성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 법학평론 제13권,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23 참조.

위와 같은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 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 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다) 검토

수취은행의 상계가 허용될 경우 지급인은 수취인의 무자력으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반면 수취은행은 지급인의 손실 하에 뜻하지 않았던 수취인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은 셈이 된다. 이는 서로 대립하는 채권 채무 관계의 ‘공평한 처리’라거나 상계에 대한 ‘합리적 기대’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상계적상이 수취은행이 아닌 지급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착오 송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계권 남용의 사안에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것¹⁰⁵⁾과는 달리 일반 원칙¹⁰⁶⁾으로 돌아가 상계자의 주관적 요소를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즉, 위 대법원 판례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지급인이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은행의 상계가 권리남용이 된다고 할 것이다.¹⁰⁷⁾

2) 입금기장거절권 행사

입금기장거절권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입금기장거절권을 행사하면 처음부터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수취은행의 상계는 상계적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¹⁰⁸⁾ 입금기장거절권이

105)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106)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2307 판결. 위 판결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107) 독일의 판례도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OLG Hamm 1984. 4. 6. 11 U 220/83. “계좌이체가 단지 과실로 해당 계좌에 이루어졌으며, 그래서 송금인이 계좌보유자에 대해 양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그 상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한편, 영미법에서는 착오 송금된 금액에 관하여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의제신탁 관계(constructive trust)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상계를 제한하고 있는데, 특히 영국 법원은 수취은행의 주관적 인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Chase Mauhattan Bank, N.A. v. Israel British Bank (London) Ltd.) 이에 비하여 미국 법원은 주관적 요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오영준, 앞의 논문, 98면).

108) 김상중, 2009, 258면; 한편 본고는 원인관계불요설을 취하고 있지만, 원인관계필요설의 입장에서 서서 대가관계가 흠결된 경우에는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입금기장거절권을 행사한 경우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어 상계는 효력이 없게 된다(鹿兒島地方裁判

인정되는 독일에서의 판례¹⁰⁹⁾도 이와 같이 보고 있으며, 비록 항소심에서 파기되기는 하였지만 우리나라에도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¹¹⁰⁾이 존재한다.

다. 상계 효력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보호방법

수취은행의 상계가 유효인 경우 지급인은 대가관계의 상대방으로서 이득을 얻은 수취인에 대하여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때 지급인이 수취인이 아니라 수취은행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 논리로서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나 전용물소권이 논의되고 있다.¹¹¹⁾

1) 편취 금전에 의한 변제의 법리에 의한 보호

가) 편취 금전에 의한 변제의 법리

(1) 학설

부당이득법상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라는 주제는 편취자 M이 피해자 X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여 자신의 채권자 Y에 대한 채무 또는 Y의 채권자 Z에 대한 채무 등 변제수령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X가 Y 또는 Z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말한다.¹¹²⁾¹¹³⁾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있다.

所 1989. 11. 27. 判決(判例タイムズ 718號 124面); 名古屋高等裁判所 2005. 3. 17. 判決의 경우 원인관계필요설의 입장에 선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예금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구성하는 법논리를 취하고 있다.

109) BGH NJW 1990, 323 = WM 1989, 1560 = ZIP 1989, 1317; OLG Celle WM 1994, 625.

1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9가소246156 판결. “수취인인 소외 회사는 수취인 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착오 송금액에 대한 입금기장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입금기장거절권이 소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착오 송금액에 관한 예금채권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상계는 수동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111)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한 수취은행 뿐만 아니라 수취인의 일반 채권자의 경우에도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전득하였거나 이로부터 이득을 얻은 자에 해당한다면 편취금에 의한 변제의 법리와 전용물소권의 법리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리들이 수취은행의 상계로부터 지급인을 보호하는 수단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이런 관점에서 鎌形史子, “振込依頼人が振込先を誤って振込依頼をし, これに基づき受取人の預金口座に誤振込金が入金記帳された場合に、振込依頼人か、被任向銀行に對し、振込金相當額の不當利得返還請求をすることの可否”, 「銀行法務21」649號, 經濟法令研究會(2005), 36面은 수취은행의 상계의 경우와 압류채권자의 압류의 경우 모두 편취금 변제 판례의 법리를 확장,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12) 여기서 편취라 함은, 사취의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절도·강도·횡령·배임 등을 포함하여 위법하게 취득하는 것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본 절에서는 혼동의 여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 편취자, 변제수령자를 단순히 X, M, Y 또는 Z라고만 표현하기로 한다.

113) 종래 이 문제는, ① M이 X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여 자신의 Y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자기채무 변제형), ② M이 Y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후 다시 X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여 편취당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Y에게 변제하는 경우(이중편취형), ③ M이 X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여 제3자인 Y의 Z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제3자 수익형)으로 나뉘어 논의되어 왔는데[이 분류는 四宮和夫, 「事務管理·不當利得·不法行爲(上卷)」, 靑林書院(1981), 199面을 참고로 한 것이다(양창수, “금전의 부당이득

긍정설은 공평의 이념을 근거로 하는 일본 학자 我妻榮의 이론¹¹⁴⁾을 수용하여 사회관념상 X의 금전으로 Y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실상의 연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전의 소유권의 귀속과 관계없이 X의 손실과 Y의 이득과의 사이에는 이른바 사회관념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¹¹⁵⁾ Y에게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¹¹⁶⁾ 긍정설 가운데에는 직접적 인과관계설을 전제로 하여 금전의 소유자 또는 금전가치의 보유자가 권리를 상실한 경우,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그 금전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가 이를 보유할 권리가 있는 때(선의취득에 준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즉,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¹¹⁷⁾ 그 밖에 채권 상실의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의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민법 규정들¹¹⁸⁾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면서 변제수령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피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해야 한다거나,¹¹⁹⁾ 침해부당이득의 관점에서 금전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변제수령자가 악의·중과실인 경우에는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견해¹²⁰⁾도 있다.

이에 비하여 부정설은 유형론을 전제로 하여, Y에게는 채권(자기채무변제형) 또는 위임계약·사무관리(제3자 수익형) 등의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설령 그가 악의라고 하더라도 급부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고, X가 금전의 점유를 상실한 이상 X는 소유권을 잃게 되므로, Y가 금전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X는 소유자가 아니어서 침해부당이득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¹²¹⁾ 그 밖에 X가 Y를 상대로 직접 부당

으로 인한 반환의무 -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문제 서설 -,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4호(2002), 5면에서 재인용], 이중편취형은 Y가 금전의 수령 당시 M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 이외에는 자기채무 변제형과 별 차이가 없다.

- 114)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직접적 인과관계설을 비판하고 사회관념상 인과관계설을 취하면서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는 금전의 소유권 귀속과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법률상 원인에 관하여는, 선의취득에 관한 일본 제192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M의 Y에 대한 변제 시 Y가 편취금전이라는 점에 관하여 악의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완전한 변제'가 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설명한다(我妻榮, 「債權各論 下卷一(民法講義 V4)」, 岩波書店(1972), 1020-1022면). 이 견해는 부당이득법의 구조에 관한 통일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실질적 공평주의와 피해자 보호의 강조와의 결합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양창수, 앞의 논문(2002), 19면). 현재 일본의 통설이며 판례의 입장(最高裁判所 1974. 9. 26. 判決)이기도 하다.
- 115) 실제적인 재산이동의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동등하게 다루고자 하는 이른바 '사회관념상의 인과관계'는 우리 판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441 판결 및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1610 판결 등 참조.
- 116) 다만 Z는 채권의 변제로서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의 원인이 있어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 117) 제철웅,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고시계」 제52권 제3호, 국가고시학회(2007), 72-82면.
- 118) 타인의 채무를 착오로 변제한 자라도 선의로 증서 훼손 등의 행위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제745조,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라도 선의로 소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제465조 제1항, 손실자는 수익자로부터 목적물을 무상취득한 양수인이라도 그가 선의라면 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제747조 제2항 등은 모두 ① 채권 상실의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② 선의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 119) 박세민, 앞의 논문(2008), 116-125면.
- 120) 문형배, "편취 또는 횡령한 금전에 의한 변제와 변제수령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 「판례연구」 제17집, 부산판례연구회(2006), 396-416면.

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M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X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¹²²⁾ 유형론을 전제로 X와 Y 사이에는 급부관계가 없어 인과관계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¹²³⁾도 있다.

(2) 판례

대법원은 2003년 자기채무변제형에 속하는 사안에서 처음으로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시의 부당이득 법리를 채용하였고,¹²⁴⁾ 이후 제3자 수익형에 해당하는 사안에서도 같은 법리를 적용하였다.¹²⁵⁾ 그리고 2008년 다음과 같이 판시함으로써 두 유형에 같은 법리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다.¹²⁶⁾ “부당이득 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데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착오 송금 사안에서의 확장 가부

(1) 학설

121) 양창수, 앞의 논문(2002), 22-25면.

122) 이용박, “부당이득의 보충성 - 문제점과 개정방안 -”, 비교사법 제10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2003), 266-268면.

123) 김형배, 앞의 책, 302-304면.

124)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125)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다49726 판결.

126)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사안은 다음과 같다. Y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해오던 M은 Y의 자금을 횡령하고 있던 중에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이 Y의 명의로 X와의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그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으로 위 횡령금을 변제하고자 Y의 예금계좌에 송금하고, Y의 대표이사에게는 X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 보고를 하였다. 그 후 X가 Y에게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구하자, Y는 채무의 부존재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이것에 대해 X는 채무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동시에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X의 예비적 반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였는데, 대법원은 Y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Y가 받은 이익은 X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선고된 판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36090 판결)에서 X의 Y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는 근거로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점 외에 X의 손해와 Y의 이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도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다른 판례들과의 균형상 인과관계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비판으로는, 박세민, 앞의 논문(2008), 119-120면.

편취 금전에 의한 변제시의 부당이득 법리를 긍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착오 송금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시 견해가 나뉜다. 긍정설은 수취인이 착오 송금된 예금을 인출하여 수취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수취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고 악의 또는 중과실의 수취은행은 지급인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법적 정합성을 고려하면 수취은행이 상계를 한 경우에도 지급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²⁷⁾ 이에 비하여 부정설은 착오 송금의 사안에서는 횡령이나 편취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고 문제 상황이 전적으로 지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초래되었으므로 착오로 송금한 지급인은 횡령·편취의 피해자보다 보호가치가 작고, 따라서 수취은행의 지급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¹²⁸⁾

(2) 판례

이에 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고, 단지 수취인이 착오로 송금된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를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¹²⁹⁾가 있을 뿐이다. 일본의 경우 최고재판소의 판례는 없으나, 지급인이 착오 입금된 예금에 대하여 상계를 한 수취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하급심 판례가 존재한다.¹³⁰⁾

참고로 비록 법원의 판단은 아니지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몇 차례의 조정결정¹³¹⁾에서, 상계권 남용의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¹³²⁾을 인용하면서, 지급인이 수취은행에 착오 송금임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고 수취인 역시 이를 승낙하여 수취은행의 악의·중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면 지급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것이 있다. 상계권 남용이 인정되어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취은행이 부당이득을

127) 오영준, 앞의 논문, 102-103면.

128) 오흥록, 앞의 논문, 135-136면. 이 견해는 횡령금 또는 편취금에 의한 변제의 경우 악의·중과실의 수령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는 판례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129) 대법원 1968. 7. 24. 선고 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130) 東京地方裁判所 2005. 9. 26. 判決. “지급인과 수취인 간의 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수취인은 이체금 상당액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은행이 수취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당해 예금채권을 상계하는 것도 그것이 권리의 남용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본건 상계에 대해서도, 권리의 남용이 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계는 유효하다. (중략) 은행이 지급인으로부터 수취인의 소재가 불명하여 이체금의 반환에 관한 승낙을 얻을 수 없는 사정에 대하여 상당한 설명을 들었으면서도 착오 이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취인에 대한 채권으로 당해 이체에 관련되는 예금채권을 상계하여 자기의 채권 회수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채권 회수는 지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을 흠결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는 찬반 양론이 있으나, 특히 수취은행의 악의 및 중과실에 관하여 명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편취금 변제로 인한 부당이득을 인정할 중전 판례보다도 오히려 부당이득의 인정 요건을 완화시켰다는 비판이 특기할 만하다(関沢正彦, “組戻承諾が取れない場合の被任向銀行の誤振込金による預金相殺と不當利得”, 「金融法務事情」 1755號, 金融財政事情研究会(2005), 4面.).

131) 2010. 10. 20.자 제2010-89호 조정결정 및 2010. 10. 20.자 제2010-90호 조정결정.

132)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수취은행의 악의·중과실이라는 상계권 남용의 요건은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에서의 피해자의 변제수령자에 대한 직접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과 사실상 일치하므로, 위 결정들은 암묵적으로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에서의 부당이득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다) 검토

생각건대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의 경우 피해자가 악의·중과실의 변제수령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판례 이론에는 찬동하기 어렵다. 급부 부당이득의 경우 채권(자기채무변제형) 또는 위임이나 사무관리(제3자 수익형) 등이 법률상 원인이 되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고, 침해부당이득의 관점에서 금전의 경우 점유자가 곧 소유자인 이상,¹³³⁾ 변제수령자가 금전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가 편취자의 행위에 의하여 금전의 소유권을 잃은 상태였으므로 변제수령자는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금전의 경우 점유자가 곧 소유자라고 본 이상 물건행위의 유인성에 의하여 피해자가 물건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나 선의취득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고, 가치소유권의 개념을 부정한 이상 그에 기한 물건적 반환청구권을 고려할 필요도 없다.

다만 현 상황에서 위 판례 이론은 이미 확립된 법리라고 여겨지므로 위 법리를 받아들일 경우 착오 송금의 사안에서 수취은행이 상계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 우선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의 법리와 관련하여 예금채권은 기능적으로 금전과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다.¹³⁴⁾ 금전의 특성은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권이 있고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은 묻지 않는다는 데 있는데, 예금채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시나 원인관계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입금기장이 이루어진 이상 예금채권은 성립하므로 '입금기장 있는 곳에 예금채권 있다'는 식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수취은행에 의한 상계의 경우에도 유사한 취급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비록 판례 이론이 편취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위법하게 취득한 사안과 관련하여 발전된 것이지만, 그것이 불법행위법이 아닌 부당이득법의 일부로 구성되는 이상 그 위법 요소는 행위 측면보다 결과 측면과 관련지어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¹³⁵⁾ 그렇다면, 상계에 의하여 수취인이 지급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예금채권

133) 다수설의 입장이다(주석민법[물권법(I)]/이기용, 2001, 751면.) 판례 역시 “금전은 고도의 대체성을 가지고 금전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금액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가 거래상 의미”를 갖는다고 함으로써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태도를 취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134)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시의 부당이득 문제에 관한 최초의 판결인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의 사안에서도 목적물 일부는 금전이 아닌 예금채권이었다. 이에 대하여 예금채권과 금전을 구별할 실익이 적다는 이유로 찬동하는 견해로는 천진호, "타인 명의 예금 인출행위의 형사책임", 저스티스 제82호, 한국법학원(2004), 221면.

135) 이에 관하여는 관점에 따라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미국 부당이득법은 고의의 위법행위(conscious wrongdoing)에 의한 부당이득이라는 특수한 유형을 인정하면서 그 경우에는 이득자의 모든 이득을 반환하도록 하는 토출책임(disgorgement)을 부과하고 있고(Restatement Third of Restitution §§3, 40-44), 영국법계에는 과책(fault)을 부당이득반환책임의 핵심적 요소로 내세우는

을 재원으로 하여 자신의 채권 소멸이라는 이득을 얻은 이상 결과 측면에서 판례 이론이 요구하는 정도의 위법 요소는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편취 금전에 의한 변제 시의 부당이득 문제에 관한 판례 이론에 의하는 이상, 착오 송금의 사안에서도 지급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직접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수취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전용물소권의 법리에 의한 보호

가) 전용물소권의 의의와 연혁

전용물 소권의 법리란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¹³⁶⁾

전용물 소권은 로마법상 ‘actio de in rem verso’에서 비롯되었다.¹³⁷⁾ 이는 가권복속자의 채권자로 하여금 가부의 재산이 이익을 얻은 한도에서 가부를 상대로도 직접 부가적인 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 소권은 독일 보통법시대에 이르러 계약상의 급부로부터 이득을 얻은 제3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용물 소권(actio de in rem verso utilis)으로 발전하였다.¹³⁸⁾

그러나 이후 독일 민법 제정 당시에는 전용물소권이 별다른 실익 없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법률관계만을 발생시킬 뿐이라는 이유로 그 채택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고, 현재까지 독일의 판례와 학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¹³⁹⁾ 이에 비하여 프랑스에서는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는 민법전¹⁴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892년의 부디에(Boudier) 판결¹⁴¹⁾ 이후 형평의 원칙에 기하여 ‘전용물소

선례(Sabemo Pty Ltd. v North Sydney Municipal Council. [1977] 2 NSWLR 880, 898 : Supreme Court of New South Wales)가 존재한다(이혜리, “계약교섭결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2012), 285면).

136)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137) Kupisch, *Die Versionsklage : Ihre Entwicklung von der gemeinrechtlichen Theorie des 17. Jahrhunderts bis zum Österreichischen Allgemeinen Bürgerlichen Gesetzbuch*, 1965, S.11-12.

138) Kupisch, *op. cit.*, S.24. 그 법적 근거는 가권자의 이익을 위해 채무를 부담한 가권복속자가 위임계약 또는 사무관리에 기하여 가권자에 대하여 갖는 면책청구권을 가권복속자의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Windscheid, *Lehrbuch des Pandektenrechts, Band 2(9. Aufl.)*, 1906, S.1117 Fn.2).

139) 박세민, 앞의 논문(2007), 256면. 다만 독일 민법 제822조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전용물소권에 대한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140) 프랑스 민법은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준계약에 관한 절(Des quasi-contrats) 아래에 비채변제(paiement de l'indu) 및 사무관리(gestion d'affaires)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을 뿐이다.

141) Cass. req. v. 15. 6. 1892, D. 1892. 1. 596. 비료 판매업자인 원고 X는 임대인인 피고 Y 소유 농지의 임차인인 M에게 비료를 판매한 뒤,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고 M이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권'(actio de in rem verso)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인정하고 있다.¹⁴²⁾ 한편 일본 민법은 전용물소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판례는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인정하였다.¹⁴³⁾ 그 후 최고재판소는 후속 판결을 통하여 Y가 M과 사이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Y의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흠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요건을 강화하였다.¹⁴⁴⁾ 다만 착오 송금의 사안에도 전용물소권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본 학계에서 찬반 양론¹⁴⁵⁾이 대립한다.

나) 학설과 판례

국내에는 아직 전용물소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이를 인정할 경우 계약 상대방의 무자력 위험을 수익자인 제3자에게 전가하게 되고, 계약 당사자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누리게 된다는 점, 자신의 급부를 선이행함으로써 쌍무계약상의 항변권 등을 이미 포기한 자에게 제3자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요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가 유력하다.¹⁴⁶⁾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747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그 이득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과 프랑스 민법상 전용물소권의 요건인 보충성과의 유사성에 주목해 보면 위 조항은 전용물소권을 원칙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독일 민법 제822조와 달리 전용물소권의 근거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점, 위 조항에 따른 이득 박탈이 유효한 계약에 의한 “양수”의 경우에도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볼 때 계약법 원리와 조화를 내세워 전용물소권의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무상 취득한 “악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위 조항에 따라 목적물을 반환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무상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동산 선의취득의 경우가 아닌 한 전용물소권의 법리에 따라 “현존이득의 반환”

되자 직접 피고 Y를 상대로 비료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이다.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142) 정태륜, “전용물소권에 관한 일고찰”, 비교사법 제9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2002), 199면 이하. 다만, ‘전용물소권’이라는 용어는 일반적 부당이득반환소권이 적용되는 일부의 예만을 파악한 것일 뿐이라는 반성에서, 오늘날에는 독일법에서 유래한 ‘부당이득 (l'enrichissement sans cause)’이란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민법주해[XVII]/양창수, 129면).

143) 最高裁判所 1970. 7. 16. 判決(民集 24-7, 909면).

144) 最高裁判所 1995. 9. 19. 判決(民集 49-8, 2805면). 일본 민법은 독일 민법 제822조나 우리 민법 제747조 제2항과 같이 무상수익자의 반환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위 판례는 이득의 무상성에 대한 고려를 기초로 이득 보유의 법률상 원인 부재에 상호 동치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박세민, 앞의 논문(2007), 259면).

145) 찬성하는 견해로는 牧山市治, “金融判例研究會報告-銀行による貸付債權と誤振込金にかかる預金との相殺が不當利得となるとされた事例”, 「金融法務事情」 1770號, 金融財政事情研究會(2006), 86-87면; 栗原由紀子, “誤振込された預金と受取人に對する貸付債權を相殺した被任向銀行が, 振込依頼人に對して不當利得返還義務を負うとされた事例”, 「銀行法務21」 662號, 民法判例研究會(2006), 60-64면. 반대하는 견해로는 柴崎暁, “銀行が受取人の銀行口座に誤振込みされた預金について受取人に對する貸付債權をもつて相殺したことにより振込依頼人に對して誤振込金相當額の不當利得返還義務を負うとされた事例”, 「金融·商事判例」 1241號, 經濟法令研究會(2006), 9면.

146) 민법주해[XVII]/양창수, 231면 이하; 양창수, “일반부당이득법의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1987), 270면 이하.

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¹⁴⁷⁾

한편, 전용물소권 사안의 해결 방법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던¹⁴⁸⁾ 대법원은 2002년의 판결¹⁴⁹⁾에서 전용물소권을 부인하면서, 이를 인정할 경우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 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했다.

다) 검토

전용물소권을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그리 크지 않은 것에 비하여, 자기 책임 원칙이라는 계약법의 기본 원리를 위태롭게 하고,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잠탈하게 되며, 수익자인 제3자의 계약 상대방에 대한 항변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치루어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 따라서, 다수설 및 판례와 마찬가지로 전용물소권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 민법 제747조 제2항에 의한 보호

민법 제747조 제2항은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간접적으로 독일 민법 제822조¹⁵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되지만, 주요국의 입법례에서 이와 유사한 규정을 찾기 어려운 독자적인 것이다.¹⁵¹⁾

그러나 수취은행이 착오 송금액에 관한 예금채권과 자신의 채권을 상계한 경우에는 무엇보다 무상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¹⁵²⁾ 민법 제747조 제2항에서 이익의 목적물을 유상 취득한 전득자에 대한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있는 취지는 반환청구를 긍정할 경우 전득자가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

147) 박세민, 앞의 논문(2007), 262-269면; 정태륜, 앞의 논문, 214면 이하도 경우에 따라 필요에 의해 전용물소권을 인정함으로써 보다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148) 전용물소권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인정한 판결로는,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441 판결, 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637 판결이 있고,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는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1012 판결이 있다(양창수, 앞의 논문(1987), 70-71, 77면 참조).

149)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공사업자인 원고 X는 피고 Y와 함께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M으로부터 위 건물의 창호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M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건물 가치의 증가분 중 피고 Y의 건물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본문과 같이 판시하였다.

150) 독일 민법 제822조 (제3자의 반환의무) 수령자가 취득한 것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출연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령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소멸하는 한도에서, 제3자는 부당이득청구권자로부터 법적 원인 없이 출연을 받은 경우에 준하여 반환의무를 진다.

151) 민법주해[XVIII]/양창수, 571면.

152) 정대익, 앞의 논문(2004A), 274-275면.

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상계적상과 같은 항변 사유를 상실하고 수익자의 무자력 위험을 떠안게 된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¹⁵³⁾ 수취은행이 상계한 경우에도 지급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반환청구가 허용된다면, 수취은행은 상계로 인하여 자신의 수취인에 대한 반대 채권을 상실한 채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¹⁵⁴⁾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 수취인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민법 제747조 제2항이 회피하고자 하였던 바로 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6. 수취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보호

가. 두 가지 접근방법

대가관계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은 원칙적으로 착오 송금된 금액에 관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착오 송금을 한 지급인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데, 이 때 위 예금채권은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최종적인 담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지급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일반 채권에 불과하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급인은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안분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위 예금채권은 본래 지급인의 단순한 실수로 인하여 그의 재산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당초 수취인의 채권자들이 예상했던 책임재산은 아니어서 이러한 결과는 부당한 면이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지급인 보호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 방안은 입금기장거절권을 행사하여 처음부터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을 무력화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다른 채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지급인을 보호하려는 방안이다.

나. 입금기장거절권에 의한 보호방법

1) 입금기장거절권과 착오 송금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착오 송금이 이루어진 뒤에 입금기장거절권이 행사되면 착오 송금액에 관한 예금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고, 수취은행은 착오 송금액에 관한 입금기장을 말소할 수 있다. 그런데 착오 송금액에 관하여 입금기장거절권이 행사되어 입금기장이 말소되기 전에 수취인의 채권자가 해당 계좌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 강제집행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153) 김형석, 앞의 논문, 296-297면.

154) 지급인에게 착오 송금액을 반환한 수취은행은 그로 인하여 지급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하게 된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

먼저 절차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자면,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압류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하는 등으로 강제집행 절차 내에서 다룰 수는 없지만,¹⁵⁵⁾ 집행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전부금 소송이나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피전부채권이나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¹⁵⁶⁾

다만 입금기장거절권의 행사가 압류명령에서 금지를 명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그 효과를 수취인의 압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에 대한 압류에는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¹⁵⁷⁾ 입금기장거절권은 피압류채권인 예금채권 자체에 대한 처분행위가 아니라 그 발생원인인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추상적 채무약속 계약관계에 변경을 가하는 별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입금기장거절권을 압류명령에 위반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입금기장거절권으로 수취인의 압류 채권자와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근본적 이유는 지급인의 송금으로 인하여 수취인이 취득하게 되는 예금채권이 입금기장거절권의 성립 가능성을 필연적 속성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임대차 보증금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¹⁵⁸⁾

2) 착오 송금과 압류의 선후 관계

착오 송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수취인의 채권자가 해당 계좌를 압류한 경우는 좀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논의의 전제로서 특정 계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장래 입금될 금액에도 미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현재의 판례¹⁵⁹⁾와 통설¹⁶⁰⁾은 일정한 요건 하에 이

155) 대법원 1992. 4. 15.자 92마213 결정(전부명령의 경우) ; 대법원 1998. 8. 31.자 98마1535, 1536 결정(추심명령의 경우).

156) 윤경, “무효인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에 대한 구제방법”, 민사집행법연구 제1권, 한국사법행정학회(2005), 244면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588 판결. 위 판결은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자체가 무효라면 이에 기한 전부명령 역시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한편 이와 같은 무효는 압류 및 전부명령도 하나의 재판인 이상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다만 실제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뜻의 무효라고 보아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제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157)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158)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905 판결. 위 판결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관계 종료 후 그 목적물이 명도되기까지 사이에 발생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판시한다.

159)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참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실제 압류가 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압류명령 상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의하여 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관한 상세한 평석으로는 한

를 긍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수취인의 채권자가 해당 계좌를 압류하면서 명시적으로 장래 입금될 금액까지 압류할 채권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 후에 착오로 송금된 금액에 대하여도 일단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착오 송금 이전에 이미 압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시한다면 압류 이후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 대한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금기장거절권이 부정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입금기장거절권은 수취인의 압류 채권자와 같은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압류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설사 그것이 입금기장거절권의 행사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이라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 대한 채권자의 신뢰는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입금기장거절권이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채권자의 신뢰는 보호 가치가 있다. 이는 입금기장거절권의 실효라는 법리로 구현되어 있으며, 예금채권이 압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입금기장거절권이 실효되지 않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착오 송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수취인의 채권자가 해당 계좌를 압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입금기장거절권의 행사에 의하여 착오 송금액에 대한 압류는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게 된다.

3) 구체적인 법률관계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입금기장거절권이 행사되었음에도 수취인의 채권자가 착오로 송금된 금액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 수취은행은 비록 집행 절차 내에서 그 효력을 다룰 수는 없지만, 뒤따르는 추심금 소송이나 전부금 소송에서 입금기장거절권의 행사에 의하여 피추심채권이나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만약 수취은행이 수취인의 채권자에게 착오로 송금된 금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수취은행이 입금기장거절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음을 알면서도 지급한 경우라면 민법 제742조의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고, 수취은행은 착오 송금과 관련하여 지급은행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결국 위 지급액은 수취은행의 손실로 확정될 것이다. 한편 지급인은 입금기장거절권이 행사된 경우 지급은행에 대하여 착오 송금액에 관한 재입금기장을 청구하거나 지급은행으로부터 수취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

다. 지급인의 채권에 대한 우월적 지위 인정에 의한 보호방법

경환, 2011, 344-364면.
160)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XV], 박영사(1997), 686면.

1) 두 가지 방법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다른 채권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지급인을 보호하려는 방안은 다시 수취인이 착오 송금으로 취득한 예금채권을 수취인의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려는 입장과 단순히 지급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려는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급인으로서의 전자의 경우 집행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익의 소(도산절차에서는 환취권의 행사)를 제기하고, 후자의 경우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익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한 뒤에는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될 것이다.¹⁶¹⁾ 아래에서 위 두 가지 방향의 논의들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책임재산으로부터의 배제

이에 관한 국내의 논의는 일본에서의 논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일본의 논의를 먼저 소개한 뒤 국내의 학설과 판례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가) 일본에서의 논의

수취인이 착오 송금액에 관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을 책임재산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본의 학설은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뉜다. 부정설은 지급인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자로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¹⁶²⁾ 긍정설은 그 논거에 따라 세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다. 1설은 지급인이 이체한 금원과 수취인이 취득한 예금채권은 가치적인 의미에서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지급인은 가치소유권자로서 환취권이나 제3자이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⁶³⁾ 2설은 지급인이 예금채권 중 착오 송금된 부분에 관하여 선취특권과 유사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제3자이익의 소의 요건인 '양도를 방해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본다.¹⁶⁴⁾ 3설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지만 수취인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고, 수취인의 채권자도 위 예금채권을 수취인의 책임재산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¹⁶⁵⁾

161)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162) 小笠原浄二 外, "座談會-誤振込と預金の成否をめぐる諸問題", 「金融法務事情」, 1455號, 金融財政事情研究會(1996), 26面.

163) 四宮和夫, "物權的價值返還請求權について - 金錢の物權法的一側面", 「私法學の新たな展開」(我妻榮 追悼 論文集), 有斐閣(1975), 200-201面.

164) 森田宏樹, "振込取引の法的構造", 「金融取引と民法法理」(中田裕康, 道垣内弘人 編), 有斐閣(2000), 186面 이하 및 187面 각주 88에 인용된 논자들 참고.

165) 藤田祥子, 前掲論文, 66面. 위 견해는 착오 송금을 받은 수취인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수취인을 실질적으로 무권리자로 보아 수취인의 예금반환 청구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한 最高裁判所 2003. 3. 12. 決定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급인에 의한 착오 송금이 이루어진 후 수취인의 채권자가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자 지급인이 수취인의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인관계불요설을 전제로 지급인의 제3자이의의 소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¹⁶⁶⁾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지급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이체에 의해서 수취인이 지급이체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했을 때에는 지급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질 뿐 예금채권의 양도를 방해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지급인의 제3자이의의 소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일본 최고재판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취인의 예금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¹⁶⁷⁾

나) 국내의 논의

지급인이 착오 송금된 예금채권에 관하여 수취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언제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는 없는 듯하다. 다만 수취인이 입금기장거절권을 행사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3자이의의 소가 허용된다고 보는 견해¹⁶⁸⁾가 있다. 즉 이러한 경우 지급인은 지급은행에 대하여, 그리고 대위의 방식을 통해 수취은행에 대해서도 이체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소유가 아닌 동산에 대한 채권적 반환청구권자와 마찬가지로¹⁶⁹⁾ 착오 송금액의 ‘사실상’ 귀속자인 지급인의 제3자이의의 소 제기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부정설은 착오 송금의 경우에도 수취인의 예금채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수취인의 채권자의 압류도 인정하는 이상 해석론만으로는 지급인이 수취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인정하는 등 수취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우선적 권리를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한다.¹⁷⁰⁾ 장부상 금전(Buchgeld)과 같은 가치에 대한 소유권 개념을 인정하기 어렵다

166) 最高裁判所 1996. 4. 26. 判決(民集 50卷 5號 1267面). 위 판결의 원심 법원인 동경고등재판소는 원인관계불요설을 취하여 대가관계가 없는 위 사건에서는 수취인의 예금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위 착오 송금에 관련되는 금원의 가치는 실질적으로는 지급인에게 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외관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에 의하여 이것이 마치 수취인의 책임재산을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으므로, 지급인은 가치의 실질적 귀속자의 지위에 기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167) 最高裁判所 2000. 10. 10. 判決.

168) 김상중, 앞의 논문, 259-261면.

169) 대법원은 집행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닌 동산인 사안에서 제3자가 비록 목적물의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집행채무자에게 계약관계에 따라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한도에서는 제3자이의의 소를 인정하였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170) 김상호, 앞의 논문, 265면; 오홍록, 앞의 논문, 121-122면; 김창모, 앞의 논문, 468-470면. 다만, 위 견해는 원인관계불요설을 취할 경우, 수취인의 채권자가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그 효력은 없지만, 지급인은 마치 유효한 것처럼 보이는 압류의 외관에 의하여 ‘수취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행사에 장애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수취

는 점 역시 부정설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¹⁷¹⁾

대법원은 2006년 원인관계불요설의 입장에서 착오로 이체된 금액에 관하여도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한다고 봄으로써 위 예금채권의 권리자가 지급인이라는 해석¹⁷²⁾을 거부하고 위 예금채권의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한 지급인의 제3자이의의 소를 배척하였다.¹⁷³⁾ 나아가 대법원은 후속 판결¹⁷⁴⁾에서 다음과 같은 판시를 통하여 이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검토

착오 송금 사안과 같이 대가관계가 흠결된 경우에도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지급인은 단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급인은 단지 수취인의 일반채권자 중 1인에 불과하여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급인이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되는 여러 견해들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우선, 일본의 일부 학자들이 지급인의 제3자이의의 소를 긍정하는 논거로 원용하는 가치소유권 내지 가치반환청구권의 개념은 영미법상의 물건적 추급권(tracing) 법리¹⁷⁵⁾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채권·물권을 엄격하게 준별하면서 물건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 하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이론이라고 생각된다.¹⁷⁶⁾ 선취특권 유사의 우선적 권

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東京高等裁判所 1991. 11. 28. 判決을 인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9. 선고 2007나1196 판결을 비판한다.

171) 김지희, 앞의 논문, 138면; 최준규, 앞의 논문, 102면 이하도 같은 취지이다.

172) 제1심 판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3. 11. 6. 선고 2003가단2461 판결)의 판단이다.

173)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174)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위 판결의 원심 법원은 착오 송금액에 관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채권·채무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론을 전개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30. 선고 2009나10347 판결) 이는 대법원에 의하여 배척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른 사건에서도 유사한 해석론을 전개하였고(2009. 2. 19. 선고 2008가단161254 판결), 이는 항소심에서도 인용되었으나, 대법원은 지급인이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역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175) 영미 부당이득 제도는 일반적으로 대인적 청구권을 발생시킬 뿐이지만 특별한 경우 물건적 청구권, 즉 추급권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착오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할 수 있다 (Chase Manhattan Bank NA v. Israel-British Bank. Ltd; 최준규, 앞의 논문, 159-161면; 김진우, “신탁 재산의 특수성”, 법조 제553호, 법조협회(2002), 218면 이하).

176) 오홍록, 앞의 논문, 121면;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V], 박영사(1992), 228-229면(양창수 집필 부분)은, 가치반환청구를 인정하게 되면 선의의 채권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강제집행법이나 파산법의 원칙을 별다른 이유 없이 무너뜨리는 것이 되며, 가치반환청구가 허용되는 경우와 부인되는 경

리를 인정하려는 견해 역시 명문의 규정도 없이 해석으로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안전을 해하므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수취인의 예금채권 행사가 권리남용임을 전제로 위 예금채권은 수취인의 책임재산으로 기대될 수 없다는 견해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률적 논거가 미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하급심 판결이 채택한 논리, 즉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하지만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예금채권이 성립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여 위 예금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구성하는 것도 이와 유사한 논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채권의 존재 여부를 상대화하여 분열적 사고를 강요할 만큼의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우선변제권의 부여

가) 학설과 판례

지급인에게 수취인의 채권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지급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에 관한 견해의 대립 양상은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수취인의 일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배제할 것인지 여부의 경우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예컨대, 선취특권 유사의 우선적 권리를 인정하자는 견해는 사실 우선변제권 부여 여부와 관련되어 주장되는 편이 보다 자연스럽고, 지급인 역시 여타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바로 우선변제권 부정설의 논거로 활용된다.

한편, 일본에는 입법론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견해¹⁷⁷⁾도 있다. 이에 따르면, 해석론으로서 우선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발상은 택하기 어렵고, 은행의 이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계약적 방법에 의해서 자금이체제도 내에서 지급인의 우선권을 인정하자고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우리 민법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론¹⁷⁸⁾도 있다. 우리 민법의 체계가 채권과 물권의 엄격한 준별 및 물권법정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점, 다른 법률관계와의 형평 및 법질서를 고려한다면 착오 이체의 경우 지급인이 무자력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공평에 부합하는 점, 지급인의 권리에 우선변제효를 인정할 경우, 지급인의 지급지시 과정에서의 주의의 정도가 감소하여 착오 이체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수취인이 지급인과 통모하여 착오 이체로 가장할 유인이 생기게 되는 등¹⁷⁹⁾ 법경제학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우와의 경계 설정에 뚜렷한 합리성을 발견하기도 어렵다고 비판한다; 대법원 역시 “갑이 원고 회사의 판매대금 등을 빼돌려 은행의 비밀 예금구좌에 예금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현금화하여 그 예금통장과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 예금이나 현금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가치소유권의 개념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

177) 森田宏樹, 前掲論文, 189面 이하.

178) 오흥록, 앞의 논문, 122-126면.

179) 실제로 판례 중에는 지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착오 송금이라고 거짓 주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존재한다(서울고등법원 2006. 9. 22. 선고 2006나6371 판결.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됨).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대법원은 지급인인 원고가 착오 송금액에 관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배당재원으로 한 배당절차에서 선순위자로서 전액을 배당받은 국세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국세채권이 원고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면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¹⁸⁰⁾ 이는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나) 검토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채권에 불과하므로,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일본에서 주장되는 것처럼 지급이체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에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¹⁸¹⁾

7. 글을 맺으며

오늘날 화폐나 어음·수표 못지않게 중요한 지급결제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자금이체제도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험도 안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착오 송금의 사안이다. 판례는 착오 송금의 사안에서도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지급인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여 자신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 뿐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한 해결은 지급인이 홀로 수취인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급인 보호에 불충분하다. 특히, 착오 송금된 금액에 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한 수취은행이나 강제집행을 한 수취인의 채권자들이 사실상 지급인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으로부터 자신들의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는 상황은 정의 관념상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

지급이체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의 기본적 입장은 자금이체제도의 목적과 현실은 물론 지시삼각관계에 관한 부당이득 법리의 측면에서도 쉽사리 포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지급인 보호를 위하여 판례의 기본적 법리와 양립 가능한 부가적인 법적 수단이 강구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판례는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이러한 접근 방법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계권 남용의 법리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지급인의 보호에는 큰 실익이 없다. 본고는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입금기장거절권의

180)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181) 森田宏樹, 前掲論文, 191면은 수취인의 일반채권자는 수취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이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지급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약관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취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그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누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위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법리를 도입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의 성립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지급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입금기장거절권의 법리는 법이론적인 면에서도 우리 민법상 충분히 허용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자금이체제도의 현실의 측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없이 적용될 수 있다. 입금기장거절권은 수취은행의 상계로부터 지급인을 보다 충실히 보호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취인의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으로부터 지급인을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비록 입금기장거절권의 행사 여부가 권리자인 수취인의 의사에 달려 있다는 한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수취인이 무자력인 경우 지급인이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와 같은 한계는 입금기장거절권의 법리가 자금이체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다.

[국내 문헌]

단행본 및 주석서

- 김형배, 사무관리·부당이득, 박영사(2003)
정경영, 전자금융거래와 법, 박영사(2007)
정동윤, 어음·수표법, 법문사(2004)
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 홍문사(2006)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V], 박영사(1992)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XV], 박영사(1997)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XVII], 박영사(2005)

논문

- 강위두,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률상의 문제점”,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40권 제1호(1999)
고영태, “원인관계 없이 이루어진 지급이체의 법률관계”, 판례연구 제21집, 부산판례연구회(2010)
김남한, “전자자금거래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은행거래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1992)
김상중, “송금인의 수취인 착오로 이루어진 계좌이체에 따른 반환관계”, 고려법학 제55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2009)
김상호, “착오송금시 수취은행의 상계권 제한”, 재판과 판례 제20집, 대구판례연구회(2011)
김재형, “2010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0권, 한국사법행정학회(2011)
김지희, “착오송금과 상계”, 재판실무연구 2010-II, 서울남부지방법원(2010)
김진우, “신탁 재산의 특수성”, 법조 제553호, 법조협회(2002)
김창모, “착오로 수취인을 잘못 지정하여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경우 예금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민사판례연구 제31권, 박영사(2009)
김형석, “지급지시·급부관계·부당이득”,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3호(2006)
문형배, “편취 또는 횡령한 금전에 의한 변제와 변제수령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 「판례연구」 제17집, 부산판례연구회(2006)

- 박세민, "삼각관계상의 부당이득 : 지시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2007)
- 박세민, "부당이득법상의 인과관계와 법률상 원인 -「편취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예시로 -", 민사법학 제41호, 한국민사법학회(2008)
- 양창수, "일반부당이득법의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1987)
- 양창수, "금전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의무 -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문제 서설 -",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4호(2002)
- 오영준,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시 수취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상계의 가부 - 대상 판결 :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 「BFL」 제43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2010)
- 오흥록, "지급인의 수취인 착오에 의한 지급이체시의 제반 법률문제의 해결 - 특히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2009)
- 윤경, "무효인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에 대한 구제방법", 민사집행법연구 제1권, 한국사법행정학회(2005)
- 윤진수, "2007년도 주요 민법 판례 회고",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1호(2008)
- 이상용, "착오 송금의 법률관계와 착오 송금인의 구제 수단",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2013)
- 이상용, "지급이체의 법률관계", 충남대 법학연구 제28권 제2호(2017)
- 이용박, "부당이득의 보충성 - 문제점과 개정방안 -", 비교사법 제10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2003)
- 이혜리, "계약교섭결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2012)
- 정경영, "자금이체제도의 법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1994)
- 정경영, "착오에 의한 자금이체거래와 지급인의 권리", 성균관법학 제21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2009)
- 정대익, "타인의 계좌 또는 지정하지 않는 수취인 계좌로 이루어진 지급이체의 법률문제 - 대구지법 판결(2004. 1. 28. 선고 2003나10191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비교사법 제11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2004) / 정대익(2004A)
- 정대익, "지급이체의 법률관계 -원인관계를 중심으로 한 독일법의 비교법적 분석 -", 상사판례연구 제17집, 한국상사판례학회(2004) / 정대익(2004B)
- 정태륜, "전용물소권에 관한 일고찰", 비교사법 제9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2002)

제철웅,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고시계」 제52권 제3호, 국가고시학회 (2007)

천진호, "타인 명의 예금 인출행위의 형사책임", 저스티스 제82호, 한국법학원(2004)

최재혁, "착오 자금이체(착오송금)와 수취은행의 상계권행사(대상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재판실무연구 제4권, 수원지방법원(2011)

최준규, "금전의 이동과 물권적 청구권", 법조 제638호, 법조협회(2009)

기타 자료

금융위원회 1918. 9. 18. 보도자료 "착오송금 현장 간담회 개최 및 구제방안 발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의 소리」 2015-01호

[해외 문헌]

일본

四宮和夫, 「事務管理. 不当利得. 不法行為(上卷)」, 青林書院(1981)

我妻栄, 「債權各論 下卷一(民法講義 V4)」, 岩波書店(1972)

岡本雅弘, "誤振込と被任向銀行による相殺(下)", 「金融法務事情」 1752号, 金融財政事情研究会(2005)

小笠原浄二 外, "座談会-誤振込と預金の成否をめぐる諸問題", 「金融法務事情」 1455号, 金融財政事情研究会(1996)

鎌形史子, "振込依頼人が振込先を誤つて振込依頼をし, これに基づき受取人の預金口座に誤振込金が入金記帳された場合に, 振込依頼人か, 被任向銀行に対し, 振込金相当額の不当利得返還請求をすることの可否", 「銀行法務21」 649号, 経済法令研究会(2005)

木南敦, "誤った振込と預金の成否", 「金融法務事情」 1304号, 金融去来事情研究会(1991)

栗原由紀子, "誤振込された預金と受取人に対する貸付債権を相殺した被任向銀行が, 振込依頼人に対して不当利得返還義務を負うとされた事例", 「銀行法務21」 662号, 民法判例研究会(2006)

四宮和夫, "物権的価値返還請求権について - 金銭の物権法的一側面", 「私法学の新たな展開」(我妻栄 追悼 論文集), 有斐閣(1975)

- 柴崎暁, “銀行が受取人の銀行口座に誤振込みされた預金について受取人に対する貸付債権をもつて相殺したことにより振込依頼人に対して誤振込金相当額の不当利得返還義務を負うとされた事例”, 「金融・商事判例」1241号, 経済法令研究会(2006)
- 関沢正彦, “組戻承諾が取れない場合の被任向銀行の誤振込金による預金相殺と不当利得”, 「金融法務事情」1755号, 金融財政事情研究会(2005)
- 藤田祥子, “誤振込された預金の被任向銀行による貸付債権との相殺”, 「法学研究」79巻10号, 慶応義塾大学(2006)
- 本多正樹, “誤振込と被任向銀行の相殺(下)”, 「金融法務事情」1734号,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05B)
- 牧山市治, “金融判例研究会報告-銀行による貸付債権と誤振込金にかかる預金との相殺が不当利得となるとされた事例”, 「金融法務事情」1770号, 金融財政事情研究会(2006)
- 牧山市治, “振込の原因となる法律関係が存在しない場合における振込にかかる普通預金契約の成否”, 「金融法務事情」1467号, 金融財政事情研究会(1996)
- 松岡久和, “銀行が受取人の銀行口座に誤振込された預金について受取人に対する貸付債権をもつて相殺することは正義・公平の観念に照らして無効とされた事例”, 「金融法務事情」1748号, 金融財政事情研究会(2005)
- 松岡久和, “受取人を誤記した誤振込による預金契約の成否”, 「ジュリスト」1113号, 有斐閣(1997)
- 松本貞夫=小笠原浄二=三田悦男, “振込規定ひな型の逐条解説”, 「金融法務事情」1410号, 金融財政事情研究会(1995)
- 森田宏樹, “振込取引の法的構造”, 「金融取引と民法法理」(中田裕康, 道垣内弘人 編), 有斐閣(2000)
- 山田誠一, “誤つた資金移動取引と不当利得(下)”, 「金融法務事情」1325号, 金融財政事情研究会(1992)

독일

- Bydlinski, Peter, *Zivilrechtsfragen bei Zahlung auf ein nicht autorisiertes Gläubigerkonto*, Österreichisches Bankarchiv, 1995
- Canaris, Claus-Wilhelm, *Bankvertragsrecht*(3. Aufl.), 1988
- Flume, Werner, *Zum Bereicherungsausgleich bei Zahlungen in Drei-Positionen -Verhältnissen*,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1991

- Häuser, Franz, *Zurückweisungsrecht gegen eine "aufgedrängte Gutschrift" nur bei fehlendem Valutaverhältnis - Eine Besprechung des Urteils des Bundesgerichtshofs vom 6. 12. 1994*,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1995
- Häuser, Franz in : *Münchener Kommentar zum Handelsgesetzbuch(2. Aufl.)*, 2009
- Köndgen, Johannes, *Die Entwicklung des privaten Bankrechts in den Jahren 1992-199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1996
- Kupisch, Berthold, *Die Versionsklage : Ihre Entwicklung von der gemeinrechtlichen Theorie des 17. Jahrhunderts bis zum Österreichischen Allgemeinen Bürgerlichen Gesetzbuch*, 1965
- Larenz, Karl und Claus Wilhelm Canaris, Lehrbuch des Schuldrechts, Band 2, Besonderer Teil(13. Aufl.), 1994
- Larenz, Karl. Allgemeiner Teil des Deutschen Bürgerlichen Rechts(6. Aufl.), 1983
- Lieb, Manfred in :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 Band. 5. Schuldrecht, Besonderer Teil III : §§ 705-853(4. Aufl.), 2004
- Meder, Stephan, Stillschweigende Annahme der Kontogutschrift und Verwahrungsvorbehalt, 1999.
- Medicus, Dieter, Bürgerliches Recht(18.Aufl.), 1999
- Pilz, Hubert. Richterliche Vertragsergänzung und Vertragesebänderung, Diss. 1963
- Schlegelberger, Wolfgang Hefermehl, Handelsgesetzbuch(5. Aufl), Band 4, 1976
- Schwintowski, Hans-Peter and Frank A. Schäfer, Bankrecht, Commercial Banking - Investment Banking, 1997
- Staudinger, Julius von - Lorenz, Werner, Kommentar zum BGB 2. Buch, Recht der Schuldverhältnis, §§812-822, 1999
- Zweigert, Konrad und Hein Kötz, Einführung in die Rechtsvergleichung, Band 2(2. Aufl), 1984

미국

The American Law Institute(ALI),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 UCC Official Text(11th). West Publishing Co, 1989

【제2주제】

● ● ●

토 론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정영수

연세대학교 교수

착오송금인의 보호방안

토론문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표문은 의도하지 않은 수취인에 대해서 자금을 이체한 지급인(i.e. 착오송금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리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이 보편화되면서 착오송금의 발생 빈도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최근 감독당국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착오송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호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방안은 공평의 관념에 기한 일종의 정책적, 입법적 해결방안에 불과하므로 발표문에서와 같이 관련 당사자들의 사법적 법률관계에 따른 완결적인 법리를 만들 필요성이 여전히 큼니다.

착오송금시 수취인의 송금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생겨나더라도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송금인 보호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발표문의 논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판례법리는 상계권의 남용을 인정함으로써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고 반환을 승낙하는 이상 송금인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상계권 남용 법리는 어디까지나 상계적상을 인정한 다음 수취인의 주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상계의 효력을 부정할지 정하는 것이라, 수취인의 예금채권 성부를 좌우하는 입금기장 거절권을 인정하는 것이 송금인의 두터운 보호에는 유리하다는 발표문의 논지에 공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 입금기장 거절권의 경우 그 긍정설과 부정설이 결정적으로 나뉘는 지점, 즉 수취은행과 수취은행의 계약 내용으로 명문화 되지 않는 않았지만 강요된 부당이득 상태 발생시에는 수취인이 이를 수취하지 않을 권리를 '해석상' 도출할 수 있다는 결론을 일괄적으로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주로 약관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예금거래계약에서 송금인이라는 제3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계좌개설인(수취인)이 계좌개설은행(수취은행)에 대해서 갖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권리관계를 명문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이러한 불명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금기장 거절권을 명문화하거나 약관의 내용으로 명시하는 식의 해결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현재 예금계약의 해석을 통해서도 도출될 수 있는 법리로 생각하시는지요.

이와 관련해서, 착오송금인 보호를 위해서는 아예 수취인에게 송금인에 대한 신탁의 수탁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준·한민, 금융거래와 법, 제3판, 박영사 (2023), 46-47쪽]. 이러한 견해에 따르더라도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신탁법상 신탁의 설정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수취인은 수취은행과의 관계에서는 예금의 소유자에 준하는 지위가 있지만, 그것을 소비할 경우에는 횡령의 죄책을 지므로 사실상 수탁자의 지위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신탁관계로 구성할 경우에는 상계의 제한에 대해서도 신탁법 제25조 제1항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고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한 채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상계를 하고자 하는 제3자가 선의, 무과실일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취인이 수탁자에 준하여 송금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입금기장거절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예금 계약의 해석상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의 착오이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 법적인 해결 방안에 관해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 9789 판결은 비트코인의 착오이체에 대하여 배임죄 성립은 부정하면서, “가상자산을 이에 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원인 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민사법적 관점에서 이러한 경우에도 화폐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등에 관한 쟁점이 추가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착오 송금인의 보호 방안

토론

정영수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예금보호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 지원대상은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도 가능)
- 대부분(62%)이 100만원 미만
- 1천만원 초과는 0.9%
-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65.1%

착오송금의 원인

-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가 65.9%,
- 저장되어 있는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성명으로 잘못 보낸 경우가 16.4%,
- 최근·자주 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한 경우가 14.3%,
- 법인의 경우, 퇴사자·과거 거래처 등으로 잘못 보낸 경우가 법인 착오송금 중 34.4%로 개인에 비해 수취인 혼동의 비중이 높음

2

주요 내용

-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 안내 비용, 지급 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 자진반환 95%/지급명령 4%
- 자진반환/지급명령 지급률
 - 10만원 86%/82%,
 - 100만원 95%/91%,
 - 1,000만원 96%/92%로 추정
- 자진반환/지급명령 평균 소요기간
 - 41.5일/148.5일

➢ 출처: [보도자료 20230817] 예금보험공사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2년간의 성과

< <http://www.kdic.or.kr> >

3

송금의뢰인의 지급명령 신청

- 연락처 송금 등 수취인 정보(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앞에서 본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송금의뢰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수취인(상대방)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 만약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면, 다른 분쟁과 달리 쟁점이 될만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통해 소송으로 이행될 가능성은 적은 편이라고 할 수도 있음

4

상대방 특징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필요

- 원고→법원: 소장 및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 법원→수취은행: 제출명령
- 수취은행→법원: 금융거래정보 회신
- 원고: 수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확인 후 연락
- 수취인이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동의하면 해결
 - ✓은행 고객센터의 연락을 받아도 보이스피싱이나 광고전화로 보고 수신 거절하여 반환 동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함

5

송금의뢰인의 주장·증명책임

-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6

부동산 매매대금 과지급

- 가계약금 5,000,000원이 아니라, 50,000,000원 송금(입출금 거래내역)
- 원고의 회계 담당 직원의 실수
- 피고의 자금담당 직원에게 즉시 통보
-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의 자금담당 직원에게 위 과지급 금원을 반환하겠다고 함(통화녹음)
-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 않음
- 청구인용(무변론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3가단240465 판결

7

수취인을 잘못 지정

- 원고의 직원이 65,680,000원을 B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A의 예금계좌에 잘못 송금
- 원고는 피고 은행에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
- A가 피고 은행에 출석하여 금원의 반환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고 은행에 작성·제출
- 원고는 피고 은행에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
- 원고는 A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중 위 금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고, A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위 판결정보에 기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후 위 전부명령은 피고에게 송달
- 그런데 피고 은행이 위 착오송금 전에 A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
- 원고는 피고 은행을 상대로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
-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칙 위반 또는 상계권 남용에 해당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
 -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8

수취은행의 상계 허용

-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20,682,920원)을 주장하더라도,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수취은행의 상계 허용(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다256481 판결)
- 착오송금(216,596,908원) 전 이미 수취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추심명령 등이 내려져 있었고, '압류채권의 표시'에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던 사안에서 수취은행의 상계 허용(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9

수취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 ✓ 원고가 착오로 수취인을 잘못 지정하여 이체하였고, 피고도 이에 대한 권리를 거부하고 있으며, 추심채권자인 피고 외에는 달리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없음

10

수취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에서 송금인의 제3자 이의의 소 허용 여부

- 제3자이의의 소는 등기청구권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을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참조)
- 강제집행이 소정의 외관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이상 채무자의 책임재산 이외의 물건에 대하여 집행행위가 있더라도 당연히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부당한 집행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은 제3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임
- 제3자이의의 소에서 법원은 제3자의 소유권에 대한 존부를 반드시 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에게 집행이의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함(대법원 1959. 11. 12. 선고 4292민상296 판결 등 참조)
- 착오송금인으로서 수취인에 대한 착오로 제3자 앞으로 송금하였음이 명백하고, 수취인 또한 착오로 인한 송금을 인정하여 계좌 이체된 금원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이를 다른 예금채권과 혼일하지 아니하여 계좌 이체된 금원에 대한 특정이 유지되는 때에, 수취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이해관계를 맺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수취인의 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잘못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는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채권채무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집행을 불허하는 것이 착오송금인의 보호에 적합하다고 생각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가단161254 판결 참조)

11

질문

- 발표자께서는 입금기장거절권의 법리를 도입하여 착오송금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 수취인 보호를 위한 이론을 착오송금인의 보호방안으로 활용하기에 어색한 것은 아닌지요?
- 그 행사 여부가 수취인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보면,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금기장거절권의 행사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요?

12

감사합니다!

13

【제3주제】



EU집행위원회의
CBDC법(디지털유로규정)안

천창민

한국과학기술대 교수



유럽연합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규제: EU집행위원회 DER안상의 주요내용과 합의

2023. 10. 13(금)

천 창 민(교수, 법학박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GTM전공)

- 1 논의의 목적과 범위
- 2 디지털유로규정(DER)안 개관
- 3 디지털유로규정(DER)안의 주요내용
- 4 정책적 합의

1

논의의 목적과 범위

논의의 목적과 범위

-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 경제의 각 영역에서 디지털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지급결제분야에서 현금을 대체한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비대면거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음
 - ▶ 지급결제 분야의 비대면거래 증가는 상대적으로 현금(지폐, 동전) 형태로만 존재하던 법화의 활용성을 크게 약화시켰고, 이는 통화당국으로 하여금 법화의 한 형태인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의 창설 필요성을 각인시키게 되었음
 - ▶ 한국은행(2023.4)이 공개한 다음의 간편결제 관련 통계는 코로나 시기 우리나라에서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비대면거래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현금의 이용비중이 줄어들어 이른바, "현금없는 사회"로 꾸준히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1-8. 지급수단별 이용비중(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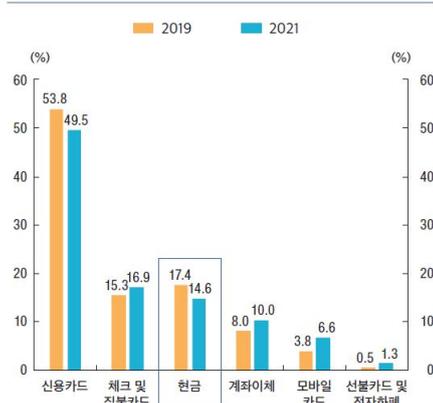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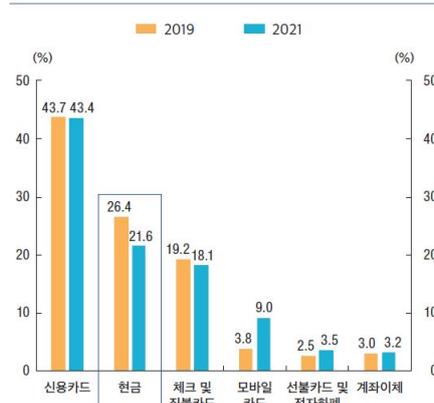


그림 1-9. 지급수단별 이용비중(건수 기준)



논의의 목적 및 범위

한편, EU집행위원회는 2023. 6. 28 유럽판 CBDC규제인 디지털유로규정(Digital Euro Regulation: DER)안을 공개하였음

이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이 한국판 CBDC를 설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정비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이에, 이번 논의에서는 EU집행위원회가 제시한 DER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판 CBDC의 제도화 시 어떤 쟁점을 입법화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함의를 찾아보고자 함

- 이상의 논의 범위를 염두에 두고, 아래에서는
 - 우선, DER안을 개관하고,
 - ▶ 다음으로 DER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한 후 관련 함의를 도출하기로 함

2

디지털유로규정(DER)안 개관

DER안의 의의

DER(Digital Euro Regulation)안은 유럽판 CBDC인 '디지털유로'의 창설과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최초의 규범적 시도이며, 강제통용력의 부여를 통한 법화로서의 지위를 규정하는 등 다양한 법적 장치를 두고 있음

DER안 제1조는 유로화를 기술변화에 적응시키고 단일통화로서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유로를 창설하고, 특히 디지털유로의 법적 지위, 유통, 사용 및 필수적인 기술적 특징을 규정한다고 그 목적을 규정

법화(legal tender)의 개념이 디지털유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DER안도 법화와 관련한 쟁점을 가장 먼저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상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강제통용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금과 달리 디지털유로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보다 확대 규정하여 법적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음

○ EU집행위원회는 '단일통화패키지' 법안으로서 DER안의 공간과 더불어 지폐와 동전 즉, 현금의 법화로서의 지위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규정(유로 지폐 및 동전의 법화 지위에 관한 규정안 (COM (2023) 364 최종): 현금유로법화규정)을 동시에 공간하여 유로화의 법적 지위와 디지털유로의 사용과 관련한 법적 확실성을 도모하고 있음

- › 현금법화규정은 그간 유로화에 대해 법률적인 근거 없이 2010년 집행위원회의 권고안에 의하던 것을 ECJ의 2021년 1월 Häring판결을 계기로 동 판결의 내용을 전격 현금유로에 적용하여 유로화의 법화로서의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임
 - 후술하는 바와 같이, DER안에서 규정하는 디지털유로의 법화로서의 지위도 이와 동일한 내용
 - 참고로, 디지털유로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집행위원회는 지급결제와 관련한 PSD3 개정안과 PSR 및 오픈파이낸스와 관련한 FIDAR을 6.28에 같이 공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유로의 도입 시 기대효과와 한계(문제점)

기대효과

- 역내 주권통화로서의 지위 및 역외 통화패권 제고
- 디지털 거래를 통한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 활성화 및 금융포용성 제공
- 중앙은행이 보장하는 화폐 안정성

한계(문제점)

- 디지털 소외문제
- 개인정보 및 보안 문제
- '디지털런' 문제

자료: 이소희/김호(2022)의 서술을 요약

ECB의 디지털유로 필요성 근거와 그에 대한 반론

ECB는 디지털유로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논거로 다음을 주장(Accenture(2013))

건실성(integrity): 이는 주로 현금이 사라진 경우에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중앙은행 화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음

회복력: 이는 민간의 대체지급결제수단, 특히 Meta의 Diem과 같은 스테이블코인 확산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보임

통합: 디지털유로는 범유럽 지급결제 기본체계/framework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임

다양화: 디지털유로는 대체지급결제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임

신뢰: 디지털유로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임

- 이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경제성이 약해 보인다는 평가가 있다고 함

○ ECB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여전히 설득력이 부족한데, 이는 대부분의 주장이 방어적이고 혁신에 관해 충분히 강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음 (Accenture(2013))

Accenture는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이 "디지털유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의문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함

- ▶ 특히, 은행들은 디지털유로의 도입 시 디지털런으로 인해 은행의 예금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음

- 이를 고려하여 DER은 디지털유로의 보유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

8



연혁

2020년 10월	디지털유로에 관한 유로시스템 보고서 공간 (특징: 비거주자도 디지털유로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것)
2021년 04월	디지털유로에 관한 의견조회 공간 대중은 프라이버시의 필요성을 강조(다른 조사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강조가 덜한 것으로 나타남)
2021년 07월	2021년 10월에 시작될 초기 조사단계와 더불어 ECB가 디지털유로 프로젝트를 시작 설계는 사용자의 선호도와 기술적 조연을 감안할 것
2021년 10월	ECB와 유로지역의 중앙은행이 디지털유로 프로젝트의 조사단계를 론칭
2022년 03월	지급결제 선호에 관한 보고서 공간. 사용자는 온오프라인에서 보편적으로 허용되는 지급결제 방식을 원하며, 즉각적이고 접촉없는(contactless) P2P 지급결제를 선호
2022년 09월	ECB의 1차 진행상황보고서는 '개인별 수용 및 예금 전환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 <u>보유한도를 도입할 가능성 제시</u>
2022년 12월	ECB의 2차 진행상황보고서는 2티어 유통(배포) 모델을 강조하고 유로시스템이 모든 결제행위를 수행할 것임을 확인
2023년 04월	ECB의 3차 진행상황보고서 비은행 및 정부, 비거주자가 유로지역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의 접근권한을 소개하고, 제한사항이 도입될 것임을 확인
2023년 06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디지털유로의 창설을 위한 규정(regulation)을 제안
2023년 07월	디지털유로의 보상모델, 현 작업에 대한 갱신과 프로토타입 실험의 결과 등을 제시
2023년 10월	2026-27년에 디지털유로를 창설하기 위한 개발 및 구축 단계를 시작하기로 결정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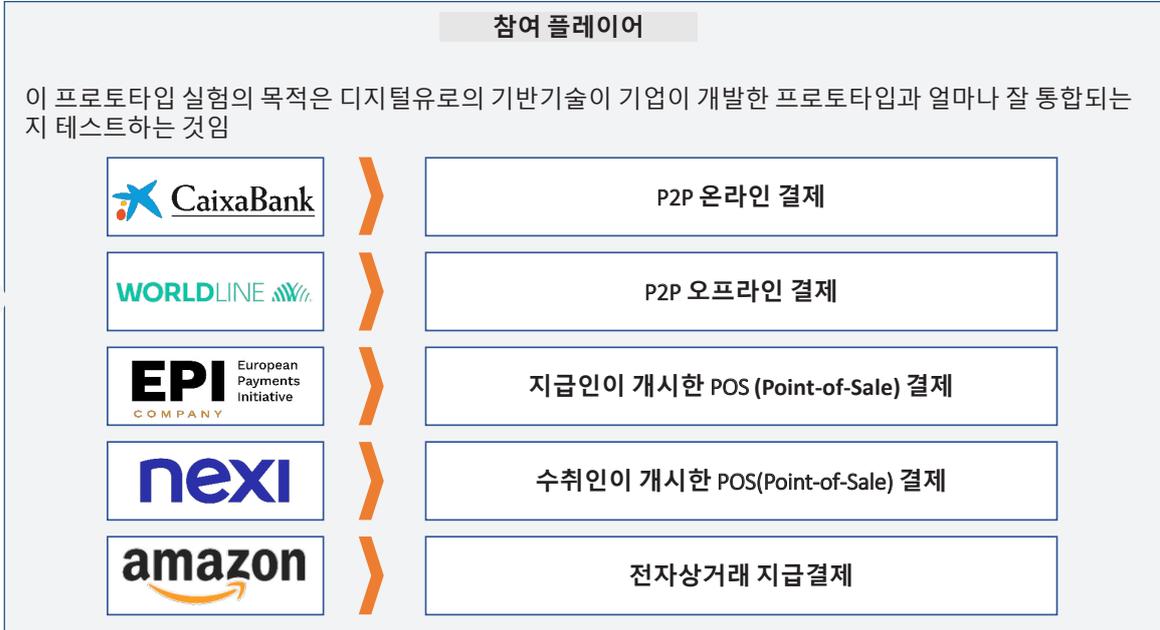
자료: Accenture(2023)를 기초로 업데이트 및 수정

9



조사단계에 관계된 플레이어

- 유럽중앙은행은 5개의 관련 기업과 협력하여 디지털유로의 잠재적 사용례를 개발할 예정



자료: Accenture(2023)

10



디지털유로의 정의와 의미

디지털유로란 **현금(지폐와 동전)이 아닌 디지털 형태의 유로화**로서 ECB가 그 발행의 승인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며, ECB와 회원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EU의 단일통화를 말함(제4조)

즉, 디지털유로는 형식만 다를 뿐 ECB와 유로존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 형태의 유로화와 정확히 동일한 **디지털 형태를 취한 유럽연합의 단일 법정화폐**를 말함

따라서 디지털유로는 현금과 동일하게 유로시스템의 직접 부채로 계상됨

디지털유로는 **현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것에 불과함(Cash Plus 옵션)**

DER안은 디지털유로를 **소매금융에서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

디지털유로는 디지털 형식으로 일반 대중이 소매거래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안됨

디지털유로는 2티어(복층) 시스템을 중심으로 구축될 예정이므로, 여전히 은행이 현금의 유통과 유사하게 디지털유로의 가장 핵심적인 중개기관이 될 것으로 전망

> 당연히, 디지털시대에 비은행 지급결제서비스기관(PSP)도 새로운 중요 중개기관임

- 디지털유로는 디지털토큰을 기반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함

EU집행위원회의 영양평가보고서(10면)에 따르면, 디지털유로는 기술중립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암호자산과 같이 반드시 DLT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

11



3

디지털유로규정(DER)안의 주요내용

규정의 구성

DER(Digital Euro Regulation)안 총 10장, 4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문 수 자체는 42개로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나 개개의 조문이 담고 있는 규범적 내용은 많으며, 위임입법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도 몇몇 존재

- DER안에서 디지털유로의 내용과 관련한 핵심적인 규정은 법화와, 유통, 사용, 기술특징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3, 4, 5, 7, 8장이라고 할 수 있음

- › 제1조 목적 규정도 DER의 목적이 디지털유로의 창설과 디지털유로의 법화지위, 유통, 사용 및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규정

제1장 목적과 정의 (§§1-2)	제2장 디지털유로의 창설과 발행 (§§3-6)
제3장 법화(legal tender) (§§7-12)	제4장 유통(배포; distribution) (§§13-14)
제5장 가치저장수단 및 지급수단으로서의 디지털유로의 사용 (§§15-17)	제6장 유로지역 밖에서의 디지털유로의 유통 (§§18-21)
제7장 기술적 특징 (§§22-33)	제8장 개인정보(privacy) 및 데이터보호 (§§34-36)
제9장 자금세탁방지 (§37)	제10장 최종규정 (§§38-42)

DER안상 주요개념(제2조)

디지털유로	사람 및 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단일통화를 말함
디지털유로지급거래	지급인과 수취인 간의 모든 기초 의무와 관계없이 지급인 또는 그를 대신하여 또는 수취인이 개시한 디지털유로의 제시(placing), 이전(transferring) 또는 인출 행위를 말함
디지털유로사용자	지급인, 수취인 또는 모두의 자격으로 디지털유로지급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함
디지털유로지급계좌	디지털유로결제인프라 또는 오프라인 디지털유로 기기에 기록된 디지털유로에 접근하고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서 기술 및 데이터 구조에 관계없이 디지털유로지급거래를 개시하거나 수신하기 위해 디지털유로사용자가 하나 또는 복수의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에 보유한 계좌를 말함
디지털유로지급결제서비스	규정안 부속서 1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업행위를 말함
지급인	디지털유로지급계좌를 보유하고 그 디지털유로지급계좌로부터 지급결제주문을 허용하는 모든 사용자
수취인	디지털유로지급거래의 대상인 자금의 의도된 수취자(recipient)를 말함
편당	디지털유로사용자가 현금이나 그 밖의 자금과 교환하여 디지털유로를 취득하는 절차로서, ECB 또는 회원국 중앙은행이 그 디지털유로사용자에 대해 직접적인 채무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함
디편당	디지털유로사용자가 디지털유로를 현금이나 그 밖의 자금으로 교환하는 과정을 말함
디지털유로결제인프라	유로시스템이 채택한 디지털유로의 결제인프라를 말함
가맹점서비스수수료	디지털유로지급거래를 취득할 때 수취인이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전단(front-end)서비스	후단(back-end) 솔루션 및 그 밖의 전단 서비스와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디지털유로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를 말함
지원서비스제공자	디지털유로지급거래의 원활한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유로를 유통하는 모든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 이상의 법인으로, 유럽중앙은행이 지정한 법인을 말함

14



디지털유로의 법화 지위 1

DER안 제3장(제7조~제12조)은 디지털유로가 단일 법화로서 기능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 요소인 디지털유로의 법화 지위를 규정함

디지털유로의 법화 지위는 (1) 지급채무를 이행하는 권한과 함께 (2) 완전한 액면가치로 (3) 디지털유로로 강제수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제7조 제2항)

- 법화지위와 관련한 위 세 가지 요소는 2021년 1월 26일에 내려진 ECJ의 Häring 판결을 반영한 것임

디지털유로의 강제수락에 따라 수취인은 해당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지급 시 제공된 디지털유로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동조 제3항)

- 즉, DER은 디지털유로의 강제수락은 법화로서의 지위에 강제통용력을 같이 부여하는 방식을 취함

법화 지위의 영토적 적용범위(제8조)

(오프라인지급) 디지털유로는 유로지역 내에서 발생한 유로 표시 금전채무의 오프라인 지급에 대해 법화의 지위를 가짐

(온라인지급) 디지털유로는 유로지역에 거주하거나 설립된 수취인에게 유로로 표시된 금전채무를 온라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법화의 지위를 가짐

○ 디지털유로의 수취 의무(강제통용력)에 대한 예외: 디지털유로의 거부가 가능한 경우(제9조)

(1) 수취인이 1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거나, (2) 연간 매출액 또는 연간 대차대조표 총액이 2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 또는 (3) (EU) 2021/695 제 2조 (18)항에서 정의하는 비영리법인인 경우로서 **비교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 선의로 거부하고, 그러한 거부가 수취인이 통제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합법적이고 일시적인 근거에 기초하는 경우

- 이 목적상, 특정 사례에서 합법적이고 일시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거부가 비례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취인에게 있음

수취인이 순전히 개인적 또는 가정 활동의 과정에서 행위하는 사람인 경우

지급 전에 수취인이 지급인과 제10조에 따라 다른 지급수단에 대해 동의한 경우

15



디지털유로의 법화 지위 2

디지털유로의 협의에 의한 수취 거부와 허용과 상업적 관행에 의한 배제 불허(제10조)

디지털유로를 수락할 의무가 있는 수취인은 개별적으로 협의되지 않은 편면적(unilateral) 계약 조건이나 유로 표시 금전채무의 지급인이 디지털유로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목적 또는 효과가 있는 상업적 관행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그러한 편면적 계약 조건이나 상업적 관행은 지급인을 구속하지 못함

계약조건이 사전에 작성되어 지급인이 계약조건の内容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우, 특히 미리 작성된 표준계약의 맥락에서 계약조건(약관)은 개별적으로 협상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통화법 성격의 추가적인 예외: 수취거부 가능 상황(제11조)

EU집행위원회는 ECB와 협의하여 위임입법으로 통화법적 성격을 감안하여 강제수락의무에 대한 추가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음

이러한 예외는 공익적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고 그 목적에 비례해야 하며, 디지털유로의 법정 화폐 지위의 효력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금전채무의 지급을 위한 다른 수단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함

○ 디지털유로와 현금유로(지폐 및 동전) 간의 상호작용(제12조)

디지털유로는 유로 지폐 및 동전과 액면금액으로 교환할 수 있음

- › 유로 표시 금전채무의 수취인은 현금유로법화규정에 따라 현금유로의 지급을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DER 조항에 따라 디지털유로로 지급을 수락해야 함

DER 및 현금유로법화규정에 따라 디지털유로 및 현금유로의 수락이 강제되는 경우, 지급인은 지급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16



디지털유로의 유통: PSP의 디지털유로지급결제서비스

DER의 유통은 PSD2에서 규정하는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PSP)를 통하도록 설계되어 그 유통은 디지털유로지급결제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짐

지급결제서비스의 목적상, 디지털유로사용자는 PSP와만 계약관계를 체결하고 ECB나 회원국 중앙은행과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맺지 않음(제13조 제6항)

부속서 I은 디지털유로지급결제서비스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고 규정

- (1) 제16조에 따라 ECB가 설정한 가능한 사용제한을 해하지 아니하고, 디지털유로사용자가 디지털유로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2) 디지털유로사용자가 디지털유로지급거래를 개시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유로사용자에게 디지털유로지급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것;
 - (3) 디지털유로사용자의 디지털유로지급계좌를 관리하는 것;
 - (4) 제13조에 따른 펀딩 및 디펀딩 업무를 수행하는 것; 및
- › (4) 부속서 II에 따른 기본적 디지털유로지급결제서비스 외에 추가적 디지털유로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부속서 II는 다음의 7가지 업무를 기본적 디지털유로지급결제서비스로 규정

- (a) 디지털유로지급계좌의 개설, 보유 및 폐쇄;
- (b) 잔액 및 거래 상담;
- (c) 비디지털유로지급계좌로부터의 비자동화된 펀딩 및 디펀딩;
- (d) 현금으로부터/으로의 펀딩 및 디펀딩;
- (e) 상시주문 이외의 조건부디지털유로지급거래를 제외하고, 다음 사용례에서의 전자지급결제수단에 의한 디지털유로지급거래의 개시 및 접수:
 - 개인(person) 간 디지털유로지급거래
 - 대면거래 및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상호작용하는 디지털유로지급거래
 - 정부 대 개인(person) 및 개인(person) 대 정부의 디지털유로지급거래
- (f)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디지털유로지급거래 및
- (g) 제(e)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은 디지털유로지급거래의 실행을 위한 최소 하나 이상의 전자지급결제수단의 제공

17



디지털유로의 유통: 지급결제서비스의 대상자

PSP가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b)와 (c)의 경우 ECB는 디지털유로에 대한 접근과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이러한 기간은 사용자의 거주 또는 방문 상태와 관련하여 결정됨(§13)

- (a) 유로존 회원국 거주자 및 설립법인
 - 여기서 거주자는 EU 시민과 EU법 또는 국내법에 따라 거주권의 혜택을 받는 제3국 국민을 모두 포함
 - (b) 유로존 회원국에 거주하거나 설립 당시 디지털유로 계좌를 개설했지만 더 이상 해당 회원국에 거주하거나 설립하지 않은 사람 및 법인
 - (c) 방문자
 - (d) 비유로존 회원국 거주자 및 설립법인
 - (e) 제19조 및 제20조의 유보하에, EU와 통화협정을 체결한 영토를 한 제3국 거주자 및 설립법인
- 참고로, PSD2 개정안 즉, PSD3은 자금(funds)의 개념에 디지털유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DER안 제5조 제3항은 동지침의 규정이 디지털유로지급거래에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음
- PSD3안 제2조 제23항은 자금을 "소매용으로 발행된 중앙은행화폐, 장부화폐(scriptural money) 및 전자화폐"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
- ▶ 개정전 PSD2 제4조 제25항은 자금을 "지폐 및 동전, 장부화폐 및 전자화폐"를 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음
- 따라서, PSP는 디지털유로도 동일한 자금으로 취급하여 지급결제서비스 대상자에게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 해야 하는 것임

18



디지털유로의 유통: 펀딩 및 디펀딩 기능 등(§13③④..)

PSP는 디지털유로사용자에게 다음의 펀딩 및 디펀딩 기능을 제공해야 함(제3항)

- 비디지털유로지급계좌를 통해 펀딩 및 디펀딩이 이루어지는 경우: 언제든지 지속적 기준으로 제공
- 현금유로를 통해 펀딩 및 디펀딩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가 현금서비스를 제공할 때

디지털유로의 보유한도 제한 목적상, PSD2에서 규정하는 지급결제서비스용계좌(account servicing payment services)를 제공하는 PSP는 디지털유로사용자에게 다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제4항)

- (a) 온라인 디지털유로지급거래를 접수한 경우, ECB가 채택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디지털유로를 비디지털유로지급계좌로 자동으로 디펀딩될 수 있도록 할 것
 - Accenture(2023)에 따르면, 3천유로의 한도가 종종 제안된 반면, 영국은 1만~2만파운드의 한도가 논의된 바 있다고 함
 - (b) 거래금액이 보유자의 디지털유로 보유액을 초과하는 경우, 온라인 디지털유로지급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 ▶ (a) 및 (b)의 목적상 그리고 디지털유로사용자의 사전 승인에 따라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는 각 디지털유로지급계좌를 디지털유로사용자가 지정한 단일 비디지털유로지급계좌로 연결해야 하며, 디지털유로사용자는 지정된 디지털유로지급계좌가 있는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가 아닌 다른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에 지정된 비디지털유로지급계좌를 보유할 수 있음
- 디지털유로사용자는 동일하거나 다른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에 하나 또는 복수의 디지털유로지급계좌를 보유할 수 있으며(제7항),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는 디지털유로 지급결제서비스의 특정 기능 및 유통 조건에 대한 정보를 대중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함(제8항)

19



유로존 회원국에서의 디지털유로에 대한 접근(\$14)

- 유로존 회원국에서 사람에 대한 디지털유로의 유통 목적상,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은 자신의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부속서 II에서 규정하는 기본적 디지털유로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제1항)

이는 유로존에서 은행의 자연인에 대한 기본적 디지털유로지급서비스 제공의무를 규정하는 것임

유로존 회원국은 다음의 자에 대해서는 PSD2에서 규정하는 회원국이나 회원국의 지역 당국 또는 우체국지로기관이 기본적 디지털유로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정하여야 함(제3항)

(a) 비디지털유로지급계좌를 보유하지 않거나 보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유로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기본적 디지털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b) 장애인, 기능적 제한이 있거나 디지털 기술이 제한된 사람 및 고령자에게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대면으로 기본적 디지털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포용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PSP는 장애인, 기능적 제한이 있거나 디지털 기술이 제한된 사람, 고령자에게 대해 디지털포용지원을 제공해야 함(제4항)

- ▶ 위 (b)호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디지털포용지원은 디지털유로계좌의 개설(onboarding) 및 모든 기본적 디지털유로서비스의 사용하기 위한 전용 지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20



가치저장 및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DE의 사용 1

DER안 제5장은 가치저장 및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디지털유로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제한 및 수수료제정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제15조)

기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유로의 사용제한은 은행의 신용공급이라는 중개기능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임(서문32)

제16조는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디지털유로 사용에 대한 제한으로서, ECB가 디지털유로의 사용을 제한하는 문건을 개발하도록 규정하며,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PSP는 디지털유로지급계좌에 이러한 한도를 적용해야 함

디지털유로지급계좌의 보유한도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보유 모두에 적용됨(제4항제1문)

디지털유로사용자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디지털유로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온라인 디지털유로에 적용되는 한도는 ECB가 결정한 전체 한도에서 디지털유로사용자가 설정한 오프라인 디지털유로의 보유 한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제4항제2문)

오프라인 보유한도는 디지털유로사용자가 0과 제37조에 따라 설정된 보유 한도 사이의 임의 금액으로 설정됨 (제4항제3문)

유로존 이외에 거주하는 사람 및 설립법인 이외의 자 즉, 유로존을 떠난 거주자 및 설립법인, 방문자 및 비유로지역과 제3국 거주자 및 설립법인은 유로존 거주자 및 설립법인보다 높지 않은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디지털유로의 사용에 관한 제한(한도)을 받음(제5항)

- ▶ 이는 유로존이 아니어서 실제 디지털유로를 사용할 실익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유로존거주자보다 낮은 보유 한도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보임

- 디지털유로사용자가 복수의 디지털유로지급계좌를 보유한 경우, 디지털유로사용자는 디지털유로지급계좌를 보유한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에 개별 보유 한도가 다른 디지털유로지급계좌 간에 어떻게 배정되는가를 지정해야 함(제6항)

또한, 디지털유로지급계좌를 두 명 이상의 디지털유로사용자가 보유하는 경우(공동보유), 디지털유로지급계좌의 보유 한도는 해당 사용자에 배정된 개별 보유 한도의 합계로 산정함(제7항)

이 규정의 기본체계 내에서 디지털유로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제8항)

이는 현금을 보유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며, 디지털유로가 주로 지급결제수단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반면 가치저장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임(서문 77)

21



가치저장 및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DE의 사용 2

제17조는 디지털유리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수수료 제한에 관한 규정임

다른 추가적 디지털유리지급결제서비스를 제외하고, 유로존에 거주하는 사람, 유로존을 떠난 사람, 방문자에 대한 기본적 디지털유리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음(제1항)

- 이는 기본적 디지털유리지급결제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게 될 경우 법화로서의 디지털유로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과 그 사용을 저해할 수 있고, 유로존에서 기초통화(monetary anchor)로서의 기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함(서문 40)
- 한편, 사람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반대해석상 법인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디지털유리지급거래와 관련된 모든 가맹점서비스수수료 또는 PSP 간 수수료는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가맹점서비스수수료 또는 PSP 간 수수료는 다음의 두 가지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제2항)

- (a) 합리적인 수익마진 포함, 디지털유로 지급결제의 제공을 위해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가 부담하는 관련 비용
- (b) 유사한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에 대해 요청된 수수료 또는 요금

ECB는 위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수료 금액의 목적과 관련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모니터링의 결과인 금액을 설명보고서와 함께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제3항~제5항)

동 수수료 금액의 모니터링 및 계산을 위해 ECB가 개발하는 방법론은 다음의 매개변수를 기반으로 함

- (a) 위 (a)에서 규정하는 PSP 간 수수료 및 가맹점서비스수수료 금액은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가 ECB에 보고한 바와 같이 해당 연도에 유로지역 전체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유로의 총 4분의 1을 차지하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가 디지털유리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한 관련 비용(합리적인 수익마진 포함)을 기초로 함
 - (b) 위 (a)에서 규정하는 최대 금액에 포함되는 합리적인 수익마진은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가 ECB에 보고한 바와 같이 해당 연도에 유로지역에서 유통된 디지털유로의 총 4분의 1에 해당하는 최저 수익마진을 부과하는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의 수익마진을 기준으로 산정함
 - (c) 위 (b)에서 규정하는 PSP 간 수수료 및 가맹점서비스수수료 금액은 유로지역에서 유사한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 그룹을 기준으로 함
- › 동 수수료 금액은 유로지역 전체에 걸쳐 균일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함

○ 가맹점서비스수수료는 PSP가 가맹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유일한 거래당 수수료임(제6항)

다만 PSP는 제13조 4항에서 규정하는 디지털유리지급거래를 포함하여 디지털유로의 펀딩 및 디펀딩에 대해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음(제7항)

기술적 특징: 디지털유로의 기능성

디지털유로의 접근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디지털유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함(§22)

디지털유로는 장애인, 기능적 제한이나 디지털기술이 제한된 자, 고령자 등을 위해 간단하고 다루기 쉬운 사용 및 서비스 기능이 있어야 함

- 또한, 지침 2019/882의 부속서 1에 명시된 접근성 요건을 준수하여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디지털유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와의 관계에서 디지털유로사용자는 비디지털유로지급계좌를 보유 또는 개설하거나 그 밖에 비디지털유로상품을 수락하도록 요구되어서는 안됨
- 각 디지털유리지급계좌에는 고유한 디지털유리지급계좌 번호가 있어야 함
- 각 디지털유리지급계좌는 디지털유로사용자가 지정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비디지털유리지급계좌에 연결될 수 있음
- 그러나 제13조 제4항(계좌서비스지급결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펀딩/디펀딩)의 목적상 각 디지털유리지급계좌는 하나의 비디지털유리지급계좌에만 연결될 수 있음
-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는 둘 이상의 디지털유로사용자가 디지털유리지급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 오프라인 및 온라인 디지털유리지급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규칙이 적용됨(§23)

디지털유로는 디지털유로의 최초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오프라인 디지털유리지급거래에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보유한 디지털유로는 디지털유로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간 액면금액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함
- 근접지급결제(대면지급결제)에서 디지털유리지급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수취인과 지급인은 디지털유리지급거래가 오프라인인지 온라인인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

디지털유로는 프로그래밍가능화폐(각 디지털화폐 단위의 완전한 대체가능성을 제한하는 내재적 로직을 가진 디지털화폐의 단위들: 예) 상품구매에서 상품의 유형에 제한 또는 사용가능 기간 제한이 있는 것)가 아니어야 하나, 조건부 디지털유리지급거래(지급인과 수취인의 합의로 사전에 정의된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래)는 가능하며, 이를 위해 ECB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24)

- (a) PSP가 상호운용 가능한 조건부 디지털유리지급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세부 조치, 규칙 및 표준의 채택
- (b) 자금 예약 포함 조건부 디지털유리지급거래의 실행에 필요한 디지털유로결제인프라의 기능 제공

기술적 특징: 유통방식

○ 제7장 제2절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는 디지털유로의 유통(배포)을 위한 다음의 규정을 두고 있음

전단서비스의 유럽디지털신원지갑과의 상호운용성 및 통합 관련 규정(제25조)

사적 디지털 지급수단과의 상호운용가능성 관련 규정(제26조)

분쟁메커니즘 관련 규정(제27조)

디지털유로에 접근하여 사용하기 위한 전단서비스 관련 규정(제28조)

- 디지털유로를 유통시키는 PSP는 디지털유로사용자가 디지털유로 지급결제서비스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유로사용자에게 PSP가 개발한 전단서비스와 ECB가 개발한 전단서비스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PSP가 디지털유로 전단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는 ECB의 서비스를 사용해야 함
- ECB가 제공하는 전단서비스는 고객 관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는 디지털유로 유통에 대한 PSP의 역할에 의해서만 제공되어야 하고, ECB는 ECB가 개발하고 PSP가 사용하는 전단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개인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없음

유럽연합 제재의 준수 관련 규정(제29조)

디지털유로지급거래의 결제(제30조: 방식과 결제완결성의 성취 시점)

- 온오프라인 디지털유로지급거래는 **즉시 결제**되어야 하며, 온라인 디지털유로지급거래의 최종 결제는 유로시스템이 승인한 디지털유로결제인프라에서 해당 디지털유로를 **지급인에게서 수취인으로 이전하는 것을 기록하는 시점**에 이루어지며, 오프라인 디지털유로지급거래의 최종 결제는 **지급인과 수취인의 로컬 저장장치에 있는 해당 디지털유로 보유 기록이 갱신되는 시점**에 이루어짐

디지털유로지급계좌의 다른 PSP로의 교체(제31조)

› 일반적 사기 탐지 및 예방 메커니즘(제32조)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모바일 기기への 접근

4

정책적 합의

DER안의 주요특징과 합의 1

- DER은 금융의 급속한 디지털전환과 사적 스테이블코인의 출현이나 중국과 같은 타국가의 CBDC 발행 관련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히 실무적인 사항까지 감안하여 마련된 세계 최초의 완성도 높은 CBDC 법안임

EU집행위원회는 디지털유로의 발행과 관련한 법안 마련의 동기로 (1) 급속히 디지털화 되어가는 디지털경제에서 현금으로만 지급결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과 (2) 제3국의 CBDC와 비유로표시 스테이블코인이 유로소매지급결제시장에서 유로의 역할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찾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민간 전자지급수단 발행인의 신용위험 시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급결제를 중앙은행화폐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중앙은행의 전자적 소매지급결제수단 추가적으로 제공할 유인이 있음

- 다만, 제도의 설계 시 우리나라는 금융포용 문제도 외국과는 다른 상황이고, 디지털화로 오히려 디지털소외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디지털유로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DER은 우선 디지털유로에 법화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이에 대해 강제통용력까지 부여하되, IT기술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경우 강제통용력에 대한 예외를 두어 유연한 규정을 도입한 것으로 평가됨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디지털유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두 법화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원화를 규정할 때 강제통용력을 가진 법화로서의 효력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예외적으로 강제통용(강제수락)이 거부되는 상황을 적절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아울러, 현금(지폐 및 동전)과 디지털원화 간의 액면가로 자유롭게 상시 전환될 수 있다는 점과 지급 시 지급인이 지급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26



DER안의 주요특징과 합의 2

DER은 PSD2에서 규정하는 PSP를 통해 디지털유로가 유통되는 2단계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 구조가 가장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

중앙은행이 모든 CBDC 보유자의 계좌 내지 지갑을 보유하여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용자들도 번거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디지털금융의 접점으로 사용되던 기관들을 그대로 디지털유로의 유통경로로 사용하여 유통의 촉진과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는 점에 시사점이 있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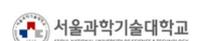
- 이 경우, 중앙은행이 '빅브라더'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임

아울러,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충분히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디지털유로가 현금의 다른 선택지로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디지털원 내지 은행의 관련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한 도구인 디지털유로의 보유제한 제도 또한 주목할만한 조치이나 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독자적인 경제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일반적 상황에서 다른 전자지급수단보다 도산위험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디지털원화로 런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관련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디지털원화 자체에는 현금과 같이 그 보유로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것이므로 평소 이를 상당량 보유할 필요는 높지 않을 것이나, 특정은행이나 금융회사가 도산에 임박한 경우 또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복수의 금융회사가 도산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 디지털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보다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됨



DER안의 주요특징과 합의 3

- DER이 디지털유로가 현금과 같이 가치저장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은행의 중개기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유한도를 두고, 대신 디지털유로의 폭넓은 사용을 위해 개인의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 부과를 금지 하는 조치를 취하는 점도 합의가 큼

보유제한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한도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은 실무적 관점에서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본적 지급결제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금과 동일하게 디지털유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지만, 은행 등과 같은 PSP가 부담할 수 있는 관련 비용을 어떻게 별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술적 특징과 관련하여, 금융포용의 관점에서 디지털유로가 장애인 등 모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능성 측면의 규정과 유통방식에 대한 부분도 시사점이 큼

특히, 디지털유로의 유통 방식과 관련하여 디지털유로지급거래의 결제 방법과 결제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둔 점은 민사법적 관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즉, 디지털유로를 현금과 같이 무기명증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전하도록 하되, 오프라인 지급결제에 대해서는 지급인과 수취인 양자의 저장장치에 보유기록이 업데이트 되는 시점을 이전 시점으로 보는 특칙을 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임

- ▶ 이에 반해, 온라인 지급결제에 대해서는 유로시스템이 승인한 디지털유로결제인프라에서 지급인으로부터 수취인에게로 거래대상인 디지털유로의 이전기록이 된 시점을 결제가 완결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이 결제인프라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 결제완결시점은 결제인프라에 모든 지급인과 수취인의 기록이 있다는 것으로 전제로 하는데, 결제인프라 수가 적을 만큼 그 인프라의 데이터 관리부담이 더 크질 것으로 보임

- 디지털유로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인 PSP가 모두 디지털유로결제인프라로 승인된다면 위에서 제기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나, PSP와 디지털유로결제인프라가 다를 경우에는 온라인 디지털유로지급거래와 거래를 기록하는 결제인프라가 달라져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즉시 결제가 가능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지급인과 수취인이 다른 PSP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전이 기록된 시점을 관념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디지털유로결제인프라에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기록이 모두 관리될 필요는 없을 것
- 다만,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모든 노드참가자가 동일한 원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위에서 가정할 실무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8

DER안의 주요특징과 합의 4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 및 오프라인 디지털유로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규정도 향후 국내 입법에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쟁점일 것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PSP ECB 및 회원국 중앙은행 및 지원서비스제공자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와 그 용도를 분리하여 각각 한정적 열거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중앙은행의 과도한 개인정보 취급을 방지하고 있는 점은 상당한 합의가 있음

오프라인 거래 시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하여, PSP나 ECB 및 회원국 중앙은행이 펀딩과 디펀딩 정보를 제외하고, 오프라인 '거래정보'를 가질 수 없도록 하여 디지털유로가 현금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도록 한 점도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 디지털유로의 오프라인거래에까지 자금세탁방지의 목적으로 거래정보를 취할 경우 오히려 디지털유로 사용의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유한도와 관련한 부분에 한하여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적용한 것으로 보임(서문 82참조)
- 참고로, DER은 디지털유로의 온라인 거래에 관한 AML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문을 두지 않지만, 이는 당연히 EU 자금세탁방지 지침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때문임(서문 78 및 80)

- DER은 금융법 내지 통화법적 측면을 다루는 것이므로 디지털유로의 민사집행법적 측면과 국제사법적 측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은법, 전금법 등의 금융관련 법률 외에도 민사집행법과 국제사법 등의 개정 필요성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

디지털화폐는 법화이나 무체물이므로, 현금과 다른 방식의 집행이 필요할 것이므로, 집행법원의 실무는 물론 규범적인 부분도 정비가 필요할 것임

- 예컨대, 민사집행법은 금전을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금전의 압류를 유체동산의 집행에 관한 제4절 제2관 제201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가압류와 관련해서도 동산가압류집행을 규정하는 제296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디지털원화의 발행 시와 관련한 민사집행법적 측면의 정비가 필요

- ▶ 국제사법적 측면에서도 현금은 무기명증권과 같이 지폐나 동전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이를 양도하나, 무체물인 디지털화폐에 대해서는 동산물권에 대한 소재지법(lex rei sitae)을 적용할 수 없음은 명확함

- 따라서, 국제사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리를 가지는 연결점을 찾는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헤이그국제사법회의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한 상태이므로 해당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임

29



Q & A Session

고맙습니다!

Email: chun@snut.ac.kr

Our Dream, Your Future @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제3주제】

● ● ●

토 론

신지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한애라

성균관대학교 교수

유럽연합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규제 : EU집행위원회 DER안상의 주요 내용과 함의

<토론문>

신지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9년 가상자산(virtual asset) 붐과 함께 각국에서 CBDC 논의도 개시되었고, 특히 2020년 이후 전세계적인 코로나 사태 확산 이후 비대면 거래, 디지털 거래에 관한 needs가 크게 증가하면서, CBDC에 관한 논의 역시 가속화되었습니다. 여기에 2023년 6월 유럽연합이 미국 등 다른 국가에 앞서¹⁾ 선제적으로 CBDC에 관한 디지털유로규정(Digital Euro Regulation, 'DER')안을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유럽이라는 거대시장을 중심으로 한 향후 전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정세 속에서 오늘 천창민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서 유럽연합의 DER 안의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고 그 정책적 함의에 관하여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천창민 교수님께서 가상자산 분야에 있어서 이미 탁월한 연구성과와 insight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발표에서도 유럽의 최신 규정안에 관하여 상세히 해설해 주셔서 CBDC 논의를 이해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천창민 교수님의 선행 연구를 디딤돌로 삼아 이 분야를 연구해 오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가상자산 분야에 관하여, 저는 주로 민법적 시각에서 기술적 측면에 치중하여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 논의된 은행법이나 상법, 자본시장법 관점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에 교수님 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질문으로 토론을 같음하고자 하며, 기본적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질문이더라도 부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각국의 CBDC 논의를 처음 접하고 가장 먼저 떠오른 의문은 CBDC가 다른 디지털 결제 수단, 특히 체크카드와 같이 은행예금을 기초로 하여 현금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결제수단과 어떤 점에서 결정적으로 다른 것인지 하는 점입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현물화폐 대신 CBDC를 보유하고 결제하는 것과, 은행에 예금을 한 후 체크카드를 사용해 결제하는 것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중앙은행이 직접 CBDC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PSP 등 결제기관을 별도로 두는 경우라면, 종래 중앙은행 - 시중은행 구조의 은행예금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언뜻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CBDC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조잡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CBDC가 현물화폐 및 금융기관 시스템과 결정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1) 중국 역시 CBDC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만, 중국의 정치적 특성상 CBDC 도입 목적 등이 타국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의 예시처럼 소비자가 느끼는 결제 방식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데, 결제 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또한 화폐 발행의 단계와 화폐 발행 주체 시각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국 CBDC 도입이 기존의 화폐 제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화폐를 디지털화 함으로써 결제의 편의성을 증진시킨다는 것 외에도 실익이 있는지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전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이 가장 충실하고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계좌이체 수수료가 사실상 거의 무료로 가까운 등 금융비용 역시 매우 낮은 편이므로,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할 때 CBDC 도입이 과연 필요할지에 관한 교수님의 의견도 여쭙고 싶습니다.

2. CBDC는 국경 내 거래가 아니라 국경 외(cross border) 거래나 해외송금에서 비로소 다른 금융 시스템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CBDC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 각국의 CBDC 프로토콜이 모두 달라 시스템상 서로 호환성을 갖지 못한다면, 국경 외 거래에서 활용될 수 있는 CBDC 구축은 요원해 보입니다. 가령 미국 등 강대국의 CBDC가 실질적으로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축 CBDC로 작동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타국의 CBDC를 자국 CBDC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자국의 화폐주권을 포기하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CBDC가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공통 CBDC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세계 모든 나라가 동일한 CBDC 프로토콜 개발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CBDC 구축은 어려운 것이 아닐지요? 더욱이 유럽연합의 CBDC는 DLT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DLT 없이 서로 신뢰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여러 나라 간 공동 CBDC 구축이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²⁾

3. CBDC 도입시 개인정보보호 측면이 문제됩니다. 현물화폐는 거래 흐름 추적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반면 CBDC의 경우는 반드시 관리주체를 통한 수밖에 없어 거래 흐름 추적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DER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도 소개해 주셨는데, 기존의 신용카드 등을 통한 금융거래, 결제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이상으로 CBDC 거래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CBDC는 현물화폐를 대체하는 것이므로 현물화폐 수준으로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만 비로소 의미가 있을 것이지만, 현물화폐에 비해 유통이 용이한 CBDC에 대해 기존의 금융시스템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인정할 경우에는 자금세탁방지나 테러자금조달금지

2) 다만 이것은 DLT 자체의 기술적 유용성은 별론으로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CBDC는 private permissioned blockchain을 기반으로 할 것이므로, public permissionless blockchain에 비해서는 운용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입지만, 어떤 DLT라도 종래의 server-client 시스템과 비교해서는 그 운용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 거래 속도 역시 현저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DLT를 전제로 한 전세계적인 통일적 CBDC 역시 기술적으로 명확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DLT를 활용한 CBDC 구축시에는 DLT 운용비용의 부담 주체 등 쟁점도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점에서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실 비트코인을 위시한 가상자산 대부분이 개인정보가 확실하게 보호되는 익명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sales point로 삼았지만, 실제 대부분의 가상자산 구매자들은 익명성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의 가격상승 가능성이 가상자산 보유의 유인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기존의 결제시스템 외에 CBDC를 도입해야 할만큼의 개인정보보호나 익명성 보장의 요구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의문이 없지 않습니다.

4. 교수님께서서는 CBDC 도입시 민사집행 실무도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문제제기하고 계십니다(30면). CBDC가 도입된다면 민사집행 절차에 관한 용어나 세부적인 규정 정비 등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도 대처할 수 있다와 생각됩니다. 이미 현물화폐 자체에 대해 동산으로 강제집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주로 은행예금 형태에 대해 채권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CBDC는 예금(즉 임치물반환채권)이 아니라 현물화폐 자체를 대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채권과 마찬가지로 채무자 소유의 CBDC와 관련하여 제3채무자가 될 자가 기술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예금채권에 대한 민사집행 실무를 그대로 활용해도 충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5. 마지막으로, 발표문에서 ‘디지털결제인프라’라는 개념이 소개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염두에 둔 규정인지 궁금합니다. IT와 관련된 규제안은 주로 특정 IT업체나 회사를 염두에 두고 제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 특정 IT업체나 회사를 떠올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발표문 내용 중에서도 다소 의문을 표하며 부연설명을 해주시기는 하였지만(29면),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금융 시스템에 빗대면 어떠한 서비스나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이 부분을 이해함에 있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통해 CBDC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안을 상세히 알 수 있었고, CBDC 도입에 전제가 되는 법적 쟁점에 관하여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발표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으로 누를 끼친 것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신 천창민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나라에서도 CBDC에 관한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사법학자대회 지정토론문:
“유럽연합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규제: EU집행위원회
DER안상의 주요 내용과 합의”에 관하여

한애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천창민 교수님의 EU집행위원회의 디지털유로규정(Digital Euro Regulation: DER)안에 관한 상세한 분석과 그 정책적 함의에 관한 깊이 있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EU 디지털유로규정안은 여러 정책적 고민을 바탕으로 EU 역내에서 법화의 지위를 가지는 디지털유로의 창설, 발행, 운영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의 CBDC 도입 논의에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디지털유로규정안의 특징은 원칙적 역내 한정, 소액, 소매, 프라이버시의 강한 보호, 현금과의 동일성 강화로 요약될 수 있을 듯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CBDC의 장점으로서는 현금 사용 감소와 현금 관련 인프라 축소 하에서 디지털 법정화폐 도입을 통한 결제서비스 접근성 확보, 민간 빅테크 지급결제서비스 과점에 따른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와 개인정보 집중 문제 완화와 프라이버시 보호, 민간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과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공적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의 제공, 이용자의 디지털 격차 축소와 국가 간 지급결제의 비효율 해소 등이 거론됩니다.¹⁾

그 중 디지털 화폐를 통한 국가 간 지급결제 효율화는 CBDC의 대표적인 장점으로 들 수 있고, BIS가 그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²⁾ 그러나 국가별로 제도와 규제가 다르고 거시경제 및 각국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 간 합의를 통하여 상호 통용 가능한 국제적 CBCD 체계를 만들기 전에는, 도매(Wholesale) CBDC를 제외하고 소매(Retail) CBDC에서 국가 간 지급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PBoB의 e-CNY의 경우에도 e-CNY를 이용한 국제결제(비록 홍콩에서였으나)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e-CNY가 독자적인 국제결제수단(소매 CBDC를 포함하여)으로 활용된다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거래정보가 중국 정

1) 김영식·권오익,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의 의의 및 필요성 -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分析』 제28권 제4호 (2022.12), 6-8면.

2) BI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for cross-border payments”, July 2021 Report to the G20.

부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국제금융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각종 국제재제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경계가 뒤따랐습니다.³⁾ 이러한 역외적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디지털유로규정안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EU 역내에 한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외 거래에서 CBDC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경우, 국제재판관할이나 준거법, 판결의 승인집행 등 국제사법적 문제가 당연히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 디지털유로규정안과 같이 역외의 PSP가 디지털유로 질서에 편입되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국제사법적 쟁점은 명시적 합의 또는 디지털유로를 지급수단으로 한 계약 자체의 준거법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디지털유로에 관하여 국제사법적 쟁점이 불거질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표자께서는 현 디지털유로규정안 하에서 어떤 경우에 준거법이나 국제재판관할 등 국제사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준거법이 쟁점이 되는 경우, 디지털유로가 PSP 계정 내에 보관되어 있다면, Hague Securities Convention이나 미국 Uniform Commercial Code 8-110, EU 등에 의해 널리 채택된 Place of the Relevant Intermediary Approach (PRIMA)⁴⁾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자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듯하나, 오프라인 지갑에 옮겨져 보관되는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떠한 특정 입장이 우세한 것 같지 않습니다.⁵⁾ 발표자께서는 지갑 소재지, 비밀키 소유자의 소재지, 중심적 관리자의 소재지 등 가능한 여러 연결점 중 어느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으로 디지털유로와 관련한 프라이버시 문제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디지털화폐디지털유로규정안을 살펴보면, 현금과의 동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프라이버시를 고도로 강조하여, 디지털유로가 오프라인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보유한다 준수와 관련한 편딩 및 디편딩 정보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정보는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유로가 PSP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34조는 PSP가 보유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공공 목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로, 보유한다 준수, EU 재제 준수, AML/CFT 관련 규정 준수, 과세, 안보 등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ECB는 이와 같은 프라이버시 보호가 지금까지 제안된 디지털화폐

3) Caudevilla, Oriol and Kim, Henry M., The Digital Yuan and Cross-Border Payments: China's Rollout of It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ugust 2022). University of Hong Kong Faculty of Law Research Paper No. 2023/30,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4371414> or <http://dx.doi.org/10.2139/ssrn.4371414>.

4) 천창민, "간접보유증권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간접보유증권에 관한 국제사법상 연결규칙의 신설을 제안하며-", 국제사법연구 2013, vol.19, no.1.

5) HCCH, Proposal for Exploratory Work: Private International Law Aspects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s), Prel. Doc. No 3B of January 2023

중 가장 강력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유로가 PSP 계정에 온라인으로 보관되어 있는 경우, 그 보유자의 채권자가 위 디지털유로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달리 말해, 제34조의 공공목적 외에도 채권자가 PSP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계정 내 디지털유로를 압류하고 후속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 경우 PSP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계정 보유자의 정보를 채권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논의되는 디지털유로의 보유한도는 3000~4000유로 정도인데, 사실 이 정도의 금액은 이론상으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실제로는 개인이 현금을 보유할 경우에도 적당히 어딘가에 숨김으로써 사실상 강제집행을 회피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디지털화폐가 상업적인 각종 페이 적립금이 아닌 진정한 전자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현금과 완전히 동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수단의 사각지대에 있는 금융소비자들(이들 중에는 신용불량자들이 많을 것입니다)이 안심하고 현금과 동일하게 디지털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소액의 보유 한도 내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보유자를 강제집행 위험에서 보호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유럽의 금융소비자단체들은 PSP 계정에 디지털유로가 보관되어 있을 경우 AML/CFT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규제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면 디지털유로가 현금과 완전히 동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 위험 없이 디지털유로를 이용하여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일정 한도 내에서는 온라인 디지털유로에 대해서도 AML/CFT 측면에서 오프라인 수준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⁶⁾ 이러한 프라이버시 강화 주장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6) Finance Watch Policy Brief, “The Digital Euro: A Matter of Trust - Recommendations for Europe’s new digital currency” (Oct. 2023).